

국제기준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

책임연구원 : 최창욱(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박영균(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수)

임성택(순천대학교 · 교수)

전성민(한국유네스코 · 본부장)

연구보조원 : 조선하(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정미나(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결과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국제인권조약과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인권 수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가적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1차년도 연구로 청소년인권지표(안)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 주요 연구방법은 협동연구, 문헌연구, 협동연구협의회 및 전문가자문회의·워크숍 개최, 국외출장조사 등임. 특히 청소년인권이라는 광범위한 주제의 효율적 추진과 청소년인권 하위영역에 대한 심층연구를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체 협동연구과제로 추진함.

2. 주요 연구내용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인권의 개념과 청소년인권지표의 개념을 정립하고, 청소년인권지표의 기능을 파악함. 또한 UN아동권리협약, 1·2차 국가보고서와 이에 대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청소년인권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분석함.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의 기본방향을 다음의 7가지로 제시함.
 - 첫째, 체제이론(system theory)에 따라 청소년인권 하위구성영역 분류
 - 둘째, 국제기준에 맞는 지표항목 개발
 - 셋째,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삶의 특성 반영
 - 넷째, 청소년인권에 대한 질적 정보 확충

다섯째,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수요 충족
여섯째, 성별·연령별·교급별·지역별 등 집단별 비교가 가능한 지표개발
일곱째, 가용통계자료를 적극 활용

● 청소년인권지표개발의 과정과 절차,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국제기구 권고내용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청소년인권지표 하위 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프라 등 5개로 설정
둘째, 하위영역별로 청소년인권지표의 분류체계와 개별지표 개발. 개별지표의 타당성, 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 실용성, 해석의 용이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관심영역(26개)-세부관심영역(65개), 166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된 1차 시안 개발
셋째, 청소년인권지표의 각 하위영역별로 ‘전문가포커스그룹’을 구성하여 의견조사 실시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와 협동연구협의회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시안의 분류체계와 개별지표 항목을 수정·보완·삭제하여 2차 시안을 마련
다섯째, 2차 시안을 마련한 후 확대연구진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
여섯째, 『청소년인권지표(최종안)』을 수립함. 이 최종안은 대분류(5개)-관심영역(20개)-세부관심영역(56개)의 분류체계, 총 157개의 개별지표 항목으로 구성

3. 정책제언

● 체계적인 지표생산체계와 수요자 활용도 향상 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주기적·지속적 지표조사체계 구축
둘째, 지표조사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셋째, 조사 원자료의 일반공개
넷째, 관련 조사기관과의 DB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및 지표항목 첨가

다섯째, 청소년인권지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섯째, 청소년인권지표 조사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일곱째,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인권지표 활용주체별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①국제인권조약 협약사항의 이행수준 모니터링 도구, ②국가 청소년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설정 판단준거, ③청소년인권의 실태와 취약분야 파악, ④청소년인권·환경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양상 이해, ⑤청소년인권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입증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인권·환경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시계열적 변화양상 파악, ②청소년인권관련 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투자우선과제 선정, ③지역 청소년인권정책의 효과와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셋째, 청소년인권관련 단체·시설 차원에서는 ①단체 및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방향 설정, ②단체 및 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입증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향후 후속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①개별지표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 ②청소년인권지표의 단계적·시범적 발간체계 구축, ③국제기구 및 주요 외국과의 ‘국제비교 지표 개발 및 DB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연계협력의 노력 등이 필요함.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의 내용 5
 - 1) 청소년인권지표 개념 정립과 하위영역 설정 5
 - 2) 청소년인권지표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분석 6
 - 3) 청소년인권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6
 - 4) 청소년인권지표 체계구축 및 부문별·영역별 지표(안) 개발 ... 6
 - 5) 청소년인권지표의 산출체계와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7
3. 연구의 방법 7
 - 1) 협동연구 7
 - 2) 문헌연구 8
 - 3) 협동연구협의회 및 전문가자문회의·워크숍 개최 8
 - 4) 국외출장조사 9

II. 청소년인권의 발달과 청소년인권지표

1. 청소년인권의 개념 13
 - 1) 청소년 생존권의 개념 15
 - 2) 청소년 보호권의 개념 17
 - 3) 청소년 발달권의 개념 19
 - 4) 청소년 참여권의 개념 20
 - 5) 청소년인권 인프라의 개념 22
2. 청소년인권지표의 개념 22
3. 청소년인권지표의 기능 24

III.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 권고내용과 시사점

1. 국제기구의 청소년 생존권 관련 권고내용과 시사점 31
2. 국제기구의 청소년 보호권 관련 권고내용과 시사점 35

1) 청소년보호권 관련 1, 2차 정부보고서	36
2) 보호권 관련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	36
3. 국제기구의 청소년 발달권 관련 권고내용과 시사점	38
4. 국제기구의 청소년 참여권 관련 권고내용과 시사점	40
1)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40
2)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	42

IV.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선행연구 분석

1. 청소년인권지표 관련 주요 선행연구	47
1) 한국아동권리학회의 『30대 아동권리지표』	47
2)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지표(안)』	49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권리지표』	51
4)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53
5)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실태 조사연구』	54
6) 이용교 외(2006)의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54
7) 외국의 청소년인권 관련 지표개발 현황	56
2. 하위영역별 선행연구 분석	58
1) 청소년 생존권 관련 지표개발 선행연구 분석	58
2) 청소년 보호권 관련 지표개발 선행연구 분석	68
3) 청소년 발달권 관련 지표개발 선행연구 분석	75
4) 청소년 참여권 관련 지표개발 선행연구 분석	83
5) 청소년인권 인프라 관련 지표개발 선행연구 분석	88

V.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과 구성요소

1.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	93
2.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요소	95

1) 청소년 생존권지표의 구성요소	95
2) 청소년 보호권지표의 구성요소	105
3) 청소년 발달권지표의 구성요소	117
4) 청소년 참여권지표의 구성요소	127
5) 청소년인권 인프라지표의 구성요소	130

VI.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1. 청소년인권지표 개발방향	135
2.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	138
1) 청소년 생존권	138
2) 청소년 보호권	138
3) 청소년 발달권	139
4) 청소년 참여권	139
5) 청소년인권 인프라	140
3. 청소년인권지표 선정기준 및 절차	142
1) 청소년인권지표 선정기준	142
2) 청소년인권지표 선정절차	146
4. 청소년인권지표 조사항목의 개발	149
1) 청소년 생존권 지표 조사항목	149
2) 청소년 보호권 지표 조사항목	151
3) 청소년 발달권 지표 조사항목	153
4) 청소년 참여권 지표 조사항목	155
5) 청소년인권 인프라 지표 조사항목	157
5. 청소년인권지표의 정의, 산식 및 자료원	158
1) 청소년 생존권 지표 정의, 산식 및 자료원	158
2) 청소년 보호권 지표 정의, 산식 및 자료원	166
3) 청소년 발달권 지표 정의, 산식 및 자료원	173
4) 청소년 참여권 지표 정의, 산식 및 자료원	181

5) 청소년인권 인프라 지표 정의, 산식 및 자료원	188
VII. 청소년인권지표 산출체계 및 활용방안	
1. 청소년인권지표의 산출체계	193
1) 주기적·지속적인 지표조사 체계 구축	193
2) 지표조사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194
3) 조사 원자료의 일반공개	194
4) 관련 조사기관과의 DB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및 지표 항목 첨가	195
5) 청소년인권지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96
6) 청소년인권지표 조사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196
7)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197
2. 청소년인권지표의 활용방안	197
1) 중앙정부차원	198
2) 지방자치단체	199
3) 청소년인권 관련 단체 및 시설	200
VIII. 요약 및 제언	
1. 요약	205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211
참고문헌	213

표 목차

<표Ⅲ-1> 권리유형별 아동권리협약 해당조항	30
<표Ⅳ-1> 한국아동권리학회의 30대 아동권리지표	48
<표Ⅳ-2> 『청소년인권지표(안)』 구성 체계	49
<표Ⅳ-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권리지표』 체계	52
<표Ⅳ-4> 『청소년인권백서』의 청소년인권영역 구분과 하위내용	53
<표Ⅳ-5>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체계	55
<표Ⅳ-6> 외국의 청소년인권 관련 지표	57
<표Ⅳ-7> 청소년권리지표 관련 주요 국제기관의 자료 현황	60
<표Ⅳ-8> 새천년발전목표, 하위목표 및 청소년관련 지표	62
<표Ⅳ-9> UNICEF 아동현황보고서에서의 생존권 관련 지표	64
<표Ⅳ-10>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생존권관련 아동인권 지표	66
<표Ⅳ-11> U.S. Department of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의 청소년지표	77
<표Ⅳ-12> NCES의 청소년지표	78
<표Ⅳ-13> 뉴질랜드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의 아동청소년 복지지표	79
<표Ⅵ-1>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	140

그림 목차

[그림 II-1]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	23
[그림 VI-1] 지표항목 선정기준간 우선순위	146
[그림 VI-2] 『청소년인권지표(최종안)』 선정절차	14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권(Human Rights)이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리로,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는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은 현실에서 차별당하고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김영원, 2003).

역사적으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강조는 16세기 이후부터 18세기에 걸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 청소년인권은 청소년의 경제적 효용가와 부모의 노후생활 보장의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에 지나지 않았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된 권리 소유자로서 청소년을 바라보아 왔던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권리 주체로의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한국청소년개발원 편, 2004).

이러한 역사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권은 아직 초기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즉,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연령이나 사회적 편견 그리고 가난을 이유로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부당한 대우와 차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대한 의무를 지니게 되면서 청소년인권지표의 개발과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제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체계적인 청소년인권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청소년인권의 현 상태와 변동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UN 등 국제기구는 아동권리협약(CRC),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WPAY), 의제21(Agenda 21), 아동특별총회 결의안, 리스본선언 등 협약과 결의문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협약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권환경 수준을 국제기준에 준하도록 맞추어야 한다.

1991년에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후 우리나라는 2차례에 걸쳐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 받았다. 또한 UN은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채택 10주년을 맞은 제 60차 총회에서 15개 우선영역의 청소년정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위한 지표를 개발할 것을 각 국에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 인권수준과 인권환경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모니터링을 위한 청소년인권지표 및 조사도구의 개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부분적인 시도는 있었으나, 청소년연령대를 포괄하는 청소년 인권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이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는 아주 미흡했다.¹⁾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강력한 논리적 도구이다. 청소년인권지표는 사람이나 조직의 주요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제시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책임지게 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청소년인권의 침해원인과 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체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인권지표는 기존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메우고, 기존 통계나 각종 추정치간의 상호연계성을 회복하며, 광범위하면서도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집약시키는 정책결정자의 분석도구로서의 기

1) UN에서의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까지이며,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 연령은 만 9~24세이다. 한편, 이 보고서의 「IV.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선행연구 분석」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아동권리학회,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지표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었으나, 그 실용성과 효율성 등에 있어 많은 제한점을 보이고 있다.

능을 수행한다. 즉,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인권에 관한 현재의 상태와 변동추세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고, 장래예측의 지침이 되며, 청소년인권 문제에 대한 사전 경보장치의 역할을 하고, 청소년인권정책의 목적설정과 성취를 평가하는 지침이 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국제인권조약과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환경 수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가적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OECD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 인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도 이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년과제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1차년도(2006)에는 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하고, 2차년도(2007)에는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며, 3차년도(2008)에는 청소년인권지표 중 국제적으로 비교할 만한 지표를 추출하여 국제비교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1차년도 연구로서 청소년인권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내용과 국내외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사례들을 분석하여, 청소년인권 지표(안)를 개발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인권지표(안)를 개발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청소년인권지표 개념 정립과 하위영역 설정

청소년인권지표의 개념을 정립하고 청소년인권 하위영역을 설정하기 위하

여 문헌연구, 전문가워크숍 등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인권 하위영역은 UN아동권리협약의 청소년인권 4영역(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청소년인권 인프라 지표의 5가지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권리지표의 개념과 하위영역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2) 청소년권리지표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권고사항 분석이 중요하다. 청소년권리지표는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장래를 예측하여 적절한 청소년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하지만 국제적 준거에 합당한 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출장조사 등을 통하여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 권고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 권고사항 분석에 있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UN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청소년권리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청소년권리지표 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 청소년권리지표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국내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권리학회의 연구물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국외는 UN아동권리협약 40여개 조항과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한 1차 및 2차 국가보고서,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15개 우선영역(교육, 고용, 기아와 빈곤, 건강, 환경, 약물의존, 일탈행위, 여가활동, 소녀와 젊은 여성, 참여, 세계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HIV/AIDS, 갈등예방, 세대간 관계) 등을 분석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청소년권리지표 체계구축 및 부문별·영역별 지표(안) 개발

지금까지의 이론적 조망을 바탕으로 청소년권리지표(안)를 개발하였다. 청

소년인권지표(안)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 1단계: 청소년인권 지표(안) 개발방향 설정
- 2단계: 청소년인권 지표(안) 분류체계 제시
- 3단계: 청소년인권 지표(안) 개발
- 4단계: 정의, 산식, 자료원 제시

5) 청소년인권지표의 산출체계와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인권체제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인권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범위하면서도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집약시킨 지표는 청소년인권정책의 수립이나 효과측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지표는 단일기관에서 관련 통계정보를 독점적으로 조사·산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관련기관의 협조를 전제로 한 ‘분산형 조사, 집중형 관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인권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과 DB구축을 통한 활용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의 방법

1) 협동연구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체 협동연구과제로 운영하였다. 이는 국내 인권관련 연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고, 광범위한 주제의 효율적 추진, 그리고 청소년인권의 하위영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의 5가지 하위영역 중 UN아동권리협약의 청소년인권 4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세부과제들을 협동연구로 진행하였다. 협동연구 과제명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협동연구과제명	소속기관	책임자	직위
1.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광주대학교	이용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	보육학과 교수
3.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참여자치21	이중섭	사회연대 팀장
4.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숙명여자대학교	강현아	아동복지학과 교수

2) 문헌연구

청소년인권지표의 개념 정립과 하위영역 설정,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 권고사항 분석을 위해서는 청소년인권지표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국제기구의 권고내용을 우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인권지표의 국내외 관련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연구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지표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지표에 대한 개념정립과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 권고사항 분석, 국내외 청소년인권지표 관련 연구 분석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간된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각종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의 현황을 검토·분석하였다.

3) 협동연구협의회 및 전문가자문회의·워크숍 개최

이 연구는 협동연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각 연구팀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그것은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권 인프라 영역들이 서로 중복될 수도 있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중요한 지표인데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진과 협동연구과제 연구진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협동연구협의회 수차례 개최하였다. 이러한 공식적인 만남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하여 연구진과 협동연구진, 협동연구진과 협동연구진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였다.

한편 청소년인권지표 하위영역의 설정, 청소년인권지표 1차 시안에 대한 검토, 청소년인권지표 2차 시안에 대한 검토, 청소년인권지표 최종안 확정

등을 위하여 시기별로 연구진, 관련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자문회의 혹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4) 국외출장조사

이 연구는 다년연구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인 목적이 국제기준 대비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가 특히 중요하다. 또한 3차 년도에 이루어질 국제비교연구를 위해서 인권 선진국과의 협력가능성을 타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연구진은 UN아동권리위원회, UNESCO 본부, 선진국의 인권관련 연구기관과 단체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을 추진하였다. 방문국은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이다.

Ⅱ. 청소년인권의 발달과 청소년인권지표

1. 청소년인권의 개념
2. 청소년인권지표의 개념
3. 청소년인권지표의 기능

II. 청소년인권의 발달과 청소년인권지표

1. 청소년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말 뜻 그대로 ‘사람의 권리’ 혹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진다고 추정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면서 한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함께 뜻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편, 2004).

이봉철(1991)은 인권이란 개념에 포함된 특징으로서 첫째,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확보와 행사를 위한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 둘째, 모든 인간에게 다 타당하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이 보편성 속에는 평등사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인간이 인권의 근거이기 때문에 도덕적이며 당위적 권리라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편, 2004:재인용).

청소년인권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인권 관련 연구물이나 선행연구들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아마도 그것은 청소년인권의 개념은 단순히 위의 인권 개념을 청소년 연령대에 적용시킨 것으로 한정시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인권의 개념은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권리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청소년이 행사해야 할 자유·권리’라는 개념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청소년인권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주지 못한다. 청소년기가 갖는 독특한 특성, 청소년도 성인과 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에 대한 고려들이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한상철(2006)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청소년인권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청소년인권을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이라는 데는 합의하지

만 인간으로서 어떤 권리를 말하는지, 어느 정도까지의 권리를 말하는 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몇몇 연구에서 청소년인권의 개념정의에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드러나 있다. 배경내(1998)는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조항들을 보편적 인권과 청소년의 고유한 인권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함하고, 청소년의 고유한 권리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청소년의 고유한 권리는 신체·정신적 능력에 상응하는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와 특수한 상황아래 놓인 청소년의 권리가 포함된다. 즉, 생존·발달·참여권적 요소들이 보편적 인권에 해당되고, 보호권적 요소들이 고유한 권리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정승원(2000)은 청소년인권은 청소년의 자율적 능력에 대한 신뢰와 인정의 정도에 따라 보호주의적 입장, 해방론적 입장, 두 입장이 절충된 조정적 자율론적 입장이 있다고 보았다. 보호주의적 입장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방론적 입장은 청소년을 자율적 권리 행사능력을 지닌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조정적 자율론적 입장은 청소년의 자율적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며, 동시에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양육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국가청소년인권협회(National Youth Rights Association, 2006)는 홈페이지에 청소년인권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 협회는 청소년인권은 자격으로서의 청소년 권리(entitlement rights)와 시민적 권리(civil rights)의 두 가지 구별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 하였다. 자격으로서의 청소년 권리는 청소년 자체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청소년기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권리는 다른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여기에는 고용, 교육, 소득보장, 주거환경,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의 탈피, 건강관리 등이 해당된다. 시민적 권리는 청소년이 그들의 권리를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여기에는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범죄피해자의 보호 등이 해당된다.

이상을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인권을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와 청소년이기 때문에 요청되어지는 특수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특히 UN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인권 하위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청소년인권 인프라로 유형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권 인프라의 구체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생존권의 개념

생존이란 “다른 모든 인권의 전제조건(prerequisite)”이다(Donnelly & Howard, 1988: 217). 생존권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건강 등 생명을 유지하는 권리들을 포함한다. 이 점에서 생존권은 시민적 인권은 물론 정치적 인권, 경제적 인권, 사회적 인권, 그리고 문화적 인권 등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LeBlanc, 1995).

아동과 청소년의 생명, 생존 및 발달에 관한 권리는 아동에 관한 모든 인권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에 UN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일반 원칙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생명권에 대한 존중과 적절한 보호 및 이행 없이는 협약의 모든 여타 권리들도 의미가 없게 된다.

생존권(the right to survival)이란 개념은 다른 인권조약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비슷한 의미를 지닌 생명권(the right to life)은 근본적인 인권의 하나로서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보편적 또는 지역적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명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조항은 세계인권선언 제 3조에서도 적시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권은 일반 국제법상의 절대규범, 이른바 *jus cogens*의 하나로 주장된다(Detrick, 1999).

생존권을 별개의 하나의 조항으로 하자는 제안은 당시 너무나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입각한 것이었다(Hodgson, 1994). 생존권에 대한 조항은 UN아동권리협약 제정을 위

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건강한 성장(healthy growth)”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이 주장되기도 했다. 일부 대표단들은 생존이라는 개념이 국제법에서 규정된 바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생존이란 용어가 UN의 상황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나 UNICEF 등의 UN기구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성장이란 용어는 생존이란 개념의 일부만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여러 기준에서 한발 후퇴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Nowak, 2005). 더욱이 생명과 생존이란 개념은 상호배타적이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생명권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넣게 된 것이다.

생존권은 또한 생명권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아동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생존은 성장 모니터링(monitoring), 질병 통제, 설사로 인한 탈수증 완화(oral rehydration), 모유수유(breastfeeding), 예방접종, 식량 및 여성 문맹 등을 포함한다.

UN아동권리협약 제 6조는 생존권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²⁾ 그러나 UN아동권리협약 제 6조에 있는 생명권은 단순한 아동 생존권 보호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제 6조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이 원칙들은 협약의 다른 몇 개 조항으로 더욱 명료해지고 또 강화되고 있다. 이들 조항 중 일부(예컨대,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는가 여부)는 전통적으로 보면 생명권에 속한다. 다른 조항들(예컨대, 적합한 생활수준과 보건복지를 제공할 필요성)은 아동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확대된 개념이다.

또한, 아동의 생명과 생존에 더하여 아동의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사국의 의무는 생명권이 종합적 차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발달(development of the child)을 1986년 UN발달권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제 1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이란 개념과 유사한 하나의 전체적

2) UN아동권리협약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념(holistic concept)으로 인식한다. 발달(development)은 모든 인간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종합적 과정으로 정의된다.

UN아동권리협약에 적시된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사국의 의무는 당사국이 자국의 사법관할권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보호받으며, 공포와 결핍(want)에서 벗어나며, 각자의 인성(personality)과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당사국들은 급속히 지구화되는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와 지역, 특히 빈곤한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생존권을 정의해 보면 ‘청소년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를 의미한다.

2) 청소년 보호권의 개념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청소년의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들과 이로 인해 청소년이 입게 되는 위기의 결과가 보호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에 대한 위협요인들로 경제적 착취,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과 유기, 전쟁, 학사, 차별대우를 적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한 청소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 학대를 당하는 청소년, 성적 상품이 된 청소년, 거리의 청소년, 재난을 당한 청소년(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 아동) 등이 발달적 위기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 착취에 대한 보호, 위기와 응급상황에서의 보호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권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오히려 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아 청소년 보호권을 실제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보호권 중 일부의 내용은 국가에 따라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국내 관련법의 보호권 규정을 살펴보면, 애초에 보호권과 관련한 내용들은 학대와 폭력에 초점을 두어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헌장의 경우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짐이 되는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체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헌장에 의하면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 뿐 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보호권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초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폭력성의 청소년 유해매체와 유해약물 등의 유통과 유해업소에의 청소년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포함하여 청소년 보호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보호정책의 ‘보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 정책 초기에는 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약물, 지역사회환경 등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조되어 왔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성매매, 가출, 폭력 등 문제행동의 예방과 치료, 재활이 강조되고 있으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의 노동보호가 새롭게 관심을 끄는 청소년 보호영역이다.

UN아동권리협약과 국내의 청소년 보호관련 법의 내용, 그리고 청소년 보호정책의 내용을 종합하여 청소년 보호권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권을 정의해 보면 ‘청소년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보호권을 각종의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차별로부터

의 보호, 위기상황과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에 청소년 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과 경제적 착취의 내용이 포함되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의 내용도 포함된다. 한편, 위기와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에는 범죄, 가출, 이주민 가정 청소년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 유해매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개념을 포괄한다.

3) 청소년 발달권의 개념

청소년의 권리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발달을 위한 학습과정의 중요성은 UN이 아동의 생존과 발달 그리고 보호에 관련된 일련의 규정들을 제시한 1989년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국가나 사회는 구성원들이 삶의 초기단계에 개인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에 요구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달을 권리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성장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과정으로만 해석할 경우 발달을 인위적인 개선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과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발달을 권리의 시각에서 바라볼 경우 생물학적 성장에 더불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한 제반 여건과 환경의 개선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달권은 개발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광범위하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Freeman(1996)은 UN아동권리협약을 크게 4가지 권리로 분류하고 그 중 발달과 복지에 관한 권리의 내용에 합리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과 기본서비스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교육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용교(2004)도 발달권을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근거해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전통적인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지 외(2004)도 발달권의 내용에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여가와 문화에 관한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발달권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우선 발달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성장주기에 따라 각 발달과정의 과업수행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에 대한 권리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생존에서부터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리의 실현이 요구된다는 점이고 무엇보다도 적절한 교육과 여가, 문화와 자유에 대한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은 청소년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공동의 책임과 의무로 실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양질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지지적 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한 체계적인 공공정책의 수행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발달권을 정의해 보면 ‘청소년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직업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4) 청소년 참여권의 개념

청소년 참여권은 역시 UN아동권리협약이 포함하고 있는 아동의 4가지 권리영역(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중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1989년에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아동권리협약은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191개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이 협약은 세계 모든 국가의 아동들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담은 국제적 문서로서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의 특징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지표를 모니터링 하는 데에 아주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Ben-Arieh et al., 2001). 즉, 비준국들은 지역적 특성과 법적, 전문적 영역의 특성을 고려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UN아동권리위원회에 5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출된 보고서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며 그 보고서에 대해 권고의견

을 내놓는다. 이 권고의견을 받는 과정을 통해 아동권리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재 세계 각국의 아동들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협약은 서문을 통해 “아동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참여권은 특히 시민권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시민권은 지리적 사회적 지역의 명확한 구분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 자유, 평등, 거주권, 참정권 등을 보장함을 의미한다. 또한 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납세나 국방 등의 책임도 제도적, 법적으로 규정한다. 즉, 시민권은 국가와의 관계 내에서 정의되는 것이다(최원기 외, 2003). 이것은 18세기의 철학자 흄스의 ‘사회계약론’이나 루소의 ‘일반의지’에서도 현대적 의미의 시민권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시민권을 갖는 시민은 국가시민(*Staatsburgerschaft*), 혹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시민(*citoye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배동인, 1992).

이렇듯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 청소년이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UN아동권리위원회는 각 국가들이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증대하라고 제안한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각 국가의 의원, 공무원, 전문가 집단, 청소년과 그 부모에게 청소년 시민적 권리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청소년이 시민적 권리가 있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청소년이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Hodgkin & Newell, 2002).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참여권을 정의해 보면 ‘청소년 참여권은 자신의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

5) 청소년인권 인프라의 개념

청소년인권 인프라는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사회적 기반 및 여건, 시설, 조직, 정책, 제도 등을 아우르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과 체제’를 의미한다.

청소년인권 인프라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청소년인구, 청소년인권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에 해당하는 법·제도 구축정도, 행정조직과 활동, 비정부조직과 활동 등이 포함된다.

2. 청소년인권지표의 개념

지표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즉, 지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및 목적과 관련하여 이의 현황과 발전추세를 나타내는 규범적 성격을 지닌다는 협의적 관점과 규범적 상태를 포함하여 사회의 현황과 상태를 나타내는 기술치라는 광의적 관점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즉, 협의의 관점은 합의된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설정하고, 그 가치와 목적에 비추어 현재 도달한 상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수치를 말하고, 광의의 관점은 지표를 규범지향적인 상태를 포함하여 사회의 주요 관심사나 사회의 상태 또는 현황을 정확하게 측정·보고하여 주는 기술치로 본다.

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한 관점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협의의 규범적 성격이 광의의 기술적 성격에 포함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김진호 외, 2003). 그리고 청소년개발 및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지표에 대한 정의는 주로 광범위한 정의를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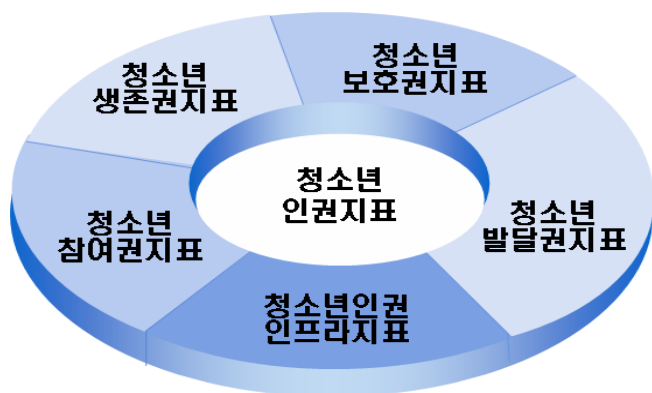
이종원 외(1997)는 「한국의 청소년지표」에서 청소년지표를 “청소년의 생활·환경의 실태와 그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계량화된 척도”로 정의하였다. 천정웅 외(1998)는 「청소년정책 평가지표체계 연구」에서 청소년육성지표를 “청소년의 삶과 생활수준을 파악하게 하고, 청소년정책

의 노력 정도 및 성과를 평가해주는 하나의 준거틀”로 정의하고 있다. 길은 배 외(2001)는 「청소년인권지표개발연구」에서 청소년인권지표를 “청소년인권 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 정도와 인권정책 효과평가를 위한 척도”로 정의하고 있다.

김진호 외(2003)는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연구」에서 청소년개발지표를 “청소년개발체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우리의 청소년개발이 어느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고, 청소년개발체제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청소년개발체제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통계치”라고 정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의들은 지표가 규범적인 성격과 가치중립적인 기술적 성격을 모두 포함한 통계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지표를 “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체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청소년인권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고, 청소년인권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청소년인권 실태와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통계치”로 조작적으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 청소년인권지표는 UN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인권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내용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이러한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내의 인프라(인적·물적 자원과 체제 등)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는 다음 [그림 II-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II-1]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

3. 청소년인권지표의 기능

사회지표의 기능은 상술한 사회지표의 정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다. Moser(1973)는 ①사회여건의 상태와 변동을 요약하는 사회정보(social intelligence), ②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 사회보고(social report), ③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전달하는 사회변화측정(social change monitoring)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Fanchette(1974)는 ①사회 상태와 변동의 추세를 기술하는 기술적(descriptive) 기능, ②지표간의 사회적 연계(social connection) 기능, ③정책결정자에게 사회변동을 추적 관리하게 하는 분석도구(analytic tool)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Land(1975)는 사회지표의 기능 집약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①사회 정책적 기능(social policy rationale), ②사회 변화적 기능(social change rationale), ③사회 보고적 기능(social reporting rationale)등 세 가지로 집약하였다. 사회 정책적 기능으로는 특정한 정부(공공)정책을 평가하고, 국민경제계정(national economic accounts)과 유사한 사회계정체계를 설정하며, 사회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성취할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사회 변화적 기능은 사회적조건(상태)를 측정하고, “삶의 질” 내지는 인간생활조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사회적 조건의 변화 상태를 측정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보고적 기능은 현재의 사회정보체계를 개선하고, 장래에 있을 사회 문제와 생활 상태를 예측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사회지표의 기능을 ①국민생활의 수준측정, ②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③사회변화의 예측, ④사회개발정책의 성과측정 등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통계청, 2002).

사회지표의 기능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사회지표의 제기능은 크게 사회엔지니어링적 기능(engineering)과 사회계몽적 기능(enlightenment)으로 집약할 수 있다(Land, 1975). 사회엔지니어링적 기능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와 목표에 대한 현황과 이를 향한 추세를 분석하여 사회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정책분석과 사회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사회 계몽적 기능은 사회보고의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서, 사회의 중요한 제 특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측정과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는 규범적 지표와 같이 청소년인권 관련 제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현황과 추세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적 기능과 기술적 지표와 같이 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한 체제의 특성과 변화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계몽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인권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수준의 달성수준과 변화를 파악하고, 청소년인권정책의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게 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에 대한 개입을 하게 한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제의 중요한 제 특성은 무엇이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며,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인권지표는 기존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메우고, 기존 통계나 각종 추정치간의 상호연계성을 회복하며, 광범위하면서도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집약시키는 정책결정자의 분석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의 주요기능을 김진호 외(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인권에 관한 현재의 상태와 변동추세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장래의 상황에 대한 예측의 지침이 된다. 셋째, 청소년인권에 대한 문제의 사전 경보장치의 역할을 한다. 넷째, 청소년인권정책의 목적설정과 성취를 평가하는 지침이 된다. 다섯째, 사회적 인과관계 해명과 문제의식 제고의 도구가 된다.

Ⅲ.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 권고내용과 시사점

1. 국제기구의 청소년 생존권 관련 권고 내용과 시사점
2. 국제기구의 청소년 보호권 관련 권고 내용과 시사점
3. 국제기구의 청소년 발달권 관련 권고 내용과 시사점
4. 국제기구의 청소년 참여권 관련 권고 내용과 시사점

III.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 권고내용과 시사점

청소년인권지표에 논의의 시작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에 바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협약은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법적으로 청소년이라고 칭하는 9~24세 중에서 인권상황이 취약한 20세미만의 미성년자, 특히 사회통념상 청소년인 중·고등학생을 거의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기준이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 등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인권지표를 구성할 때에도 이 틀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길은배 외, 2001). 즉,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며 또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보호권은 차별 대우로부터의 보호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고아들과 난민 아동의 보호가 포함된다. 발달권은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UN아동권리협약의 54개 조항을 네 가지 범주의 권리로 영역화하면 다음 <표III-1>과 같다. 일부 조항은 권리유형에서 중첩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호권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발달권, 참여권, 그리고 생존권 등의 순이다. 그런데, 관련 조항이 적다고 해서 그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생존권의 조항은 2개항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확보될 때만이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항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권내용들은 국제적 인정, 세계의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에 있어서는 일부 한계가 있다.

<표Ⅲ-1> 권리유형별 아동권리협약 해당조항

권리 유형	해당조항
생존권	생명의 존중,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제6조), 건강과 의료에 대한 권리(제24조)
보호권	차별과 관련된 협약(제2조 비차별, 제7조 성명과 국적, 제23조 장애아동, 제30조 원주민 아동), 착취와 학대에 관련된 협약(제10조 가족의 재결합, 제11조 불법 해외 이송과 미귀환, 제16조 사생활, 제19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제20조 가족이 없는 아동의 보호, 제21조 입양, 제25조 정기적인 심사, 제32조 아동노동자, 제33조 약물·학대, 제34조 성적 착취, 제35조 아동의 매매·유괴, 제36조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 제37조 고문과 자유의 박탈, 제39조 재활혜택, 제40조 미성년자법), 위기상황과 응급상황에 관련된 협약(제10조 가족의 재결합, 제22조 난민아동, 제25조 정기적인 심사, 제38조 전쟁, 제39조 재활혜택)
발달권	아동의 의견(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결사의 자유(제15조), 정보와 자료(제17조), 교육(제28조와 제29조), 놀이와 오락활동(제31조), 문화활동의 참여(제31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개인의 발달(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정체성(제6조, 제7조), 건강과 신체적 발달(제24조), 표현의 권리(제12조, 제13조), 가족(제9조, 제10조, 제11조)
참여권	적당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제17조),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이에 대한 국가의 원조(제18조),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제42조)

※ 자료: 길은배 외(2001), 청소년인권지표개발연구, p.24.

먼저,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청소년의 인권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협약은 생존권과 보호권의 보장상황이 취약한 나라까지 포괄하고 있어서, 보호권에 대한 항목이 많지만 그 해당 항목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인권지표’로 채택하기에는 대표성이 낮다. 불법 해외이송과 미귀환, 고문과 자유의 박탈, 난민아동 등은 그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들은 주로 상대적으로 저개발국이나 후진국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아동의 권리나 사

회성 발달과 같은 발전된 형태의 청소년인권지표개발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1. 국제기구의 청소년 생존권 관련 권고내용과 시사점

UN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가 2000년 5월 1일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2003년 1월 15일 제 838차 및 제 839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2003년 1월 31일 제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의견을 채택하였다. 그 중 생존권과 관련된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UN아동권리위원회는 1차 보고서 심의시 권고사항의 이행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유보사항 철회와 “여자어린이, 장애어린이, 혼외출생어린이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공공교육캠페인의 개발 (20항)” 등을 강조했다.

7. 위원회는 최초보고서(CRC/C/8/Add.21) 심의 후에 채택된 권고의견의 권고사항(CRC/C/15/Add.51, 1996.2.13), 특히 아래와 같은 문제가 대부분 불충분하게 이행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a) 유보철회 (19항)
- b) 여자어린이, 장애어린이, 혼외출생어린이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공공교육캠페인의 개발 (20항)
- c)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 대한 어린이의 참여촉진 (26항)
- d)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22항)
- e) 협약 29조에 규정된 교육의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책의 검토 (29항)

또한 UN아동권리위원회는 기존의 우려를 반복하며, 최초 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에 포함된 권고사항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에 포함된 우려사항의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생존권 지표를 개발하고자 할 때,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아동의 정의와 일반원칙에서 ‘무차별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명시적으로 “특히 한부모가정자녀, 혼외출생자녀, 장애어린이, 이주자 자녀, 여자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교육, 문제인식 캠페인 등 행동 지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을 볼 때, 생존권의 지표는 전체 청소년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여자청소년, 장애청소년, 이주자 자녀청소년, 혼외출생자녀, 한부모가정자녀 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9. 위원회는 협약의 일반원칙(무차별(2조), 아동의 최상의 이익 존중(3조), 생명발달권(6조),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어린이의 견해 존중(12조))이 국가 및 지방차원에서의 입법, 정책,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점을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a) 어린이 관련 법령에 이들 일반원칙을 적절히 통합한다.
 - b) 어린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결정과 사업에 이들 원칙을 적용한다.
 - c) 모든 수준에서의 정책 입안·결정과정 및 사회복지, 보건, 교육당국, 법원, 행정당국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에 이들 원칙을 적용한다.
31.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인종차별에 관한 정보가 없고, 한부모 가정자녀, 혼외출생어린이, 장애어린이, 여자어린이, 이주가정자녀 차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헌법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

적 견해, 민족, 장애, 출생 등에 기반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32. 위원회는 협약 2조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특히 한부모가정자녀, 혼외출생자녀, 장애어린이, 이주자녀, 여자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교육, 문제인식 캠페인 등 행동 지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3. 위원회는 협약 제29조 제1항에 관한 일반논평 1호를 고려하여, 차기 보고서에 2001년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계획의 이행노력 중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조치와 사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기초조건과 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그 중 청소년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은 “특히 HIV/AIDS, 성병, 10대의 흡연과 약물사용에 관한 교육 등 종합적인 청소년건강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보건에 관한 연구 실시”이다. 아울러, 장애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이주자녀인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매우 절실하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법령 등이 외국 어린이, 특히 불법이주노동자 자녀의 복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의] 높은 수준의 어린이 보건 수준을 평가하지만, 보건예산 비율이 1% 미만이며 90%의 보건의료기관이 민영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1990년대에 모유수유율이 상당히 하락한 점과 흡연, 필로폰 등 불법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49.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a) 보건예산을 증대하고 저소득층 가정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 b) 생후 6개월간 모유단독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유수유에 관한 국가규범 채택
 - c) 수유여성이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 d) 특히 HIV/AIDS, 성병, 10대의 흡연과 약물사용에 관한 교육 등 종합적인 청소년건강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보건에 관한 연구 실시
50. 위원회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러한 편견이 “어린이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고취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조건이 되는 충만하고 고귀한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매년 상당한 수의 장애어린이가 버려지고 있으며, 많은 수의 장애어린이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 다닐 경우 다른 어린이들과 분리 교육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51. 위원회는 1997년 위원회의 ‘장애어린이에 관한 토론의 날’에서의 권고사항 및 ‘장애인 기회균등에 관한 기준원칙(UN총회 결의 48/96)’에 따라,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 a) 부모·어린이·교사·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및 교육 캠페인 등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문화 근절을 위한 조치
 - b)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장애어린이의 숫자에 대한 종합적인 실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어린이의 교육수요, 교육과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 평가
 - c) 학교, 수련시설 등 공공건물과 장소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유치원·초·중·등·대학교육에서 통합교육프로그램 확대
58. 위원회는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법령 등이 외국 어린이, 특

히 불법이주노동자 자녀의 복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 a) 불법이주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 어린이들이 [국민인 어린이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특히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국내법 개정
-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1990년 협약 비준 고려

2. 국제기구의 청소년 보호권 관련 권고내용과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2차례에 걸쳐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UN아동권리협약이 사항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UN아동권리위원회는 3개 조항에 대한 유보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1차보고서에 대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실천되지 않은 점을 즉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즉,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관련 기준이 아동권의 보장, 증진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아동권리위원회는 각종의 차별이 존재하고, 조기교육 등 과도한 교육을 강조하는 상황, 학교 등의 교육기관이나 보호기관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일을 결정할 때 주체가 되는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철저히 소외된 채 매사를 결정하는 현실 등을 아동 권리 침해상황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제적 취약집단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학생의 표현, 결사의 자유보장, 체벌금지 등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권과 관련하여서는 각종의 차별과, 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보호기관에서 청소년에 대한 체벌이 인정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1) 청소년보호권 관련 1, 2차 정부보고서

정부의 보고서는 UN아동권리협약 관련 법령과 정책을 설명하는 형태로 협약의 이행정도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1, 2차 보고서는 모두 협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결국 협약 이행의 목표제시가 불분명하여 이에 따른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예산투입 규모나 확보방안 등을 알 수 없다. 해당 조항에 대한 수혜 대상의 범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 해당권리의 이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2차 정부보고서의 경우, 그동안 진전된 법규와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이 어려운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를 기초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법규와 통계의 나열이 대부분이다.

1, 2차 보고서에 나타난 보호권관련 내용도 정부의 이러한 보고형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UN에서 제시한 8개 클러스터별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호권의 하위영역별 내용이 ‘착취상황의 아동’이나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무차별’,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장애아동’, ‘법적분쟁상의 아동’,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일부 나타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권의 하위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각종 차별 철폐에 대한 정부의 이행내용도 취약하였다.

2) 보호권 관련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

2003년 1월 UN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정부가 낸 2차 국가 보고서에 대해 “한국의 아동관련 기준은 아동권의 보장, 증진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각종 차별이 존재하고, 조기 교육 등 과도한 교육을 강조하는 상황, 학교 등의 교육기관이나 보호기관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일을 결정할 때 주체가 되는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철저히 소외된 채 매사를 결정하는 현실 등을 아동권리 침해상황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집단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학생의 표현, 결사의 자유보장, 체벌금지 등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UN아동권리위원회는 “다양한 정부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중앙 기구가 없음을 우려”(D. 협약의 원칙관련 권고 14)하였고, 특히 협약의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적극 권고 하였다(D. 협약의 원칙관련 권고 15-16).

우리나라 1, 2차 보고서에 대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중 보호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UN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원조를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여러 지역에서 설립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피해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체계가 미비함에 대해서 UN아동권리위원회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동시에 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아동학대와 방임 관련 진정을 접수, 모니터,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 개혁을 포함하여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위원회는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서의 체벌사용과 관련된 결정을 개별 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 형태의 체벌이 수용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를 조성하려는 교육적 조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지만, 학교·시설 및 가정에서의 체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청소년 대상 성착취와 관련하여 UN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게 성적 서비스를 산 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아동 성착취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것과 “원조교제”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UN아동권리위원회는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계획에는 1996년과 2001년 ‘제 1, 2차 상업적 아동 성착취 철폐 세계 대회’에서 합의됐듯이 효과적인 자료 수집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청소년의 차별과 관련하여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제 42조의 관점에서 소녀, 장애아동, 혼외출생,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지속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 하에 공공 캠페인 전개 등 차별 범주에 속하는 아동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하여 즉시 효력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김인숙 외, 2004).

UN아동권리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 지원 없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기소가 필요한 경우,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되어야하며, 법집행공무원과 사회사업가 및 검사들에게 이점에 관한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자유의 박탈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보호처분과 관련된 모든 청소년에게 조기에 변호인을 보장하고, 연소자를 형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사의 자유재량(검사선의주의)을 없애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아동과 관련해서는 모든 장애아동의 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학부모, 아동, 교사 등 일반대중에 대한 인식향상과 교육운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취할 것 그리고 장애아동의 물리적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단계에서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3. 국제기구의 청소년 발달권 관련 권고내용과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1994년 11월과 2000년 5월에 각각 제출한 1, 2차 보고서에

대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 중 발달권과 관련된 권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차 권고에서 한부모가정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가정의 아동에 대한 차별행위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이며, UN아동권리협약에서 언급된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견, 민족적,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따른 차별을 대한민국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했다. 또한 아동의 생명권과 발달권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생명에 대한 예방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의사표현과 관련하여 UN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가 가정, 학교, 기타 기관과 사회 속에서 여전히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제한을 우려하였으며,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재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법원, 행정기구, 학교, 교육기관은 징계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했다. 특별히, 부모, 교육자, 행정공무원, 사법부, 그리고 일반사회에 아동의 의견청취와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의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장애아동과 관련해서는 모든 장애아동의 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학부모, 아동, 교사 등 일반대중에 대한 인식향상과 교육운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

는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취할 것 그리고 장애아동의 물리적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단계에서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육권과 관련해서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 제공되는 자원을 늘리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립학교에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공립학교의 질을 높일 것과 취학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과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개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4. 국제기구의 청소년 참여권 관련 권고내용과 시사점

1)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청소년 참여권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은 우리나라의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5월에 UN에 협약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UN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초에 보고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과 관련한 60여개의 권고사항을 제출하였다. 이들 권고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1994년 11월에 제출된 1차 정부보고서와 2000년 5월에 제출된 2차 정부보고서의 내용 중 참여권과 관련된 내용은 먼저 살펴보겠다.

1,2차 정부보고서의 내용은 서로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단지 1차보고서가 주로 관련법령을 언급하는 데에 치중했다면, 2차 정부보고서가 조금 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참여권과 관련된 클러스터는 주로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정보접근권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라도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부모의 종교를 자녀에게 강요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공중파에서는 아동관련 방송시간을 규정한다는 것과 도서관보급을 통해 청소년에게 양서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생의 학교에서의 학생회활동이나 동아리 참여의 보장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고 단지 헌법을 통해 한국 국민이 이런 자유를 가진다는 점만 일반적으로 간단히 설명하였다. 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UN아동권리 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참여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 위원회는 어린이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가 가정, 학교, 기타 기관 및 사회 일반에서 어린이의 견해 존중을 저해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35. 위원회는 협약 제 12조에 따라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a) 어린이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법원, 행정기관, 학교, 교육제도 내 징계절차에서 어린이의 의견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필요조치를 취한다.
 - b) 부모, 교육자, 공무원, 판사, 사회일반을 대상으로 어린이가 갖고 있는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할 권리에 관해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c) 정기적으로 어린이 의견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의견 존중이 정책, 사업,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36.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교외 정치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초중등학교 운영규칙 때문에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10대 청소년이 만든 인터넷게시판이 당국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한다.

37. 협약 제 12조~제 17조에 비추어, UN아동권리위원회는 어린이
들이 학교 내외에서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령과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학교운영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
고한다.

2)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

UN총회는 청소년의 해(1985년) 10주기를 맞은 1995년에 미래의 청소년 정
책의 청사진이 될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0개의 정책우선영역
(policy priority)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그것은 교육, 취업(employment), 기
아와 빈곤(hunger and poverty), 보건(health), 환경(environment), 약물남용(drug
abuse), 청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 여가활동(leisure-time activity), 여자청
소년(girls and young women), 의사결정에의 청소년참여(youth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이다.

2003년 UN총회 때 다시 아래의 5가지 우선영역을 추가하여 총 15가지 우
선영역을 갖추었다. 5가지 추가영역은 세계화(globalization),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에이즈(HIV/AIDS), 청소년과
무력분쟁(youth and armed conflict), 그리고 세대 간의 관계(inter-generational
relations)이다.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의 우선영역 중 참여권과 가장 관련이 되는 영역
은 ‘의사결정에의 청소년 참여’영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1) 청소년들이 참여할 기회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강화시켜나감.
- 2) 청소년들이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기회를 개발하고 강

화하며, 그들의 사회적·정치적·발전적 환경 분야의 참여를 증진하고, 사회에 대한 그들의 전적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 제거하고, 모임 결성의 자유를 존중할 것.

- 3) 청소년들의 모임과 그들의 활동을 신장시키는 재정적이고 교육적이며,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모임을 격려하고 증진시켜 나감.
- 4) 청소년들의 관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과 계획을 수립, 집행, 평가하는데 청년들의 기여를 고려함.
- 5) 증가하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과 청소년 단체 사이의 교류를 장려함.
- 6) 총회에 참가하는 대표단에 청소년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등 국제무대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할 것.

IV.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선행연구 분석

1. 청소년인권지표 관련 주요 선행연구
2. 하위영역별 선행연구 분석

IV.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선행연구 분석

1. 청소년인권지표 관련 주요 선행연구

1) 한국아동권리학회의 『30대 아동권리지표』

한국아동권리학회(1998)의 『아동권리지표』는 우리나라 아동의 지위와 그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계량화된 척도이다. 이 지표는 1994년 11월에 정부가 UN아동권리위원회에 ‘UN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제 1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한 후,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을 권고 받으면서 지표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개발된 지표이다. 특히, 이 지표는 개발과정에서 개별지표들이 UN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제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부지표마다 UN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인구, 생명 및 생존, 보건, 교육, 가족, 사회성발달, 사회보장, 경제, 문제행동과 사회적 환경 등 10개 지표개발 분야, 23개 관심영역, 67개 세부관심영역, 227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0개의 지표개발 영역에서 각각 3개의 주요지표를 선정하여, 총 30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IV-1>과 같다. 특히, 이 지표는 우리나라 아동의 고유한 모습과 상황을 적절하게 나타내며, UN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지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의미를 지니는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지표』는 아동권리학회 아동인권지표개발팀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아동복지지표를 답습한 분야 분류로 인하여 분류체계의 합리성에 있어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대표지표가 영역별 동수인 3개 지표 배분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는 등의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강조되는 지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표Ⅳ-1> 한국아동권리학회의 30대 아동권리지표

분 야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세부 지표 (아동권리협약 관련조항)
I. 인 구	아동인구 특징	아동 인구 크기	1. 총인구 중 아동의 비율 (1조)
		아동 인구 구성	2. 아동인구 구성비 (1조) 3. 아동연령별 성비 (1조)
II. 생명 및 생존	생명 및 생존	위 생	4. 상수도 보급률 (3, 24조)
		사 망	5. 영아 사망률 (6, 24조)
		안전 및 사고	6. 안전사고에 의한 아동 사(상)자율 (3, 24조)
III. 보 건	보 건	장 애	7. 장애 아동 출현율 (23조)
		질 병	8. 주요 아동질환 유병율 (24조)
		건 강	9. 아동 신체 충실지수 (24, 27조)
IV. 보 육	학습 준비도	문해 경험	10. 부모나 양육자가 책을 읽어주는 0-5세 아동의 비율
	보육 시설	시설 및 환경	11. 부대시설 보유현황 (18조)
		보육 혜택을	12. 일반아동/장애아동 보육율 (18조, 23조)
V. 교 육	교 육	교육의 기회	13. 취학율 (28조)
		교육의 과정	14. 학교교육 만족도 (29조, 28조)
		교육의 결과	15. 학업 성취도 (28조)
VI. 가 족	가족크기와 형태	가족형태	16. 가족형태별 분포 (18조)
	가족의 안정성	결혼의 해체	17. 이혼사건 자녀수별 구성비 (9조)
	가족 내 아동학대 및 방임	아동학대와 방임	18. 아동학대 유형별 구성비율 (19, 9, 34조)
VII. 사회성 발달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유능감	19. 아동의 생활만족도 (3조)
		여가생활	20. 아동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31조)
	시민의 권리와 자유	정보접근권	21. 학교별 컴퓨터 1대당 이동수 (17조)
VIII. 사회 보장	사회보장	공공부조	22. 사회복지예산 대비 아동복지예산 비율 (26조)
			23. 대상별 아동복지예산
			24. 아동인구대비 보호대상 아동비율
IX. 경제적 안정	가구의 경제적 능력	아동 양육비 부담	25. 최저 아동 양육비 이하 가구비율 (4, 18, 27조)
		가구의 구매력	26. 가구평균 소득 (4, 18, 27조)
	아동 자신의 경제적 능력	아동 자신의 고용	27. 취업아동의 평균임금 (32조)
X. 문제행동과 사회적 환경	문제 행동	비행	28. 주요범죄의 아동인구 구성 비율 (40조)
		비행의 처리	29. 아동범죄 처리의 유형별 분포 (40조)
	사회적 환경	유해 환경	30. 성폭력피해 아동인구 구성 비율 (34, 35조)

※ 자료: 한국아동권리학회(1998).

2)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지표(안)』

길은배 외(2001)가 개발한 『청소년인권지표(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권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이행 정도와 인권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인권 지표 개발보다는 청소년인권지표체계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인권지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과 개념정의가 부족하고, 청소년인권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지표들을 측정가능한 지표로 객관화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인권지표는 8개 분야, 15개 관심영역, 36개 세부관심영역, 142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Ⅳ-2>와 같다.

<표Ⅳ-2> 『청소년인권지표(안)』 구성 체계

부문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청소년 인구	청소년 인구	청소년인구	청소년의 수, 총인구중 청소년의 비율
		청소년 인구구성	인구비(연령층별), 성비(연령층별)
		출생사망률	조출산율(연령층별), 조사망률(연령층별)
건강 과 생존	건강	건강관리	비만율, 결식아동율, 양호실/양호교사 배치율, 학교급식 실시율, 약물오남용 및 치료·보호시설 수, 예산
		질병	청소년의 주요 질병 이환율, 미성년 임신비율, 청소년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생존	안전 및 사고	안전사고 발생률, 산업재해 발생률,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률
		사망	청소년의 원인별 사망률, 청소년의 자살률
가족	가족 형성	가족구성	연령별 혼인율, 부모동거 청소년 수, 미혼모 가정 수
		가족해체	연령별 이혼율, 부모이혼 시 자녀의 평균나이/양육자 구성비/부모선택권
	가족 생활	주거환경	가구당 주거 공간, 혼자 사용하는 공간과 침실의 비율
		생활안정	가구소득/지출 분포, 국가의 가족재정 지원을, 월평균 용돈/지출규모, 아르바이트 경험율, 시간당 아르바이트 금액
	가족 문제	가정환경	학대청소년 비율, 학대원인/빈도, 가출청소년비율, 학대신고센터 설치비율/예산
		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 수/비율, 소년소녀가장의 평균 부양가족 수, 편부/편모/고아의 친족가구율, 아동입양자수

교육	교육 기회	교육 기회	평균 교육수혜기간, 취학률, 진학률, 특수교육기관수/ 재학율, 성교육 실시율/시수
	교육 여건	인적/물적 자원	학생1인당 교사 수, 학급당 학생 수, 학교도서관, 교육용 PC 보급률
		진로교육	진로상담실 설치/전담교사 운영학교 비율, 진로상담 이용률, 직업교육 실시비율/시수
	교육 과정 결과	교육과정	보충수업/자율학습 실시율, 방과 후 활동과목의 자율적 선택율, 청소년의 학교선택권
		교육결과	중퇴율, 비행발생율, 학교 내 징계율, 교사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인권 교육	인권교육	교육과정 중 인권교육 실시율/시수,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전문가 수, 인권교육 관련 예산
문화와 여가	문화	문화 인프라	이용가능한 문화 활동 시설 수/이용률, 월평균 문화 활동비용, 문화 활동 1회당 평균지출, 문화 활동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예산
		문화생활	문화생활 경험율, 음반구입량, 잡지구입량, 문화생활시간, 문화생활만족도
	여가	여가인프라	여가시설 수/이용률, 여가활동비용, 여가활동 1회당 평균지출비용, 여가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예산
		여가생활	여가생활 경험율, 평균 독서권수, 여행경험율, 평균 여가시간, 여가활용방법, 여가생활만족도
사회 보장	사회 보장	사회보험	건강보험 수혜율, 건강보험의 수혜청소년 및 수혜 청소년당 급여액수
		공공부조	청소년인구 대비 보호대상 청소년 비율, 분류대상별 청소년 복지예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정의 청소년 수 및 예산, 학비지원 대상별 청소년 수 및 지원내용별 액수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요금 할인정도 및 비율(유형별), 요보호아동 발생 수, 가출청소년보호 시설 수 및 예산(유형별), 청소년관련 복지시설의 설치률 및 예산(유형별), 청소년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 현황(유형별), 청소년복지 관련 담당공무원 비율
시민권과 자유	시민권과 자유	종교의 자유	종교별 청소년인구 분포,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 비율, 종교기관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 중 다른 종교인의 비율
		의사표현의 자유	교지·신문발행 학교비율 및 예산(교급별), 두발 및 복장 자율화 허용 비율(교급별), 교내 징계시 의사소명권(교급별, 지역별), 16세미만 청소년의 법정 증인 사례수
		결사·집회의 자유	학생회 간부 출마자의 성적관련 자격제한 학교비율(교급별), 청소년 중 학생회 자치활동 참여비율, 청소년단체 현황 및 가입률(유형별)
		사회참여와 참정권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성별, 연령별), 청소년정책관련 활동 동아리 및 참여청소년 수(지역별), 교칙 제·개정 참

사회적 약자 청소년의 권리	사회적 약자 청소년의 권리		여 허용 학교비율(교급별, 지역별), 체벌제한 규정 보유학교 수(지역별, 교급별), 학교운영위원회에 청소년참여 보장 학교 수, 청소년의 선거 참가율(유형별, 연령별)
		법적 보호	보호처분대상 청소년 현황, 보호관찰대상자 중 사회봉사명령 대상 청소년 비율,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정보접근권	문화센터 설치율 및 이용률(유형별, 지역별),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률 및 도서대출 현황(성별, 지역별), 가구당 컴퓨터 보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월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성별)
		비행·범죄 청소년의 인권	청소년 비행·범죄율(유형별), 학교주변 및 교내폭력·협박 발생률(지역별, 교급별, 성별), 출소 후 보호 서비스의 이용률(유형별), 비행·범죄청소년 재활기관과 종사자 수 및 수용인원, 청소년비행·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할당된 국가예산 및 비율
사회적 약자 청소년의 권리	사회적 약자 청소년의 권리	근로청소년의 인권	청소년의 취업자 수(연령별, 성별), 모든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대한 청소년 임금 비율, 실업수당을 받는 청소년 비율, 근로청소년 중학교 재학율(교급별), 청소년의 평균 근로시간,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 수(유형별)
		장애청소년의 인권	장애청소년의 등록률(유형별, 원인별), 장애청소년을 위한 재활기관 및 의료기관수, 장애청소년 관련 학교 및 전문교사 수, 장애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등록률(교육기관별), 시설수용 장애청소년 비율, 장애청소년의 취업률, 장애청소년 의무고용 준수율
		여성청소년의 인권	성평등 교육 현황(학교교육시수, 정부예산 등), 여성청소년에 대한 폭력율(유형별, 공간별), 교칙에서 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있는 비율(교급별), 남아선호도, 진학·진로결정시 차별화 정도

※ 자료: 길은배 외(2001),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연구』, pp.139-145.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권리지표』

서문희 외(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권리지표』는 기존의 사회지표, 아동인권 관련지표, 청소년인권 관련지표,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관련 백서들을 참고하여 아동권리지표를 더욱 심화 발전시킨 것이다. 특히, 이 지표는 UN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일반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과 문화·여가활동, 특별보호조치 등으로 구성)을 수용하여 재편성하는 등 국가보고서 작성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아동권리지표』는 인구, 생존과 건강, 가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교육,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특별보호 등 8개 분야에서 16개 관심영역, 41개 세부

관심영역, 112개 개별지표의 지표체계로 구성되었다(<표Ⅳ-3> 참조).

그러나 이 지표역시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연구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해 본 결과 지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련 통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문제점과 상호 연동되는 것이지만 지표 자체의 방만함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연속적인 자료보다는 일회성 조사의 결과에 의존하는 측면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가 안정적·지속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주관적 지표로 보완하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통계가 정기적이고 연속성을 가진 데이터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Ⅳ-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권리지표』 체계

분야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세부관심 영역 수)
인구	인구특성	인구규모(1)
생존과 건강	건강	모자보건, 건강, 건강위해, 장애, 질병 및 의료이용(5)
	생존	안전 및 사고, 사망(2)
가족	가족형성	가족구성, 가족해체(2)
	가족생활	주거환경, 생활안정, 가족관계(3)
교육	교육기회	취학전교육, 일반교육, 특수교육, 인권교육(4)
	교육여건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비용(3)
	교육결과	교육결과(1)
문화와 여가	문화	문화생활(1)
	여가	여가활동(1)
사회복지	사회보장	재정, 기초보장(2)
	복지서비스	상담, 보육, 요보호아동 보호, 입양, 장애아동 보호, 학대아동 보호(6)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민적 자유와 권리	종교, 의사표현, 집회·결사, 인도적 처우, 정보접근(5)
특별보호	비행	비행, 범죄아동(2)
	근로	근로여건, 근로복지(2)
	성적학대 및 착취	성적학대 및 착취(1)

※ 자료: 서문희 외(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김영지 외(2004)의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는 청소년인권백서의 기본 틀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길은배 외(2001)가 제시한 청소년인권지표의 기본체계를 보완하여 청소년백서의 관심영역을 ①기초보건과 복지, ②가정환경과 양육, ③학대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④교육과 문화권, ⑤시민적 권리와 참여권, ⑥사회적 약자 및 특별보호 청소년, ⑦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정책 등 7개 영역으로 수정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Ⅳ-4>와 같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과 주요 이슈들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청소년인권백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인권지표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청소년인권의 영역을 7가지로 설정하면서도, 우리나라 청소년인권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표Ⅳ-4> 『청소년인권백서』의 청소년인권영역 구분과 하위내용

구 분	하위내용
1. 청소년의 기초보건과 복지에 관한 권리	○ 청소년의 영양과 건강권 실태 ○ 불의의 사고 예방과 안전 조치 실태 ○ 빈곤청소년의 복지수준과 실태 ○ 장애청소년의 기본적 복지 실태
2. 가정환경과 양육에 관한 권리	○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인권실태 ○ 이혼가정·한부모가정의 청소년보호 실태
3. 학대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청소년학대 실태 ○ 청소년의 문제행동 관련실태 ○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실태
4.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문화적 권리	○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태 ○ 청소년의 여가시간 확보와 문화향유권 보장 ○ 청소년문제에 대한 체계적 상담·실질적 지원 실태
5. 시민적 권리와 참여권	○ 학교운영에 청소년 참여 실태 ○ 사회생활에서 청소년 참여 실태

6. 사회적 약자 및 특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인권	○ 청소년 노동권 실태 ○ 이주노동자 아동의 차별실태 ○ 탈북청소년 인권실태 ○ 사법절차에서 청소년보호 실태
7.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정책	○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행정절차와 재정 ○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법령 제·개정 ○ 인권교육 실시 및 성인의 인식제고 ○ 청소년인권보장 위한 국가·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5)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실태 조사연구』

길은배 외(2005)의 『청소년인권실태 조사연구』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속에서의 청소년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한국아동권리학회(1998)의 30대 아동인권지표, 길은배 외(2001)의 청소년인권지표(안), 서문희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아동권리지표, 김영지 외(2004)의 청소년인권백서에서 설정한 인권영역과는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인권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인권 영역을 UN아동권리협약의 인권 4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설정하고, 이를 청소년의 생활영역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교차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UN아동권리협약의 4개 인권영역을 기본 틀로 구성하였고, 이를 다시 청소년의 생활영역과 교차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6) 이용교 외(2006)의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이용교 외(2006)의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는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시설아동의 인권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이 지표는 김영지 외(2004)의 영역분류와 마찬가지로 UN아동권리협약의 인권 4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별로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에 덧붙여 인프라 관련 아동권리보장체계를 관심영역에 추가하였다(<표IV-5> 참조).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는 아동복지시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에 내용적으로는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의 인권평가에 있어서도 UN아동권리협약의 4개 인권영역을 기본 틀로 구성하였다는 것과 이를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체계를 따로 지표화 하였다는 것은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표Ⅳ-5>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체계

관심영역 \ 시설종류별 지표수		양육	소규모	일시 보호	보호 치료
아동의 생존권	식생활 의생활 주거환경 보건 안전	23	16	16	23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아동입소시의 준비 시설에서 아동보호 체별과 문제행동 특별한 아동에 대한 보호 부모와의 관계증진 귀가, 퇴소와 사후지도	27	26	14	24
아동의 발달권	교육받을 권리 풍부한 인간관계 문화적 권리	11	11	3	9
아동의 자유권·참여권	개인생활에 대한 의사결정 사생활의 권리 용돈관리와 아르바이트 시설운영에 참여 지역사회와 관계형성	19	18	9	18
아동권리보장 체계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인권옹호 지침과 고충처리 인권교육 시설의 투명성 등	17	14	17	17
5개	23개	97	85	59	91

※ 자료: 이용교 외(2006)에서 재구성.

7) 외국의 청소년인권 관련 지표개발 현황

UNICEF의 세계아동상황지표는 7가지 하위영역과 47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있다. 7가지 하위영역은 기본지표와 기본지수 향상률, 영양, 보건, 교육, 인구, 경제, 여성 등이다. UNICEF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아동상황지표가 청소년의 성장이나 발달에 중점을 두어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에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주로 영양이나 보건, 의료에 집중되어 있어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미국 교육부의 청소년지표는 가족과 직장, 교육과 건강 그리고 행동이나 태도 등 청소년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통계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표는 인구, 학교와 관련된 특징, 고용과 관련된 특징, 학교와 일 이외의 활동, 보건 등의 5가지의 범주와 5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지표들은 생존권과 발달권의 지표에 치중된 측면이 강하며, 보호권과 참여권은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교육통계센터(NCES)가 제시한 청소년 지표는 앞선 교육부에서 분류한 통계와는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교육통계센터는 청소년지표의 범주를 크게 가정, 학교, 보건, 시민권과 가치, 미래 등 5가지로 나누고 개별 범주 내에 관련 지표(53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표 역시 생존권과 발달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뉴질랜드의 사회개발부의 아동청소년복지지표는 총 10가지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범주에 2가지에서 10가지의 지표씩 총 33개의 개별지표를 가지고 있다. 10가지 범주는 건강, 경제적 안정, 교육, 사법, 사회적 유대감, 보호와 지지, 안전, 시민권, 문화와 정체성, 환경 등이다. 특히, 이 지표는 다양한 인권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건강, 안전, 경제적 안정에 대한 지표들은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개별지표들이 뉴질랜드의 특수한 상황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원주민언어를 할 수 있는 마오리원주민 청소년 수 등), 청소년인권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Jones(2003)는 캐나다의 6~9세 그리고 10~13세 청소년에 대한 발달과 종교

에 대한 몰입(헌신)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캐나다의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1996-97)의 통계에서 산출된 것으로서, 학업성취와 전망, 교외학습과 교회활동, 부모와 부모의 지지에 의해 평가된 인성발달과 같은 발달의 제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발달권 측면의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Waters 외(2002)의 아동건강, 발달, 복지지표는 다른 지표들보다는 매우 세부적으로 개별지표들을 구성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지표의 범주로 건강, 교육, 환경, 서비스 전달을 구분하고 각 범주에 따른 관심영역을 나누고 있다. 이 지표는 무엇보다도 다른 범주들보다도 아동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강조하여 이 범주를 평가할 수 있는 개별지표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지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의 일부분들에 대한 시사를 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들을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Ⅳ-6> 외국의 청소년인권 관련 지표

지 표 명	영역 (지표수)	하위영역	근거
UNICEF의 세계아동상황 지표	7영역 (47지표)	기본지표와 기본지수 향상률, 영양, 보건, 교육, 인구, 경제, 여성	
미국 교육부의 청소년지표	5영역 (59지표)	인구, 학교와 관련된 특성, 고용과 관련된 특성, 학교와 일 이외의 활동, 보건	2005
미국 교육통계센 터(NCES)의 청소년지표	5영역 (53지표)	가정, 학교, 보건, 시민권과 가치, 미래	199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의 아동청소년 복지지표	10영역 (33지표)	건강, 경제적 안정, 교육, 사법, 사회적 유대감, 보호와 지지, 안전, 시민권, 문화와 정체성, 환경	
캐나다 청소년개발 지표	4영역 (46지표)	학업성취와 전망, 부모가 평가하는 인성발달, 과외학습과 활동, 부모의 지지	Jones (2003)

Waters 등의 아동건강, 발달, 복지지표	4영역 20 소영역 · (144 지표)	건강: 부모의 건강과 복지, 흡연, 알코올, 기타약 물, 음식 및 영양, 놀이와 여가, 아동복지 교육과 과업: 교육과 학습, 독해와 문해, 소득과 생활조건, 고용요인과 부모의 건강·복지 우호적 환경: 생태체계적 환경과 안전성을 포함 한 자연환경, 범죄와 안전, 교통, 놀이와 여가시설, 주거, 일반, 공식적 사회연대, 비공식적 사회연대, 양육 서비스전달: 건강증진·예방·조기발견, 주보호	2002
-----------------------------------	-----------------------------------	--	------

2. 하위영역별 선행연구 분석

1) 청소년 생존권 관련 지표개발 선행연구 분석

(1) 국내 청소년 생존권 관련 지표개발 사례분석

국내에서 청소년 생존권 지표만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례는 없다. 다만,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연구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생존권을 함께 다룬 사례가 있고, 각종 청소년관련 지표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생존권을 중요하게 다룬 적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생존권과 관련된 지표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아동권리학회의 『아동권리지표』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지표개발팀(1999)의 『아동권리지표』에서 생존권과 관련된 지표항목은 생명 및 생존, 보건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생명 및 생존분야는 세부관심영역으로 위생, 사망, 안전 및 사고를 다루고, 보건 분야에서는 장애, 질병, 건강을 다루었다.

②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서문희 외(2003)가 개발한 『아동권리지표』는 지표개발의 영역을 크게 인구, 건강과 생존, 가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교육,

문화와 여가, 사회복지, 특별보호 분야로 나누어서 개발하였다. 그 중 생존권과 관련된 지표항목은 건강과 생존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강의 세부지표는 저체중아출생률, 모유수유율, 예방접종률, 신체질량지수, 우울감 경험 아동비율, 자살사고 아동비율, 학교급식의 식중독 발생률, 음주율, 흡연율, 유해약물사용 경험률, 장애아동출현율, 유병률, 의료이용 충족률로 파악되었다. 생존의 세부지표는 안전사고 사상 아동비율, 안전교육을 받아본 아동 비율, 사회 안전에 대한 아동의 인식도, 사망률로 파악되었다(서문희 외, 2003).

③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연구』

길은배 외(2001)의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연구』는 청소년 생존권과 가장 근접한 연구로서, 청소년인구, 건강과 생존, 가족, 교육, 문화와 여가, 사회보장, 시민권과 자유, 사회적 약자청소년의 권리 등 8개 분야에서 생존권과 관련된 분야는 건강과 생존이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과 관련하여 건강관리, 질병으로 세부관심영역을 구분하였고, 생존은 안전 및 사고, 사망으로 세부관심영역을 구분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④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연구』

김진호 외(2004)의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연구』에서 청소년의 생존권과 관련된 지표는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건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에서는 체격, 체력, 신체건강으로 세부관심영역을 구분하고, 정서적 건강은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충동, 심리적 안녕감으로 관심영역을 구분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의 정도를 나타내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생존권 지표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안전이나 위생, 적절한 생활을 할 권리 등이 누락되기 쉽고, 약물오남용, 성병 등 청소년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지표들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권 지표는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건강을 포괄하면서도 좀 더 넓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외 청소년 생존권 관련 지표개발 사례분석

청소년권리지표 특히, 국제 비교를 위한 청소년생존권 지표 등을 위해서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지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유니세프(UNICEF)의 세계아동현황보고서(The States of the World's Children), UN개발기구(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및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등을 들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IV-7>과 같다.

<표IV-7> 청소년권리지표 관련 주요 국제기관의 자료 현황

자료명	발행기관	발행주기	주요 특성
인권위반통계집	국제사면기구	연중	세계 각국 인권상황변화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자료 제공
세계아동현황 보고서	UN아동기금 유니세프(UNICEF)	연간	UN 전체 회원국 아동, 가족, 및 여성 실태에 대한 100개 지표 제시
인간개발보고서	UN개발기구 (UNDP)	연간	UN 전체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상황변화에 대한 100개 지표 제시
통계연보	유네스코 (UNESCO)	연간	UN회원국의 교육, 과학, 문화 실행 상태에 대한 150개 지표제시
세계보건보고서	세계보건기구 (WHO)	연간	UN 전체 회원국의 보건, 질병, 사망률 등에 대한 지표제시
세계개발보고서	세계은행 (World Bank)	연간	UN 회원국의 경제개발 및 무역 등에 관한 비교 지표 제시

① 새천년발전목표(MDGs) 모니터링 지표

새천년발전목표(MDGs)는 새천년 선언(the Millennium Declaration)에서 비롯된 모든 UN 회원국들이 합의한 성명서이다. 여기에서는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담고 있다. 특히, 빈곤, 기아, 교육, 건강을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특히 하루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들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5세 이하의 유아 사망률의 2/3 수준으로 감소시키며, HIV/AIDS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며 식수난 문제를 해결하는 등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03년 UN에서는 “새천년 발전목표 모니터링 지표: 정의·근거·개념·자료원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Definitions, Rationale, Concepts, and Sources)”을 발표하였다. UN의 새천년발전목표 (MDGs) 모니터링 지표에서는 8가지 목표³⁾와 18가지의 하위목표 또는 당면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표들이 발전의 성과를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표를 보다 잘 달성할 수 있도록 48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새천년발전목표는 국제사회를 위한 공통의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에서의 그 현황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새천년발전목표는 또한 지원가능국가(donor countries)들로 하여금 일부 발전 도상국가(developing countries) 들이 2015년까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뒤처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천년 발전목표는 아동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세계청소년보고서(World Youth Report)”는 청소년과 관련하여 새천년목표를 강조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04a; 2005). 다시 말해, 새천년발전목표에는 청소년이 중요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5개의 목표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들 목표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교육달성, 교육에서의 양성 평등, 모성보건 개선, HIV/AIDS 및 말라리아, 결핵 등 여타 질병과의 전쟁,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고용기회 개선 등이 포함된다. 세계청소년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새천년발전목표의 지표는 다음의 <표IV-8>과 같다.

Perezniето(2005)는 새천년발전목표(MDGs)는 아동권리협약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상호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그 목표와 하위목표를 아동권리 협약에 규정된 생명권, 생존권 등과 연결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즉, 위에서 제시된 UN 2005년 세계청소년보고서의 목표와 하위목표에 추가하여 목표 4

-
- 3) 새천년발전목표는 새천년발전목표가 제시하고 있는 8가지 목표는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근절, ②보편적인 1차 교육의 달성, ③양성 평등과 여성 권한 부여의 증진, ④아동 사망률의 감소, ⑤모성(산모) 보건의 개선, ⑥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과의 전쟁, ⑦환경적 지속가능성의 보장, ⑧발전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의 개발이다.

의 “아동사망율의 감소”와 그 하위목표인 “5. 1990년과 2015년까지 5세미만 아동사망율의 2/3수준으로 감소”를 추가하고 있으며, 목표 6의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과의 전쟁”과 관련하여 그 하위목표로 “8.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 발생을 2015년까지 중단 및 감소 시작” 등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앞서의 UN보고서가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연령에만 관련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Pereznieto는 0세 이상의 아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확대한 것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관련한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 6조를 비롯하여, 제 2조, 제 4조, 제 24조, 제 27조 및 제 28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Ⅳ-8> 새천년발전목표, 하위목표 및 청소년관련 지표

목표	하위목표	지표
1. 극심한 빈곤과 기아 근절	1. 1990년과 2015년 사이 일일 US \$1 미만 소득 인구비율의 반감 2. 1990년과 2015년 사이 기아 인구비율의 반감	1. 일일 US \$1 미만으로 사는 인구 구성비(1993년 구매력 지수) 4. 5세 미만 저체중아 보유율
2. 보편적 일차교육의 달성	3. 2015년까지 전 세계 남녀아동 청소년의 초등교육 전 과정 이수 보장	8. 15-24세 청소년 문맹률
3. 아동사망률의 감소	4. 초중등 교육에서의 성불균형을 2005년까지 우선 제거하고 2015년 이전까지는 전체 교육에서 제거	9. 초, 중등, 고등 교육에서의 남자 대비 여자의 성비 10. 15-24세 남성 대비 여성의 문맹률
5. 모성(산모) 보건의 개선	6. 1990년과 2015년까지 산모 사망률 75%까지 낮춤	16. 모성(산모) 사망률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과의 전쟁	7. HIV/AIDS확산을 2015년까지 중단 및 감소 시작	18. 15-24세 임산모의 HIV 보유율
8. 발전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의 개발	16. 발전도상국과 협력하여, 양호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일자리 마련 전략 개발과 실행	45. 15-24세 청소년의 성별 및 전체 실업률

자료: World Youth Report 2005: Young people today, and in 2015, United Nations, 2005, p. 25.

②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표』

세계은행(World Bank, 2004)의 『세계발전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는 새천년발전목표를 포함 세계적 견해(world view), 인구, 환경, 경제, 금융 및 지구적 연계(global link) 등의 6개 부문에 걸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생존권 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지표로는 세계적 견해, 인구 두 개 부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먼저 세계적 견해 부문에서는 인구 1,000명당 5세 미만 사망률(5명), 출생 시 보건요원 참여율(100%), 10만 명 출산 당 산모 사망률(20명), 15~24세 청소년의 HIV 보유율(0명),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91명), 정수된 식수원 사용 인구비율(92%), 15~24세 청소년 실업률(8%), 여성인구비율(49.7%), 15~19세 여성 중 10대 산모비율(자료 없음) 등이 있다. 그리고 인구부문에서는 1일 1달러 미만 빈곤 인구율(2%미만), 남자 취업자 중 15~24세 인구비율(10%), 여자 취업자 중 15~24세 인구비율(7%), 노동인력 중 10~14세 아동청소년비율(0%), 15~64세 인구 중 연금수혜 대상비율(43%), 15~64세 노동인구 중 연금수혜대상 비율(58%), 수세식 등 위생설비 사용률(63%), 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생률(4명) 등이 주목된다.

③ UNICEF의 『아동권리지표』

UNICEF는 세계아동정상회의에 대한 후속활동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지표개발을 위해 오래 동안 노력해왔다. 특히, 세계아동현황보고서(State of the World's Children)는 매년 아동복지와 관련된 많은 변수들에 대한 최근의 실태를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아동권리협약의 실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선 UNICEF는 1998년 아동권리 지구적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indicators for global monitoring of child rights)를 제시한 바 있으며, 매년 발간하는 세계아동현황보고서를 통해 주요 지표에 대한 세계적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06년 세계아동현황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6: Excluded and invincible)”를 통해 기초지표, 영양, 보건, HIV/AIDS, 교육,

4) 괄호안의 내용은 한국의 지표를 나타낸 것이며, 기준연도는 지표마다 상이함.

인구지표, 경제지표, 여성, 아동보호 등의 9개 부문에 걸쳐 세계 각 국가별 상세지표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생존권과 관련하여서는 기초 지표, 건강과 영양, HIV/AIDS 및 아동보호 부문에서 많은 직접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새천년발전목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및 기타 지구적 약속과 관련하여 각 국가의 진전 상황을 각 지표별로 모니터하고 있다. 이를 위해 UNICEF는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지표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 된다(UNICEF, 2006).

<표IV-9> UNICEF 아동현황보고서에서의 생존권 관련 지표

영역	지표	한국	세계평균
생존	출생 시 평균여명(2004)	77	67
	출생 1000명당 유아 사망률 (1세 미만)(2004)	5	54
	출생 1000명당 5세 미만 사망률(2004)	6	79
	5세 미만 사망률, 연평균 감소율(1990-2004)	2.9	1.3
	출생 10만 명당 모성 사망 비율 (2000, 조정)	-	400
건강 및 영양	저체중 영아 비율(1998-2004)	4	16
	5세 미만 보통이상의 저체중아 비율(1996-2004)	-	26
	개선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2002)	92	83
	도시	97	95
	농촌	71	72
	적절한 위생설비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2002)	-	58
	다음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1세 유아(2004)		
	결핵(BCG)	93	84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PT3)	95	78
	소아마비	90	80
경제 지표	홍역	99	76
	B형 간염	92	49
	혈우병 인플루엔자 (Hib3)	-	-
	1 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비율(1993-2003)	<2	21
	성인 보유 비율(15-49세, 2003년 말)	<0.1	1.1
HIV/AIDS	HIV/AIDS 감염 성인 및 아동(0-45세) 추정수(2003)	8.3	37,800천
	HIV/AIDS 감염 아동(0-14세) 추정수(2003)	-	2,100천
	HIV/AIDS로 고아가 된 아동(0-17세) 추정수(2003)	-	-
	출생 등록(1999-2004)	-	45*
아동 보호	도시	-	62*
	농촌	-	35*

* 중국 제외.

④ UNICEF의 『아동권리와 아동빈곤지표』

아동권리 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주목할 국제적 관심의 또 다른 하나는 아동빈곤지표 개발에 관한 것이다. 빈곤은 생존과 발달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조기 사망과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아동의 참여를 지체시키고 방해하기도 한다. 최근 “2005년도 세계 아동현황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5)” 등 UNICEF에 발간된 여러 연구보고서에서는 빈곤이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권리들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UNICEF에 제출된 아동권리와 아동빈곤에 관한 한 보고서, “아동권리와 발전도상국의 아동빈곤(Child rights and child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는 발전도상국가의 아동인권지표를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의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제시하고 있다(Gordon, Pantazis, & Townsend, 2006).

(a) 발전도상국의 아동빈곤과 인권지표

UNICEF의 『아동권리와 발전도상국의 아동빈곤(Child rights and child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에 관한 보고서는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들을 일곱 개로 범주화하고 관련된 지표를 국제기구들이 수집한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표 중에는 직접적 측정이 가능한 것 10개와 간접적으로 측정한 것 17개가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세계인권선언에 입각한 지표개발이 국가간 비교를 위한 지표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한 지표개발을 시도하였다. 즉, 아동권리협약의 각 권리조항을 모두 10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4가지 기본원칙 즉, 무차별의 원칙(제 2조), 아동 최상의 이익 존중(제 3조), 아동 견해와 참여권의 존중(제 12~15조) 및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 6조) 등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표Ⅳ-10>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생존권관련 아동인권지표

기준 인권협약	인권	주요 지표
세계인권선언	생명권(제3조)	유아 사망률(출생 100명당) 5세미만 사망률(출생 100명당) 40세까지 생존 불가능한 퍼센트 HIV/AIDS 비율 (15-49세)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25조)	저체중아 (5세 미만) 일일 \$1 미만 인구비율 일일 \$2 미만 인구비율 국가빈곤선 이하 비율
	안전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제22조)	안전한 식수에의 접근불가능 비율 보건서비스 접근 불가능 비율 위생처리에 대한 접근 불가능 비율 예방접종 접근 불가능 비율
아동권리협약	보건 서비스 등 (제 24조)	예방 접종받은 아동 비율 다일리아(설사병)에 대해 치료받지 못한 비율 및 치료받은 형태 영양결핍 아동의 비율

자료: Gordon, Pantazis, Townsend (2006). p. 4 및 9에서 재구성.

(b) 선진국의 아동빈곤과 인권지표

아동빈곤은 발전도상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UNICEF(2005b)에서 발간된 『선진국에서의 아동빈곤 2005 (Child Poverty in Rich Countries 2005)』에 의하면, 최근 10년간의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볼 때 24개 OECD 회원국가 가운데에서 17개 국가에서 아동빈곤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ovell과 Howe(2001)에 의하면, 캐나다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빈곤문제가 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에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서구 산업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산업국가에서의 아동빈곤을 연구한 Cornia와 Danziger(1997)에 의하면, 아동 빈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크게 완화되었으나, 역설적이게도 아동인권협약이 제정되고 발효된 시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아동 빈곤의 완화 속도가 점차 지연되기 시작하여 그 후 점차 악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빈곤이 악화되는 정도는 스웨덴, 일본, 이탈리아에서 보다

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현재 OECD는 3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생존권 지표 개발에 선진국에서의 아동빈곤과 관련된 실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 보고서에는 아직 한국에 관한 관련 수치나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항목을 사용하고 있다. 즉, 국가별 소득 중간값 50% 미만 소득의 가계로 정의되는 “상대적” 빈곤에 살고 있는 아동비율, 그리고 중간값 40% 및 60% 미만의 소득 가계 아동의 비율이 국가별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족생활, 노력시장조건 및 정부정책에 대한 몇 가지 지표도 확인된다. 예컨대, 편부모가구 아동 및 청소년, 부모의 학력 및 소득 수준 10% 미만, 25% 미만 등과 관련한 자료 등이 제시되어 있다.

⑤ 아동감시 국제연구네트워크의 『아동권리모니터링 점검표』

국제아동감시기구(Childwatch International)는 1998년 3년여의 연구를 통해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였다. 당초 목표는 지표의 수집과 측정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따른 이론적 분석 및 그 방법과 지표를 8개 국가에 실제로 적용한 것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8개 국가로는 세네갈, 베트남, 니카라과, 태국, 베네수엘라, 벨기에, 짐바브웨, 우크라이나 등이었다(Ennew & Miljeteig, 1996).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점검표로도 사용되고 있는 이 지표는 UN아동권리협약의 각 조문별로 필요한 이행요건과 목록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즉, 아동에 대한 개념, 실행일반원칙, 교육, 레저 및 문화 활동, 가족 환경과 대체 케어, 특별보호, 시민권과 자유, 건강, 영양 및 복지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아동권리협약의 해당조문별로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UNICEF에서 발간된 “아동권리협약 실행 핸드북(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협약의 각 조문별로 실행점검표(implementation checklist)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생존권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조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 6조의 경우를 이행하는데 따른 주요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Hodgkin & Newell, 2002).

- (1) 국내 입법에서 제 6조의 일반원칙에 반영되어 있는가?
- (2) 유아사망율과 아동사망률 감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 (3) 유아사망율과 아동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가?
- (4) 연령별 내용을 포함하여 임신중절이 기록 및 보고되고 있는가?
- (5)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적절히 규율되고 있는가?
- (6) 유아살해가 없는 점에 국가는 만족하고 있는가? 특히 소녀 및 장애아동의 경우는 어떤가?
- (7) 아동 임신율은 기록 및 보고되는가?
- (8) 아동임신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 (9) 사형선고가 아동에게 적용된 경우가 있는가?
- (10) 유아 살해 죄에 대해 국내 입법에 규정이 있는가?
- (11) 아동자살이 기록·보고되며 또 자살률이 연령별로 분석되고 있는가?
- (12) 아동자살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2) 청소년 보호권 관련 지표개발 선행연구 분석

(1) 국내 청소년 보호권 지표 관련 선행연구 사례분석

국내의 청소년 보호권과 관련한 지표개발 연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2)의 ‘청소년유해환경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도종수 외(2002)의 ‘청소년 보호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있다. 그리고 김진호 외(2003, 2004)의 ‘청소년 개발지표 개발연구’, 길은배 외(2001)의 ‘청소년인권지표개발연구’, 서문희 외(2003)의 ‘아동권리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1998)의 ‘한국의 아동지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권과 관련된 지표가 일부 개발된 예가 있다. 이 절에서는 청소년 보호권과 관련된 지표개발 사례를 분석하고, 보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한국아동권리학회의 『한국의 아동지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아동권리학회(1998)는 한국의 사회지표, 여성 사회지표, 한국의 청소년 지표, 한국의 교육지표 등이 개발되었으나 아동

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처음으로 아동지표를 개발한 것이다. 이 지표에서는 청소년보호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UN아동권리위원회의 차별시정 요청과 관련하여 특수교육 출현율, 통합교육 실시비율 등과 같은 일부 관련지표만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 보다는 아동기에 중점을 둔 지표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의 주요한 보호권 지표인 유해물질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②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지표』

서문희 외(2003)에 의해서 개발된 이 지표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한 국가 보고서 체계에 기초하여 인구, 생존과 건강, 가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교육,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특별보호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청소년보호권과 관련된 지표는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와 관련된 가족영역, 특별보호 조치와 관련된 특별보호 영역에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권의 주요 관심영역인 유해매체·유해업소·유해지역·유해물질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와 관련된 지표나 차별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유해환경으로 부터의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권의 지표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③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개발지표』

김진호 외(2003, 2004)에 의해 개발된 이 지표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청소년보호관련 예산 등 인프라와 관련된 영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비행이나 청소년범죄 등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된 내용들도 일부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UN아동권리협약 중 보호권과 관련된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학교체벌이나 불합리한 형벌과 관련된 지표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연구가 인권으로서의 청소년보호권 신장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청

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투입요인으로서 청소년보호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④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연구』

길은배 외(2001)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유도하고, 포괄적이면서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인권이 다의적이고 객관화·수량화가 어려운 추상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지표개발에 한계가 있지만, 청소년개발이나 발달보다는 청소년인권으로 개념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기초로 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보호권과 관련된 지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다른 지표개발 연구와는 달리 여성청소년의 성차별을 지표에 포함시킨 것은 흥미롭다. 각종의 차별 시정 요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차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보호지표개발연구」

도종수 외(2002)에 의해 개발된 이 지표는 청소년 비행과 문제행동이 증가하는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이것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하였다. 청소년기의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은 청소년보호 영역별 현황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청소년보호 영역별 지표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보호 영역별 현황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도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김진호 외, 2003).

⑥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지표 개발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2)에 의해 개발된 이 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발적인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특히,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줄여나가고 긍정적인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진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분야별, 지표별 가중치를 결정한 후,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김진호 외, 2003). 이 연구는 청소년 보호권 지표개발연구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 환경의 정도를 평가한 연구로 볼 수 있다.

(2) 국외 청소년 보호권 관련 지표개발 사례분석

국외의 청소년보호권 관련 지표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설정한 4가지 아동권리영역 이행수준 측정을 위한 하위범주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당사국들 자국의 상황에서 개선이 요구되거나 개발이 필요한 영역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지표이기 때문에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연령상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표가 개발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아동지표가 청소년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아동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① UNICEF의 『세계아동상황 지표』

UNICEF에 의해 매년 출간되는 “세계아동현황보고서”는 세계아동들의 생활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UNICEF는 질병에 걸려 고통 받게 될 아동, 어린 나이에 죽어갈 아동들이 극심한 빈곤과 영양실조로부터 벗어나고, 안전한 식수를 마시며, 개선된 위생시설을 이용하고, 초등교육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새천년발전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유엔회원국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UNICEF의 “2006 세계아동현황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6: Excluded and Invincible)에서는 영양, 보건, HIV/AIDS, 교육, 인구지표, 경제지표, 여성, 아동보호 등 9개 부문에 걸쳐 세계 각 국가별 관련지표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권과 관련하여 5~14세 아동들의 노동착취를 개별지표에 포함하고 있다.

② UN이 제시한 국가행동계획의 4가지 영역 21개 지표

2002년 5월 세계 189개국, 350여명의 아동대표와 61명의 국가원수, 그리고 1200여명의 정부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UN아동특별총회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UN아동특별총회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국가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가 나서서 장·단기 아동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UN아동특별총회는 세계 각국이 향후 10년간 각국이 아동의 복지와 권리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국가행동 계획을 수립하자는 결과문서를 채택하였다. 결의문 채택 이후 1년 이내, 즉 2003년 말까지 각국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짐하였다. 국가행동계획에는 가족이 사회의 기초단위이며, 아동의 보호·육성 및 개발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인식하에 가정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고, 인신매매 피해아동, 소외아동, 부모나 여타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빈곤이 아동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저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빈곤퇴치 전략을 담고 있어야 한다.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등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과, 여아에 대한 보호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후세대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존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각국은 보건, 교육, 학대, 착취 및 폭력 근절, HIV/AIDS 퇴치의 4가지 목표에 따라 설정된 21개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한다. UN이 제시한 국가행동계획의 4가지 영역 21개 지표 중 청소년 보호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3- 학대, 착취 및 폭력 근절(Protecting against abuse, exploitation and violence)

- (1) 아동을 모든 형태의 학대, 착취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
- (2) 아동을 무력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법 및 인권협약 준수
- (3) 어린이에 대한 이상성욕, 인신매매, 납치 및 성 착취 등으로부터 아동보호
- (4) 아동노동에 관한 ILO협약 제 182호에 규정되어 있는 극악한 형태의 아동 노동 철폐를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강구
- (5)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③ 미국의 『청소년 지표(Youth Indicators 2005; Trends in the Well-Being of American Youth)』

미국의 청소년지표는 미국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에 의해 1988년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이 보고서는 학교와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2005년에는 다섯 번째 청소년지표가 출간되었으며,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지표는 14~24세까지의 청소년들에 대한 보건, 학교와 학교 외 활동, 경제적 요소, 가족구조 등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④ 미국의 『아동복지 지표』

1997년부터 미연방 아동가족 통계청(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Forum)은 어린이와 가족의 복지지표를 America's Children in Brief :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을 통해 알리고 있다. Forum은 1년에 한 번씩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업데이트(<http://childstats.gov>) 하고 있으며, 5개 지표의 틀 안에서 2년 한 번씩 그 당시 중요한 상세지표를 선정하여 이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⑤ 영국 교육부의 『아동·청소년 발달 기준(Every Child Matters)』

영국 정부는 2003년 9월 아동서비스의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영국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재구조화하였다. 영국 정부는 2004년도 아동법에 의거하여 아동서비스 목표를 건강하게 발달하기, 안전한 생활 유지하기, 즐거우면서 성취하기, 긍정적 기여하기, 경제적인 안정을 규정하였다. 영국정부는 상태의 개념으로 아동청소년발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herrod et al., 2006).

⑥ Child 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지표』

Child 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와 영국 캠브리지 대학 가족

센타가 공동으로 UN아동권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여러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동권리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는 모니터링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UN협약의 각 조항을 충족할 수 있는 목록을 자세하고 제시하고 있다(황옥경, 2002; <http://www.childwatch.org.net>).

이 지표에는 아동에 대한 개념, 일반원칙, 교육, 레저 및 문화, 가족환경과 대안양육, 특별보호, 시민권과 자유, 건강, 영양 및 복지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표를 토대로 민간기구, 국제민간기구들, 그리고 학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5개국(니카라과, 세네갈, 태국, 베트남, 짐바브웨)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하였고,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인 1997년 7월부터 첫 번째 단계의 연구결과의 다른 나라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황옥경, 2002).

⑦ 호주의 『청소년과 지역사회 관련지표 - 멜버른시 “지금 여기서”(제2차 청소년 대책 초안- Here & Now, Draft Youth Strategy 2000-2003)』

이 지표는 호주의 멜버른 시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시의회의 역할과 방법 및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이 지표는 청소년문제 중심의 지표라기보다는 청소년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가치인정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지표는 청소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격려하고, 참여를 늘려 나가는데 필요한 자원과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조기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을 보다 강조하면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탄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지표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인구(총 인구, 연령대별 인구, 학력별 인구, 출신지별 인구, 주거상태, 직업별 인구, 실업문제 등), 청소년방문자(총 방문자수, 주중 방문자, 주말 방문자, 방문목적, 교통수단 등), 무주택 가출 청소년 및 소외계층(청소년 가출자 및 무주택자 수, 가출 원인, 카이로스 플레이스 프로젝트 등 무주택 가출 청소년 프로그램 등), 학생(교육여건, 직업교육 등), 마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소년 발달권 관련 지표개발 선행연구 분석

(1) 국내 청소년 발달권 관련 지표개발 사례분석

우리나라의 청소년발달권 관련 지표는 주로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지표에서 다양한 권리 중 하나로 다루어지거나, 내용상 청소년개발과 관련된 지표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 발달권을 직접적인 주제로 하여 개발된 지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진호 외(2003, 2004)의 청소년개발지표와 관련된 연구가 청소년 발달권에 가장 밀접한 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 발달과 개발은 개념적 의미상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진호 외(2003, 2004)의 연구도 청소년발달보다는 청소년개발의 관점에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관점이 강조되는 청소년의 발달권 지표라고 볼 수 없다.

①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연구』

길은배 외(2001)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에서 발달권과 관련된 지표는 교육(교육기회, 교육여건, 교육과정 및 결과, 인권교육), 문화와 여가(문화인프라, 문화생활, 여가인프라, 여가생활), 사회보장(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시민권과 자유(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회참여와 참정권, 정보접근권), 사회적 약자 청소년의 권리(비행·범죄청소년의 인권, 근로청소년의 인권, 장애청소년의 인권, 여성청소년의 인권)에서 하위지표로 개발되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청소년권리를 별도의 분야로 설정하여 비행청소년, 장애청소년, 근로청소년 여성청소년 등으로 세분화하고 관련 세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표의 체계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② 정영순 외(2002)의 『아동복지지표』

이 지표는 아동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문제파악과 서비스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아동복지의 전체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즉, 이 지표는 인구·가족·지역, 경제적 안정, 부모상황, 보건, 교육, 사회복지 등 6개 부문, 25개 관심영역, 111개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

히, 이 지표는 아동의 복지에 중심을 두고 있어 권리의 시각보다는 기초적인 보건과 경제적 안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복지의 영역을 별도로 구성하여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발달권과 관련된 지표는 ‘경제적 안정’의 영역과 ‘교육’ 영역, 그리고 ‘사회복지’영역에서 제시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보건영역에서도 사회보장정책과 관련된 지표가 구성되어 있어 개별지표까지 확대하자면 발달권과 관련된 지표는 더욱 세분화될 수 있다.

③ 한국아동권리학회의 『아동권리지표』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지표개발팀(1998)에 의해 개발된 이 지표는 아동권에 대한 세부적인 지표로서, 발달권과 관련된 지표는 보육(학습준비도, 보육시설), 교육(교육의 기회, 교육의 과정, 교육의 결과), 사회성발달(친사회적 행동, 시민의 권리와 자유), 경제적 안정(가구의 경제적 능력, 아동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지표라고 할 수 있다.

(2) 외국 청소년 발달권 관련 지표개발 사례분석

외국의 청소년관련지표도 인권이나 복지 혹은 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발달권만을 주제로 한 관련지표는 아직까지 파악되고 있지 않다. 물론 UNICEF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아동상황지표가 청소년의 성장이나 발달에 중심을 두어 청소년발달권 지표개발에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UNICEF의 아동상황지표는 주로 영양이나 보건, 의료에 집중되어 있어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상황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① 미국 교육부의 『청소년지표』

미국 교육부(1996)의 청소년지표는 가족과 직장, 교육과 건강 그리고 행동이나 태도 등 청소년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통계들을 포함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1996). 미국의 1991년 청소년지표는 14~24

세 청소년들의 1950년대 이후 교육과 복지 분야의 통계적 자료와 관련 추계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인구와 가족구성, 가족소득, 교육, 청소년고용과 재정, 그리고 건강과 행동, 태도 등의 5가지의 범주와 5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교육부(1996)의 청소년지표 중 발달권과 관련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육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관련 범주는 학교와 관련된 특징에 학교입학, 학생의 인종과 민족성, 학생 1인당 교사의 비율과 지출, 학업성취경향, 독해능력, 국가 간 독해성취, 수학능력, 과학능력, 국가 간 수학 및 과학성취, 대학입학, 교육적 열의, 중퇴, 학업성취, 수학과 교육달성, 국가 간 고등교육입학, 대학비용, 수여된 학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이외의 방과활동은 정규과목 이외의 활동, 방과 후 활동, 지역사회 업무와 자원봉사활동,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간활용양상, 가정에서의 시간활용, 종교, 투표행위, 구속, 폭력범죄의 피해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IV-11> U.S. Department of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의
청소년지표

범주	지표
인구	청소년의 수, 청소년 인구추계, 청소년의 생활여건, 결혼, 가족구조, 출생, 부모가 되는 시기, 미혼여성의 출산
학교와 관련된 특징	학교입학, 학생의 인종과 민족성, 학생1인당 교사의 비율과 지출, 학업성취경향, 독해능력, 국가간 독해성취, 수학능력, 과학능력, 국가간 수학 및 과학성취, 대학입학, 교육적 열의, 중퇴, 학업성취, 수학과 교육달성, 국가간 고등교육입학, 대학비용, 수여된 학위
고용과 관련된 특징	16~17세 학생들의 고용, 청소년의 고용, 청소년의 실업,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대학생의 고용, 중퇴자의 경제활동 참여, 중위소득, 빈곤
학교와 일 이외의 활동	정규과목 이외의 활동, 방과후 활동, 지역사회의 업무와 자원봉사 활동,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 고등학교학생들의 시간활용양상, 가정에서의 시간활용, 종교, 투표행위, 구속, 폭력범죄의 피해
보건	일반보건, 운동, 비만통제와 다이어트, 질병, 담배, 술, 약물사용, 개인적 안정, AIDS교육과 성행동, 사망과 사망원인

자료: U. S. Department of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Youth Indicators 2005.

② 미국 교육부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NOES, 1996)의 『청소년지표』

미국 교육부산하 국립의 교육통계센터(NOES)에서는 매년 14~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지표를 개발하고 있다(Fox, Connally, & Snyder, 2005). 이 지표를 통해 산출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인구의 변화추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학교 내 경험과 생활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 문화, 스포츠, 여가, 취미활동, 직업 및 경제활동 등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IV-12> NCES의 청소년지표

범주	지표
가정(8)	청소년의 수, 청소년 인구추계, 결혼, 이혼, 결혼과 이혼율, 출생, 연령과 인종에 따른 미혼의 출산, 임신·유산·출산,
학교(21)	학비, 학교입학, 고등학교 프로그램, 학생의 인종, 학업완성, 중도탈락, 학생 1인당 교사비율, 학생의 컴퓨터 사용, 수여된 학위, 독해능력, 작문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국가 간 성취비교, 국가 간 교육체계비교, 정규교과 이외의 활동, 방과 후 활동, 스포츠 참여, 16~17세 학생들의 고용,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출양상, 청소년들의 지출
보건(8)	건강보험,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 운동과 훈련, 질병, 담배, 술, 약물 남용, 사망, 사망원인, 폭력범죄의 피해.
시민권과 가치(8)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활동, 종교, 가치, 직업계층, 태도와 부모의 사각 비교, 체포, 범죄형태, 교육열,
미래(8)	고등학교 졸업 후 활동, 청소년의 고용, 청소년들의 실업,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고등학교졸업 후 소득, 직업전환, 대학생의 고용, 중도탈락자의 고용, 소득과 교육

자료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1996), Youth Indicators.

NCES(1996)의 청소년지표는 크게 가정, 학교, 건강, 시민권과 가치 그리고 미래 등 6가지로 나누고 개별 범주 내에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청소년의 발달권과 관련된 범주라고 할 수 있는 학교와 시민권과 가치에서 제시된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학교의 범주에 학비, 학교입학, 고등학교 프로그램, 학생의 인종, 학업완성, 중도탈락, 학생 1인당 교사비율, 학생의 컴퓨터 사용, 수여된 학위, 독해능력, 작문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국가 간

성취비교, 국가 간 교육체계비교, 정규교과 이외의 활동, 방과 후 활동, 스포츠 참여, 16~17세 학생들의 고용,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출양상, 청소년들의 지출 등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고, 시민권과 자치의 범주에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활동, 종교, 가치, 직업계층, 태도와 부모의 사각 비교, 체포, 범죄형태, 교육열 등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③ 뉴질랜드 사회개발부의 『아동청소년복지지표』

뉴질랜드 사회개발부(2003)의 아동청소년복지지표는 총 10가지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범주에 2가지에서 10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있다. 이 지표 중에서 청소년의 발달권과 관련된 지표는 ‘경제적 안정’과 ‘교육’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의 범주에 포함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IV-13> 뉴질랜드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의 아동청소년 복지지표

범주	지표
건강(7)	저체중 출산, 유아사망률, 입학듣기시험탈락, 비만정도, 4~15세 흡연정도, 18세 이하의 출산율, 청소년 자살률
보호·지지(2)	부모와 청소년의 긍정적 관계, 아동학대와 방임
경제적 안정(5)	저소득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낮은 생계기준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 음식의 안정, 청소년 실업률, 임금 및 월급직장의 시간당 임금
안전(6)	예기치 않는 상해사망률, 국가 간 재해사망률, 학교에서의 협박, 청소년범죄의 피해, 안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청소년도로의 사고율
교육(7)	3~4세 초기아동기교육의 참여, 5세 아동의 독해성취, 15세 청소년의 독해능력, 15세 아동의 과학능력, 학교 무단 결석률, 허가 없이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비율, 3차 교육 완성률*
시민권(1)	국민선거에 투표하는 청소년
사법(1)	소년법정에서 입증된 14~16세 청소년의 경찰체포 사례
문화와 정체성(1)	뉴질랜드 원주민언어를 할 줄 아는 마오리원주민 청소년
사회적 유대감(2)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 스포츠나 활동적인 여가예의 참여
환경(1)	가정의 crowding**

* 13차 교육기관(대학 및 직업교육과정)졸업수료 18~24세의 청소년의 수

**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의 청소년과 18~24세 청소년의 비율

경제적 안정의 범주에는 저소득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낮은 생계기준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 음식의 안정, 청소년 실업률, 임금 및 월급직장의 시간당 임금, 교육의 범주에는 3~4세 초기아동기교육의 참여, 5세 아동의 독해성취, 15세 청소년의 독해능력, 15세 아동의 과학능력, 학교무단결석률, 허가 없이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비율, 3차 교육 완성률, 사회적 유대감의 범주에는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 스포츠나 활동적인 여가에의 참여 등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④ 캐나다의 『청소년발달지표』

Jones(2003)에 의해 개발된 이 지표는 캐나다의 6~9세 그리고 10~13세 청소년에 대한 발달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캐나다의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1996-97)의 통계에서 도출한 것으로, 6~9세까지의 아동들의 경우 4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있고, 10~13세까지의 청소년은 4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표는 학업성취와 전망, 교외학습과 교회활동, 부모와 부모의 지지에 의해 평가된 인성발달과 같은 발달의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다.

Jones(2003)가 제시한 캐나다의 청소년발달지표는 무엇보다도 부모가 평가하는 인성발달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까지도 발달지표의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청소년의 발달권의 영역 중 신체적 발달과 함께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 발달의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Jones가 제시한 이 같은 아동발달지표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서적 발달의 부분은 개관적 지표보다는 부모에 의한 주관적 지표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이다.

⑤ Waters 외(2002)의 『아동건강·발달·복지지표』

Waters 외(2002)의 ‘아동건강·발달·복지지표’는 다른 아동관련 지표들 보다는 매우 세부적으로 개별지표들을 구성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아동관련 지표의 범주로 건강과 교육, 환경과 서비스 전달을 구분하고 각 범주에 따른

관심영역을 크게는 세 가지에서 지표로 세분화하고 지표의 하위영역으로 개별지표들을 구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표는 개별지표의 이론적 논거까지 본문에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아동의 건강과 발달 그리고 복지를 구성하는 지표의 범주와 지표 그리고 하위지표와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⑥ Lippman(2001)의 『아동, 가족, 지역사회의 연계지표』

Water 외(2002)의 ‘아동건강·발달·복지지표’가 건강과 발달이라는 주제에 강조점을 두고 개별지표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Lippman(2001)의 지표는 아동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회체계인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중심 구성하고 있다.

가족구조의 범주에서의 지표들은 생활실태에 대한 전통적인 측정뿐만 아니라 일련의 가족관계들을 파악하는 더욱 복잡한 측정들을 까지 포함하고 있고, 가족의 기능에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과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특별한 방법들이 가족의 기능의 범주에서 고려되며, 가족, 일, 아동 보호의 범주에서는 부모의 고용상태와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직업스트레스의 영향과 관련된 평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 참여와 시민적 연대의 범주에서는 아동학교에 대한 부모와 학생의 참여 그리고 가족과 학생의 시민적 연대를 평가한다. 신앙의 지표들에서는 종교 활동의 참여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 보다 광범위한 집단의 종교 활동의 참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대에서는 가족들이 가지는 이웃과 친구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평가한다.

⑦ 미국의 『아동복지지표』

미국의 ‘범국가적 아동·가족 통계연방포럼’(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FIFCFS, 2000)에서 개발한 아동복지지표(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는 경제적 안정과 건강, 행동과 사회 환경, 교육, 그리고 특별한 특징 등 5가지의 범주 내에 각각 세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인 안정의 범주는 아동빈곤과 가족수입, 안정적인 부모의 고용, 주거문제, 음식의 안정성, 의료보험의 접근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의 범주는 일반적인 건강상태, 활동계약, 아동기 면역, 저체중 출산, 유아사망, 아동 사망, 청소년 사망, 청소년 출산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과 사회 환경 범주에는 규칙적인 흡연, 음주, 불법약물남용, 청소년피해 등의 지표를 제시했으며, 교육과 기타 특별한 특징들에는 아동에 대한 가족의 독서, 초기아동기 보호와 교육, 수학과 독해성취, 고등학교 교육수료, 학교나 직장에 등록되지 못한 청소년, 고등교육과 유아초기의 지식과 기술, 청소년의 자원 활동 참여 등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FIFCFS의 아동복지지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인구와 가족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난 몇 십 년 동안 발생한 변화 자료와 도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지표들은 미국의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아동인구에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 인구학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지표로 경제적 안정과 교육기회, 건강과 아동이 놀고 배우며 성장하고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잘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지표나 측정들이 제시된다. 이 중 청소년의 발달권과 관련된 지표는 경제적 안정과 교육의 범주에 속한 지표로 아동의 빈곤이나 주거문제,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한 접근, 고등학교 교육수료, 고등교육 등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⑧ Ferber(2002)의 『청소년발달지표』

Ferber(2002:4)는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지표의 구성을 발달영역과 연령 그리고 목표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Ferber에 따르면, 청소년의 발달영역은 약물치료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서비스와 교육 등의 모든 범위의 서비스가 초기부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청소년은 성장을 통해 다양한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매우 다양한 욕구와 능력을 가지며 각각의 발달영역과 연령시기에는 청소년과 부모 그리고 정책결정자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예방하기를 원하는 부정적인 결과에서부터 증진

하고 싶어 하는 긍정적 결과에 이르는 광범위한 목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발달지표의 구성에는 ‘발달영역’과 ‘연령’ 그리고 ‘목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⑨ Maryland의 『청소년발달지표』

Maryland의 청소년발달지표는 다섯 가지의 발달영역과 여덟 가지의 결과영역 그리고 목표 집단(유아, 아동,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결과영역(건강, 학업 성취, 학업완성, 안전, 안정과 경제적 자급자족, 학습의 준비나 가족생활의 지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Maryland의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발달영역은 ‘학습’과 ‘성장’, ‘연대’와 ‘노동’ 그리고 ‘지도’ 등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며, 연령은 0세부터 24세까지로 유아와 청소년기를 포괄하되 초기아동기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등으로 연령의 시기를 세분화했다. 그리고 각각의 발달영역은 1~2가지의 결과영역으로 또다시 세분화되고 각각의 결과영역과 연령에 따라 해당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소년 참여권 관련 지표개발 선행연구 분석

(1) 국내 청소년 참여권 관련 지표개발 사례분석

① 한국아동권리학회의 『아동권리지표』

한국아동권리학회(1998)의 아동권리지표 중 청소년 참여권과 관련되는 부분은 7번째 영역인 ‘사회성발달’영역 중 ‘시민의 권리와 자유’관심영역이라 할 수 있다. 참여권과 관련되는 세부관심영역과 관심영역별 개별지표로는 ①종교의 자유(종교별 청소년인구 분포, 종교교육을 강압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 ②표현의 자유(이혼 시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례의 비율, 입양 시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사례의 비율), ③결사집회의 자유(청소년의 학생회활동 자유 보장하는 학교의 비율,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학교의 비율), ④정보접근권(컴퓨터 사용하는 청소년인구비율, pc통

신 사용하는 청소년인구비율, 학교별 청소년 1인당 컴퓨터 보유대수, 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이용률, 공공도서관의 아동도서 보유권수, 아동도서 종류별 발행부수, 아동신문 및 잡지 발행부수, 주당 TV 시청시간)이다.

②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연구』

길은배 외(2001)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의 인권지표(안)에서 참여권과 관련되는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시민권과 자유의 분야로서, 이를 세부관심영역과 지표항목 순으로 살펴보면 ①종교의 자유(종교별 청소년인구 분포,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 비율, 종교기관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 중 다른 종교인의 비율), ②의사표현의 자유(교지, 신문발행 학교비율 및 예산, 두발 및 보장 자율화 허용 비율,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 16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 증인 사례 수), ③결사집회의 자유(학생회 간부 출마자의 성적관련 자격제한 학교비율, 청소년 중 학생회 자치활동 참여 비율, 청소년 단체 현황 및 가입률), ④사회참여와 참정권(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청소년 정책관련 활동 동아리 및 참여청소년 수, 교칙 제 개정 참여 허용 학교비율, 체벌제한 규정 보유학교 수, 학교운영위원회에 청소년참여(참관) 보장 학교 수, 청소년의 선거 참가율), ⑤정보접근권(문화센터 설치율 및 이용률,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률 및 도서대출 현황, 가구당 컴퓨터 보유 및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월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⑥가족해체(부모이혼 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다.

③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권리지표』

서문희 외(2003)가 개발한 아동권리지표에서 시민적 권리와 자유 중 참여권과 관련되는 세부관심영역과 영역별 개별지표는 다음과 같다 : ①종교(종교 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 비율), ②의사표현(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 비율, 학교운영위원회에 의 학생 참여하는 학교 비율, 학생의 의견 표명 정도), ③결사집회(학생 대표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비율, 동아리 및 단체 가입하는 아동 비율), ④인도적

처우(학교 내 체벌 경험율, 검찰의 아동 소년범죄 처리, 아동의 소년보호사건 처리, 소년보호사건 아동 중 변호인 변론 혜택의 비율), ⑤정보접근(도서관 이용률, 아동 도서 발행비율, 아동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⑥가족해체(부모 이혼 시 면접권 확보 비율), ⑦가족관계(부모의 아동의견 존중 정도).

④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실태 조사도구』

길은배 외(2005)가 개발한 청소년인권실태 조사도구는 한국의 청소년 인권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길은배 외(2005)의 연구는 청소년인권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 사항과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를 함께 전국 중·고교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근로·장애·북한이탈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조사 내용의 영역은 크게 가정(14항목), 학교(20항목), 사회(15항목)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참여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영역

- 부모님은 상급학교 진학을 결정 할 때 나의 학력 및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신다. (자기결정권과 관련됨)
- 부모님은 나의 두발 상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여 가정에서의 두발자유권이 없다. (자기결정권과 관련됨)
- 부모님은 방과 후나 휴일에 외출할 때 나의 복장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신다. (자기결정권과 관련됨)
- 부모님께서서는 내 용돈을 보관하고 계시면서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쓰신다. (자기 결정권과 관련됨)

(2) 학교영역

- 학교에서 두발을 자주 규제한다. (자기 결정권과 관련됨)
- 0 교시나 야간자율학습 등과 같은 보충수업을 학생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실질적 권리가 없다. (자기 결정권과 관련됨)

-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될 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됨)
- 학교 내 동아리 활동과 같은 학생자치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결사집회의 자유와 관련됨)
- 학교 임원 및 학생회 간부 선출 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회참여 및 참정권과 관련됨)

(3) 사회영역

- 지역사회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때 부모 및 학교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결사집회의 자유와 관련됨)

⑤ 이용교 외(2006)의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이용교 외(2006)가 개발한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는 현행 아동복지시설의 인권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참여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개인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종교의 자유, 외출 시의 자유, 후원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편지나 이메일 등에 관한 사생활보장, 전화사용에 대한 자유, 초상권, 방문객의 아동숙소 관람 시 사생활 보호), ②용돈관리와 아르바이트(저축의 관리, 아르바이트 선택의 자유, 개인용품 구입의 자유, 기초화장품 선택의 자유), ③시설운영에의 참여(시설생활수칙 결정에의 참여, 시설 내외 행사참여의 자유, 중도시설퇴소 시 아동의견 반영, 시설홈페이지 등에 의견개진, 시설 내 아동 자치회 설립, 운영위원회 참관자로서의 의견표명), ④지역사회와 관계형성(시설 내 봉사단체 활동여부).

(2) 외국의 청소년 참여권 관련 지표개발 사례분석

① 미국 교육부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NCES, 2005)의 『청소년지표』

미국 교육부산하 국립 교육통계센터(NCES, 2005)의 청소년지표는 청소년 인구, 학교관련 특성들, 직업관련 특성들, 학교 외부 활동, 보건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청소년 참여권과 관련되는 지표는 직업관련 특성들, 학교 외부 활동 등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직업관련 특성영역에서는 고등학생

의 아르바이트율, 청년 취업률/미취업률 등을 참여권 관련 지표로 들 수 있다. 학교외부 활동 영역에서는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률, 종교 활동, 선거 참여율 등을 들 수 있다(김진호 외, 2003, 재인용).

② 미국의 『아동복지지표』

미국은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가입국은 아니지만 1994년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휴즈센터(Hughes Conference Center)에서 개최한 아동지표 관련회의 이후 이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1997년에 범 기관적 아동 및 가족 통계연방포럼(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을 설립하여 아동복지지표 보고서(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를 작성하고 있다. 여기서 개발된 지표는 한국의 아동권리학회에서 개발한 아동권리지표의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미국 아동복지지표의 주요 영역은 인구 및 가족특성, 경제적 안정, 보건, 행동 및 사회 환경,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참여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는 없었으나 가장 근접한 관련 지표는 행동 및 사회 환경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긍정적 행동지표(indicators of positive behaviors)로서 청소년들의 클럽, 예능, 스포츠, 종교 활동 등 과외활동에의 참여율을 통해 측정한다.

③ Child Watch International이 개발한 『아동권리지표』 : 짐바브웨

Child Watch International(CWI)은 국제적 수준에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케임브리지대학 가족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였다. 그 첫 단계 사업으로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니카라과, 세네갈, 태국, 베트남, 짐바브웨의 5개 국가에서 아동권리지표 개발 사업이 실시되었다. 세네갈과 짐바브웨에서 개발된 아동권리지표가 웹에 공개되고 있다.

길은배 외(2001)가 정리한 짐바브웨 아동권리 지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지표는 크게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 6가지 영역은 아동-부모관계, 사회적 경제적 착취, 보호와 생존, 아동의 정의 및 재활과 이행, 교육과 발달, 감시와 기록이다. 이 중 참여권에 관련되는 지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부모관계에서 아동들은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함.

- 아동과 부모의 분리에 관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수

(2)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종교나 인종 때문에 학교로부터 거부당한 아동의 수
- 부모 또는 지역사회는 아동들의 관점, 의견, 선택 (종교의 선택, 학교 교과목의 선택 등)을 존중하는가?

5) 청소년인권 인프라 관련 지표개발 선행연구 분석

청소년인권 인프라 지표는 청소년인권지표의 주요 4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지표의 공통되는 부분과 4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 그리고 UN아동권리협약과 주요 선행연구에서 앞의 4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인권지표 영역으로 따로 떼어내어 지표화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인권 인프라 지표는 개별적으로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없고 선행연구 속에서 인프라 지표에 관련된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아동권리학회(1998)의 30대 아동권리 세부지표에서는 인구 분야가 인프라 지표에 해당한다. 이 인구 분야는 아동인구 특성이라는 관심분야를 두고 있으며, 세부관심영역은 아동인구 크기, 아동인구 구성으로 나뉜다. 개별 지표로는 총인구 중 아동의 비율, 아동인구 구성비, 아동연령별 성비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UN아동권리협약의 제1조의 요소들을 반영한 것이다.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지표(안)에서는 청소년인구 부분이 인프라 지표에 해당한다(길은배 외, 2001). 세부영역은 청소년인구, 청소년인구 구성, 출생·사망률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인구에서는 청소년의 수, 총인구중 청소년의 비율이, 청소년인구 구성에서는 인구비와 성비가, 출생·사망률에서는 조출산율과 조사망률이 개별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권리지표(서문희 외, 2005)에서도 인구 분야가 인프라지표에 해당한다. 관심영역은 인구특성이며, 세부관심영역은 인구규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백서(김영지 외, 2004)에서는 7번째 영역인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정책 부분이 인프라 지표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서는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행정절차와 재정,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법령 제·개정, 인권교육 실시 및 성인의 인식제고,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국가·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4가지 요소가 하위내용이다.

이용교 외(2006)의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에서는 5번째 영역인 아동권리보장체계가 인프라지표에 해당한다. 이 지표의 관심영역은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인권옹호 지침과 고충처리, 인권교육, 시설의 투명성 등 4가지이다. 한편 외국의 인권관련 지표에서도 UN아동권리협약의 제 1조에 해당하는 인구 부분이 인프라지표에 해당된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인구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인프라지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백서(김영지 외, 2004)와 이용교 외(2006)의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에서 인구 이외의 법·제도적인 측면을 강조되고 있어, 이 연구의 인프라지표 구성에 포함되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V.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과 구성요소

1.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
2.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요소

V.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과 구성요소

1.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권 인프라 영역 등의 5개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청소년인권의 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개영역으로 설정한 것은 1989년 UN총회에서 결의된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것이다. 즉, 1989년 UN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아동의 기본 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구분은 인권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청소년인권지표는 국제인권조약과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환경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UN총회의 결의사항에 기초하여 청소년인권의 하위영역을 4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4가지 하위영역을 뒷받침하는 청소년인권 인프라 영역을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청소년인권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에서 논의되었듯이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은 각 연구마다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 이것은 각 연구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다르고, 지표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아동권리학회(1998)의 30대 아동권리지표는 ①인구, ②생명 및 생존, ③보건, ④보육, ⑤교육, ⑥가족, ⑦사회성 발달, ⑧사회보장, ⑨경제적 안정, ⑩문제행동과 사회적 환경 등 10개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UN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서문희 외(2005)의 아동권리지표에서는 ①인구, ②생존과 건강, ③가족, ④교육, ⑤문화와 여가, ⑥사회복지, ⑦시민적 권리와 자유, ⑧특별보호 등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국가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된 것

이 특징이다.

길은배 외(2001)의 청소년인권지표에서는 하위영역을 ①청소년인구, ②건강과 생존, ③가족, ④교육, ⑤문화와 여가, ⑥사회보장, ⑦시민권과 자유, ⑧사회적 약자 청소년의 권리 등 8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연구진의 시안작업과 전문가들의 시안 검토를 토대로 확정된 것이다. 또한 김영지 외(2004)의 청소년인권백서 연구에서는 앞의 분류와는 다르게 청소년인권의 하위영역을 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백서의 하위영역을 ①기초보장과 복지, ②가정환경과 양육, ③학대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④교육과 문화권, ⑤시민적 권리와 참여권, ⑥사회적 약자 및 특별보호 청소년, ⑦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정책 등 7개 하위영역을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계량화된 현황자료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주관적 인권실태와 침해사례, 청소년인권 관련 사회·정책적 노력까지 보다 포괄적으로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UN아동권리협약 훈련교재(한국지역사회복지회 역, 1999)에 따르면 UN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김영지 외(200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청소년의 생활영역과 교차하여 지표와 문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용교 외(2006)의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개발 연구에서도 아동인권의 하위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은 연구목적과 관심사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국제인권조약과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환경수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1989년 UN총회의 아동권리협약 결의사항에 기초하여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을 청소년생존권, 청소년보호권, 청소년발달권, 청소년참여권 등 4개의 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청소년인권 인프라영역을 추가하여 총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2.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요소

1) 청소년 생존권지표의 구성요소

청소년생존권지표의 구성요소는 UN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여 크게 1)고유의 생명권, 2)신체적 생존권, 3)질적인 생존권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3가지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의 생명권

생명권은 UN아동권리협약에서 고유한 권리로 규정된 유일한 권리이다 (Van Bueren, 1998). 아동권리위원회는 생명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함께, 당사국은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긍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의 제 6조가 기초된 과정과 생명권과 생존 및 발달권 사이의 상호관계성을 보면 당사국들이 자국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최상의 그리고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채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Nowak, 2005). 예를 들면, 유아사망률이 높은 당사국은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진 비용효과적인 건강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의미를 갖는다. 생명권의 고유한 성격은 이 권리가 전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서도 적용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특성(non-derogable nature)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고유의 생명권으로는 특히, 사형선고, 임신중절, 살해행위, 유아사망률, 아동사망률, 유해한 전통적 관습 등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① 사형선고(death penalty)

국제인권법에서는 사형을 잔인한 비인간적 처벌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경향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이를 지속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도 포함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권과 정의에 대한

접근에서 유럽과 미국의 문화적 정치적 차이를 예시하는 가장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오늘날 UN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들이 원칙상 청소년에 대한 사형집행을 금지하는 것을 준수하고 있지만, 아동권리위원회는 실제로 사형집행이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을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Hodgson(1994)은 사형선고와 관련하여 단지 일부 국가만이 남아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과 한국을 지정한 바 있다.

② 임신중절(abortion)

UN아동권리협약 제 1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아동의 개념정의에서 아동기의 시작 시점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당사국들은 임신중절이나 가족계획 같은 상충되는 권리들에 대해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UN아동권리협약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유의 생명권”이 이른바 현재의 임신중절에 대한 관행을 국제조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코헨(Cohen)은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실무협약에서 “어떤 때에도 낙태에 관한 것이 본질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Cohen, 1990). 사실, UN아동권리협약 제정 당시의 쟁점은 생명권이 발동하게 되는 시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태아(unborn child)의 권리에 대한 것이었다(Limber & Flekkoy, 1995).

사실, “아동”이 출생한 영아(the born)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the unborn)를 포함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은 협약 제 1조에서 절충된 조문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바에 의해 답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조문이 영아뿐만 아니라, 태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가능성은 협약 전문의 9번째 문단에서도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서는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동의 고유의 생명권에 관하여 당사국이 갖는 의무가 태아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은 협약 제 24조의 2(d)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여기서는 당사국이 산모에 대한 출산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해줄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임신중절이나 가족계획에 대한 입법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아동권리위원회는 중국이 1가족 1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철회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Nowak, 2005). 동시에 UN아동권리위원회는 높은 임신중절과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임신중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살해행위(homicide) 및 영유아살해(infanticide)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고유한 생명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경찰과 법집행주체는 살인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살인행위 발생 시에는 범죄인을 심판받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는 의무를 져야한다.

특히, UN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들로 하여금 아동을 영유아살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 특히, 성별이나 장애유무에 따른 차별적 이유로 이루어지는 영유아살해는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성비는 어떤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남성 선호사회에서 여성의 성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영유아살해가 여전히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Hodgkin & Newell, 2002). 중국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위원회는 1가족 1자녀 정책의 결과로 성비가 큰 차이가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④ 유아 사망률(infant mortality)

유아사망률은 아동의 생명 및 생존권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의무실행을 모니터링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유아사망률은 출

생 이후 1년 만에 사망할 가능성을 출생인구 1,000명당 비율로 나타낸 지표이다. UN통계에 의하면, 2001년에 전 세계적으로 1,000명의 신생아 중 57명이 생후 1년이 되기 전에 죽었다. 1960년의 경우 그 수치는 126명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비교해보면,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 이 점에서는 성공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간의 불균형은 같은 40년의 기간 동안 더욱 심화되었다.

⑤ 아동 사망률(child mortality)

아동의 생명, 생존, 발달 및 복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지표는 아동(특히 5세 미만)의 사망률이다. 즉, 1,000명당 출생 후 5세 미만에 사망할 가능성이다. 아동 사망률 또는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은 출생이후 5년 만에 사망할 가능성을 출생인구 1,000명당의 비율로 나타낸다.

2001년의 경우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1,000명 중 82명이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다. 1960년의 경우 그 수치는 187명이었다. UN의 통계는 또한, 193개국의 5세 미만 사망률은 선진국과 후진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3명), 산업국(7명), 개발도상국(89명), 최빈국(157명),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국가(173명) 및 시에라리온(316명) 등이었다. 달리 말하면, 아동사망은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아동사망은 예방 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⑥ 유해한 전통적 관습(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UN아동권리협약 제 24조 (3)에 의하면,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전통적 관습들은 건강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동, 특히 소녀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Nowak, 2005).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른바 명예살인(honour killings)을 들 수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형태의 영유아살해이면서 정상적인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살인행

위로 여겨지고 있다.

2003년 봄, UN아동권리위원회는 “UN아동권리협약 상황에서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on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전통적 관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협약 제 3, 6, 12, 19, 및 24(3)조에 비추어, 당사국은 청소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명예살인을 포함한 모든 행동과 활동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들이 기존의 태도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각심 고취 캠페인을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입법화를 통해 유해한 전통적 관습을 초래하고 있는 성역할과 인습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CRC Committee, 2003)”.

(2) 신체적 생존권

생명권에서 추론된 권리이며 확장된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건강권과 안전권을 들 수 있다. 건강권이 협약에 포함된 것은 의약품, 깨끗한 물 또는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살해행위(homicide)와 다름없는 것이며, 인간의 생명권을 위반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단순하면서도 충분히 설득적인 전제에 입각한 인식이다(Wiseberg, 1995).

Mower(1997)에 의하면, 이 권리가 UN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것은 건강권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됨으로서 촉진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매년 1천 4백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망하는데 그 사망원인 가운데 적어도 2/3는 설사, 과상풍, 홍역 등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적절한 처치를 받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증거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부모로 인해 새로운 건강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이 건강권을 주장한 것이 국제인권법에서 새로운 토대가 된 것은 아니다. Leary(1994)에 의하면, “최대의 건강권을 누리는 일”은 세계

보건기구 헌장이 1946년 채택된 이래로 국제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기초권(fundamental rights)”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제 인권조약들이 건강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UN아동권리협약은 제 24조에서 의료 보건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등이 중요하게 논의된다. 여기서는 아동의 건강권과 안전권에 대해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몇 가지 이슈를 제시하기로 한다.

① 평균수명(life expectancy)

아동사망률과 유사하지만 출생 시의 평균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즉, 출생 시의 전체인구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망률을 전제하여 신생아가 생존할 연수(number of years)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제기된다. 여기에도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물론이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80세,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및 스위스 등은 79세였다. 그러나 2001년에 보츠와나, 모잠비크 등에서 출생한 경우는 39세, 말라위, 르완다, 시에라리온 등은 40세, 부룬디(41세) 스와질랜드, 잠비아(42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짐바브웨 등은 43세였다.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거의 2배 이상의 평균수명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UNICEF, 2004).

② 빈곤과 질병

신체적 생존권과 관련된 사망률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극심한 빈곤으로 인한 적절한 위생과 보건서비스의 결핍이 이들 대부분 국가의 높은 유아 및 아동사망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유아와 아동사망률과 관련된 질병으로는 폐렴과 다알리아(설사)를 들 수 있다(Van Bueren, 1998; Parker & Sepulveda, 1995). 즉, 빈곤한 국가의 아동사망은 사실 예방 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교육, 예방접종, 경구수분보충요법(oral rehydration therapy) 및 기타 아동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적 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 사망률을 감소하려는 노력은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2000년도의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서는 UN회원국들은 2015년까지 아동사망률을 2/3로 줄이고, HIV/AIDS,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③ 영양 (nutrition)

건강권과 관련하여 밀접히 관련된 것이 제 27조 (1)에 규정된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는 조항이다. 당사국은 또한 제 27조 2에 의해 부모가 능력과 재정상황의 범위 내에서, 아동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제 27조 3에 의해서 당사국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에게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권과 관련한 영양의 전형적인 지표는 또한 생명권의 실행을 위한 하나의 표시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대체로 ①저체중아 출산 비율, ②특정 기간 이후에도 모유수유를 받는 아동의 비율, ③저체중, 체력 쇠퇴증, 성장 위축증 등으로 고통 받는 5세 미만 아동의 비율, ④요오드가 함유된 염분을 섭취하는 가계의 비율, ⑤ 6개월에서 59개월 사이에 있는 연령에 대한 비타민 A 보충 비율 등이 포함된다(UNICEF, 2004).

④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빈곤, 질병, 기아, 깨끗한 식수원의 결여, 열악한 위생상태 및 불충분한 건강과 교육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매년 천만 명 이상의 아동이 인위적인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주권 국가들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모든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권인 아동의 생명 및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아

동과 청소년에 관련한 또 다른 예방 가능한 사망원인으로 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으로 교통사고를 지적할 수 있다(Hodgkin & Newell, 2002).

예를 들면, 아동권리위원회는 요르단 정부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로 아동 사망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고예방과 관련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하며 대중정보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⑤ 거리폭력(street violence)

UN아동권리위원회는 또한 당사국들에게 거리폭력 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특히 노출되는 특정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브라질과 콜롬비아를 포함하여, 제3세계 빈곤 국가들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아동(street children)이 됨에 따라, 폭력, 착취, 오남용, 실종 및 유사한 생명권의 위협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UN아동권리위원회는 네팔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리에서 살고 또 거리에서 일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조치를 취할 것” 권고한 바 있다(Nowak, 2005).

(3) 질적 생존권

생명권과 건강권 등을 규정한 제 6조의 의미에서 몇 가지 추론적 권리가 나온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이 누릴 자격이 있는 생명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정의된다. 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신체적 생존에 필요한 보건복지를 받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존의 질적 측면과 관련된 특정 프로그램, 조건 및 기회 등을 받을 자격도 갖게 된다. 여기에는 의식주의 욕구에 부응하는 생활수준과 휴식, 여가 및 여행 등이 포함된다. 또한 협약의 제 23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이 조항은 협약의 주요한 관심사의 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즉, 세계의 그 어떤 아동과 청소년들도 절대적

인 신체적 생존권 이상의 생명권을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사는 UN아동권리협약의 제 27조에 의하여 그 의미가 설명된다. 이 조항은 당사국들이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면,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발달을 단순히 생존 적이고, 신체적인 것 이상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정체성(identity)과 등록(registration)

UN아동권리협약은 또한 아동의 권리를 생명권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승인된 정체성(identity)을 가진 차별적 인성(personality)으로서의 생명까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 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 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생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 8조는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음이 없이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UNICEF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의 경우 약 5천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등록되지 않았는데, 이는 전 세계 출생인구의 약 41%에 이르는 비율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심지어 71%가 넘는 신생아들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시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주체성과, 승인된 이름과 국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Nowak, 2005). 아동 등록에 관한 것은 사망 시에도 적용해야 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아동의 사망 등록과 사망원인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CRC Committee, 2003).

생명권의 범주에 정체성을 포함할 필요성은 박탈과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하는 관행이나 상황 때문에 이름 없는 아동들은 존재하고 있으며 또 아마도 계속해서 세계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제기된다. UN아

동권리협약 제 8조 2에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게 된 것은 이러한 정체성 상실에 따른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Cerda, 1990).

② 청소년자살(suicide)

UN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특히, 남자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되고 있는데 거둬 관심을 두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Hodgkin & Newell, 2002). 차별받거나 특히 취약한 아동집단에서는 높은 자살률이 나타난다.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원주민 청소년들의 평균자살률은 비원주민 청소년들에 비해 5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원주민 사회에서의 유아 사망률과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③ 청소년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력, 오남용 및 착취 등

아동과 청소년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적 폭력, 오남용 및 착취에 노출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국에 의한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및 긍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에는 특히, 제 19조, 제 32조, 제 33조, 제 34조, 제 35조 및 제 36조 등에서 당사국이 아동을 다양한 형태의 폭력, 오남용, 착취로부터 보호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2000년 5월 UN총회는 아동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UN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를 채택하였으며, 2002년 1월에 발효되었다. 선택의정서에는 이러한 유형의 아동남용과 착취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고 당사국이 아동매매상(traffickers)과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형법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Nowak, 2005).

2) 청소년 보호권지표의 구성요소

청소년보호권지표는 UN아동권리협약의 규정, 청소년 보호관련 법령의 내용, 청소년 보호관련 정책 등에 기초하여 ‘각종의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차별로부터의 보호’, ‘위기상황과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4개의 하위영역은 사실상 ‘~한 위기로부터의 보호’라는 소극적 보호의 개념이다. 이처럼 청소년보호권의 하위영역을 소극적 보호로 구성한 것은 청소년인권의 하위영역간 중복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를 보호권에 포함하게 되면 발달권, 참여권의 개념과 상호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1)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학대와 폭력은 청소년의 보호권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논의되는 영역이다. 보호권과 관련한 법 규정이나 정책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영역이다. 그리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존재해온 보호권의 영역이기도 하다. UN아동권리협약도 보호권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이다.

UN아동권리협약 제 19조 1항에서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형태로 방치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은 각종의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로 아동의 불법 해

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제 11조)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 19조)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으로서의 적절한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고(제 25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제 32조), 약물로부터 보호받고(제 33조, 제 34조), 성적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제 35조), 고문, 유기 착취, 무력분쟁으로부터 보호 받고 (제 36조, 제 37조, 제 39조), 사법절차과정에서의 보호(제 40조)를 다루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청소년 보호의 하위영역으로서 폭력, 학대, 등을 제시하고 있어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포함되는 하위영역을 다음과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 하위영역에 대한 이슈들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 할 수 있다.

①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의 보호

모든 형태의 학대나 착취로부터의 보호는 신체학대 뿐만 아니라 성학대 및 성매매춘, 알선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UN아동권리협약 제 39조는 어떤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고문 등의 일체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피해를 받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19조는 ‘부모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일체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의 보호에는 학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성학대 및 성매매로부터의 보호, 고문 등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피해를 받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포함될 수 있다.

(a) 학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 학대는 가정, 시설에서 부모나 주 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부모의 지도(제 5조), 부모의 책임(제 18조), 부모로부터의 분리(제 9조), 가족재결합(제 10조), 아동 양육비의 회수(제 27조), 가족 환경이 박탈된 아동(제 20조) 규정에서 청소년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육조건을 제공할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현장에 의하면,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 뿐 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보호권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초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 체벌과 관련한 보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또래간 폭력도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범주에 포함된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학교 내 폭력은 청소년 보호권의 주요지표로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학교에서의 또래 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또래 간 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정부 기구인 아동국 산하 또래 간 폭력 예방기구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의 조치들은 청소년 보호의 중요한 지표가 폭력을 근절하는데서 시작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b) 성학대 및 성매매춘으로부터의 보호

UN아동권리협약은 34조에서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고, 협약 20조에서는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여 성학대 아동의 보호를 위한 국가지원의 당위성을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춘과 관련한 보호를 청소년보호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에 대한 보호가 규정되어 있다.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부모와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성착취와 관련하여 매매춘, 원조교제 등 청소년 성매매 실태, 성폭력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c) 아동의 유괴 및 매매의 방지

UN아동권리협약 제 35조는 ‘당사국은 여하한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 간, 다국 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유괴 및 매매의 방지는 청소년 보호의 필수적 요소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유괴 및 매매가 현사회의 아동학대의 한 증후로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본질적인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d) 사법절차에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

UN아동권리협약 제 37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일체의 사형이나 고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형의 선고과정에서 잔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히다(키타)(1997)는 ‘청소년들이 혹시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경찰에 붙들려 갈지라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무리 나쁜 일을 저질렀어도 경찰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형도 금지되어 있다’고 쉽게 풀어 37조의 권리를 홍보하고 있다(박향아, 2002).

UNICEF(1999)는 이 조항과 관련하여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당사국은 구금된 아동을 성인 수감자와 격리시켜야 하며, 가족과 접촉할 권리,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 40조의 ‘아동의 사법상의 권리’에 관해서

도 UNICEF는 ‘당사국 정부는 형법상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과 타인의 자유에 대해 존중하는 생각을 키워주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喜多(키타)(1997)는 ‘아동의 장래와 고려하여 좋은 판단을 해 주도록 함과 동시에 비록 같은 정도로 나쁜 일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른과 아동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마음 씀씀이가 필요하며, 나중에 아동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박향아, 2002).

②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제 32조는 ‘경제적 착취나 유해한 노동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아동들의 성장에 피해가 가는 노동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며 아동의 노동 보호를 위한 노동 조건 등의 조치를 당사국이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 36조에서는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서라도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喜多(키타)(1997)는 이 조항을 ‘세계에는 학교에 갈 수도 없이 집에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도 있다. 비록 가족이나 자기의 생활을 위할지라도 아동들의 몸이나 마음에 적절치 않은 일이나 인간답지 못한 일로부터 아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제 33조의 ‘마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喜多(키타)(1997)는 아동을 향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마약이나 신나 등 몸이나 마음을 망치게 해 버리는 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어른들이 자기만의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성적인 장난은 하지 말라는 것과 아동을 유괴하거나, 혹은 물건으로 취급하여 사고파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됨’을 강조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 36조에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이 건강히 자라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은 모두 금지해야 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박향아, 2002).

(2) 차별로부터의 보호

비차별의 원칙은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이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 제 2조에서는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기타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이 없이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아동이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세계에는 피부색깔이 다른 사람, 쓰는 말이 다른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있으며 무엇 하나 생각해 보아도 같은 사람은 없으므로 자기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전 세계 청소년을 포괄하는 협약인 만큼 지역 간 혹은 인종 간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형태의 차이를 차별로 변환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차이를 인정할 때 다양성 속에 존재하는 개인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이는 권리의 속성인 ‘천부성’, ‘불가분성’, 타인에게 자신의 인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불가양도성’, 그리고 타인에 의해 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는 ‘불가침성’을 유지하는 것과 연계된다. 문화와 종교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장애라는 특수한 조건에서부터 지역 간, 종교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UN아동권리협약은 차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장애, 지역, 민족, 언어, 정치적 출신, 개인의 역량, 출생 신분 그리고 종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UN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과는 달리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관련 법령이나 정책에는 ‘차별’과 관련된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무차별원칙에 관련된 법령은 헌법, 아동복지법에서 일부 발견할 수 있다.

① 장애아에 대한 차별금지

UN아동권리협약 제 23조에서는 장애아에 대한 차별 금지를 밝히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19세미만 청소년인구는 2005년 현재 전체인구의 24.7%인 11,984,000명이고 이 중 장애아동은 19세미만의 장애출현율로 기준해 볼 때 104,669명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아직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장애출현율로 장애아동의 수를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2005)가 발표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초등학교에서 취학이 유예된 아동 수는 총 44,994명으로 이 중 장애 사유는 18.7%(8,436명)을 차지하고 있다.

② 인종에 대한 차별 금지

UN아동권리협약 제 30조에서는 차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종적, 종교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 1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를 적시하고 있지만, 인종이나 피부색, 민족 등에 따른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동복지법(제 3조 제 1항), 영유아보육법 (제 3조 제 3항), 교육기본법 (제 4조),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조 제 1항)도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률조항 역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인종과, 민족, 피부색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 없다. UN아동권리협약의 명시와 같은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교육적, 그리고 의료적 차별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정부의 기본정책은 가족의 정주화 방지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아와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타 인종에 대해서는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혼혈인의 70%이상이 비기능적 육체노동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의 50%이상이 학교와 직장에서 소외와 권리차별을 상당한 수준으로 경험하였으며, 자녀들의 27%가 따돌림과 차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였다(연세춘추, 2005.2.25). 보건복지부(2005)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여성의 전체 응답자중 49.5%가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자녀의 연령분포를 보면, 3세 이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27%로 가장 많고, 4~5세 자녀가 있는 경우 16.4%, 6~11세의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가 16%이다. 그리고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6.7%에 이른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 19조 제 1항)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도 관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입학이 허용된다. 50%이상의 외국인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약 30%가 집단따돌림과 비인권적인 지칭을 받으며, 56%가 제때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의 미비는 이들에 대한 권리침해 소지가 있다.

③ 성차별 금지

청소년의 차별과 관련하여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UN아동권리협약 제 42조의 관점에서 여아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캠페인 전개 등 차별 범주에 속하는 아동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하여 즉시 효력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김인숙 외, 2004).

④ 지역 간 차별금지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기타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이 없이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언급하고 있다. 다

시 말해서 UN아동권리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차별의 종류는 지역을 망라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출신, 기타의 신분’이라 함은 지역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사회적 출신은 계급을 의미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특정 계급 혹은 계층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차이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보인다. 도농 간 차별 해소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목표를 탄생시켰다. 청소년의 발달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지역 간, 특히 도시와 농촌 간에 존재하는 차별은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에 보장해 주어야 할 중요한 보호권의 영역이다.

(3) 위기 상황과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위기상황과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는 청소년 자신의 발달적 위기와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위기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청소년 가출과 비행은 청소년의 행위적 측면에서의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위기와는 다르다. UN아동권리협약은 위기상황과 응급상황에서의 보호를 협약의 제 22조, 제 38조, 제 3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무력분쟁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즉 UN아동권리협약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위기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UN아동권리협약에서도 자신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대안적 가정을 통해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위기로 볼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 제 20조는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가족의 위기로 인해 청소년의 성장이 위협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UN아동권리협약은 위기상황을 난민 청소년의 보호, 무력분쟁, 유기·착취로 규정하고 있다.

① 난민아동과 무력분쟁하의 보호

세계적으로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분쟁상황 하의 청소년 보호와 난민 청소년 보호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청소년 보호의 영역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갈 것,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무력분쟁에서의 청소년보호(제 38조) 및 제 2차 아동인권협약 선택의정서에서 규정된 아동의 군사력 동원 금지 및 난민아동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청소년 보호권은 끊임없이 전쟁 중인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 청소년들의 징병사실이 밝혀지고, 이들에 대한 비인권적 처우가 알려지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② 가출과 비행

가출과 비행의 발생 요인을 어떻게 이해하는 가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맞물린다. 가출과 비행은 청소년 개인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출과 비행을 청소년 개인의 요인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개인적 위기이고 개인과 환경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면 이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다. 가출과 비행이 그동안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증가해 옴으로써 이의 발생 원인을 청소년 개인의 요인을 해석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가출과 비행 모두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 보호권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가출과 비행은 청소년 개발지표(김진호 외, 2003),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연구(길은배 외, 2001)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윤철경 외(2005)는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정책을 범주화하는 작업에서 위기로부터의 보호에 성보호, 가출, 약물, 폭력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은 본 연구의 보호권 범주규정과 달리 ‘각종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지 않고, 위기로부터의 보호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 연

구에서는 ‘각종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청소년 보호권의 범주도 별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과 응급상황으로부터 보호의 범주에 가출을 포함하였다. 도종수 외(2002)의 연구에서도 범죄를 청소년 지표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청소년 보호권의 범주 중 이는 청소년의 보호권의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대안적 보호

UN아동권리 협약은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위기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보호제도를 국가가 마련해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이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위기상황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그룹 홈과 대안양육체계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안적 보호는 환경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지원체제로 중요하다. 영국이 시설보호를 최소화하고 대안적 보호인 위탁가정의 수를 늘리면서 청소년의 자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는 것은 대안적 양육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대안적 보호는 청소년이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측정이 아니고 청소년이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사회의 지원체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청소년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구조를 평가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직면한 위기를 측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의 체계를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청소년 보호권의 영역이다. 보호권의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모두 청소년 보호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4)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는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 비행의 발생이 유해환경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

한다. 아울러 청소년은 자기 욕구를 조절할 힘이 미약하고, 발달적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도 이면에 깔려 있다. 청소년보호법 등은 유해환경의 범위를 유해매체, 유해업소, 유해물건, 유해구역, 유해약물로 분류하고 있다.

윤철경 외(2005)는 유해환경으로 부터의 보호에 유해매체, 유해업소를 청소년 보호정책의 중요한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도종수 외(2002)도 청소년 보호 영역별 실태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청소년의 성문제, 위험노출, 학교중도탈락, 학교폭력, 범죄의 8개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 중 유해업소와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등 유해환경으로 부터의 보호 항목이 가장 많은 3개 항목이 되었다. 유해환경으로 부터의 보호는 유해매체, 유해지역,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유해환경은 사회나 지역,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① 유해매체로부터의 보호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

매체물의 종류(청소년보호법 제 7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전자유기기구기관, 영화·연구·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방송 프로그램(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 제외),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 선전물,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이다.

② 유해업소로부터의 보호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③ 유해약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물을 말한다. 주류, 담배,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대마, 환각물질, 기타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 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3) 청소년 발달권지표의 구성요소

긍정적인 청소년발달의 중요한 목표는 청소년이 사회적, 도덕적,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청소년 발달은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근로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 그리고 기술의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생산적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Washington 대학의 사회개발연구모임(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이 긍정적인 청소년발달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로 유대의 증진, 신뢰의 촉진, 사회적 능력의 증진, 정서적 능력의 증진, 인지적 능력의 증진, 행동적 능력의 증진, 도덕적 능력의 증진, 자기결정의 촉진, 자기효능의 촉진, 분명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의 촉진, 미래에 대한 신념의 촉진,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의 제공, 전사회적참여의 기회제공, 전사회적 규범의 촉진 등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요구되는 영역들이 신체적 영역에서부터 정서적·행동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발달권을 포함한 권리지표는 청소년에 관한 일반적 지표와는 다른 체계와 내용을 필요로 한다. 인권지표는 국가가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 권리의 핵심적 원칙의 실현 보장, 안정적인 접근의 보장 그리고 비판적인 비정부활동가의 구체화 등 네 가지의 서로 연관된 목표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발달권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달권 지표의 구성에 인간개발보고서가 제시한 권리지표의 목표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달권 지표는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로서 발달권에 대한 국가의 실현 노력과 발달권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발달과업과 발달단계에 따른 권리의 영역과 발달권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접근 그리고 다양한 민간단체의 관점과 시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엇보다도 발달권 지표는 앞서 전술한 발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 영역, 신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을 중심으로 관심영역을 설정하여 이 같은 관심영역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청소년 발달의 영역을 정신적 영역과 신체적 영역 그리고 사회적 영역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대부분의 아동이나 청소년 발달관련 지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발달권의 영역을 전통적인 청소년의 발달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는 앞선 분류방식을 세분화하여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로 하위영역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발달의 영역을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것은 대부분의 청소년발달관련 지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른 것이다.

물론, 발달권이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참여권과 발달권으로 분류한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고 있어 지표의 구성도 UN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UN아동권리협약이 분류한 발달권 조차도 명확한 개념적 정의 없이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어 세부적인 지표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발달권에 대한 지표는 UN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한 권리의 영역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규정을 참고하되 발달권의 내용보다는 발달의 영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지표가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인지적 발달

인지적 영역은 인간의 인식과 이해에 관련된 것이다. 인지적 영역은 정서

적 영역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과 사고, 기억과 이해, 문제해결, 평가, 판단에 관한 정신적 과정이다. 인지발달이란 사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과정이 점진적·순차적으로 보다 복잡해지고 세련되어지는 변화를 가리킨다. 지적발달의 개념은 지능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발달에 포함되는 한정적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1989)에서는 지능발달보다는 인지발달을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발달과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지능발달보다는 지식을 확장시키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과정의 발달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현철 외, 2005). 따라서 청소년 발달권도 단순한 지능발달을 넘어서는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을 포괄하는 인지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Rintoul 외(1998)에 따르면, 인지는 지식의 획득을 위해 지각, 인식, 사고, 판단, 추론의 과정이다. 그에 따르면, 지식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언어를 통해서이다. 언어는 수용된 기호와 소리 그리고 몸짓으로 사고와 느낌을 의사소통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Rintoul 외(1998)는 인지적 능력이 언어습득능력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점차 의사소통능력이 발달함으로써 언어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는 듣고 읽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발음과 쓰인 글을 이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해한다. 청소년기에는 추상적 사고나 다양한 원칙에 따른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 사고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등 더욱 복잡한 사고과정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문제에 내재한 모든 논리적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이 같은 인지적 발달이 청소년의 발달권 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인지적 발달이 다른 발달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지적 능력은 인지적 영역에만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

행동적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지적 영역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로는 지능점수나 학업성취 정도 등이 자주 활용된다.

Rintoul 외(1998)는 인지적 발달의 중요한 영역으로 언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 능력을 언어능력과 동등한 주제로 아동발달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인지적 발달을 위한 과제로 언어능력과, 지능 혹은 인지적 기능, 구두조정(verbal mediation)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지적 영역에서 지식습득의 정도를 평가는 학업수행이나 학업성취 등이 주로 개별 지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지표들은 지적능력(IQ)테스트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IQ 테스트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IQ점수는 오늘날 인지적 기능을 평가하는 주요의 방법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편, 청소년기의 인지적 측면의 핵심적인 발달과업으로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1989)는 지식의 확장, 비판적 사고와 추리능력의 발달, 학업성취를 통한 능력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고, Youth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1991)은 지식, 추리능력,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지식습득,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지시하고 있다(Gambone 외 2002). Huebner(2003)는 인지적 역량을 “형식 및 비형식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학교졸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며, 비판적 사고기술, 창의력, 문제해결기술, 자기표현기술 등을 활용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김현철 외, 2005).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발달의 세부관심영역을 인지발달기회와 인지능력으로 분류한다.

(2) 정서적 발달

청소년은 성장해 감으로써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한 정서적 행동을 여겨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킨다. 이 같은 정의적 영역은 정서적·심리적 발달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까지의 지표들은 학대와 방임, 가정 폭력과 소년사범의 비

을 등이 사용되어 왔다.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안정감,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가족, 성인과의 관계, 긍정적인 동료관계, 정신건강, 문화적 민감성, 결혼비율,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와 생활조건, 그리고 대중교통의 이용 등이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청소년의 정의적 영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표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Bee 외(1982)는 부모와 아동의 관계의 질은 최상의 아동발달의 가장 강력한 예시중 하나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따뜻함과 책임감 있는 양육은 향후 아동의 언어발달이나 인지적 발달, 학업성취, 행동적 적응과도 연관된다. 반대로 말하자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애정을 주지 못하고 관심을 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을 성장하면서 다양한 학업상의 문제와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와 아동의 관계의 질에 대한 한 가지 지표는 아동과 부모사이의 애착이나 유대이다(Ainsworth & Bowlby, 1991). 물론 청소년기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유아기의 안정적인 애착이 인지적·언어적 발달뿐만 아니라 향후 동료관계의 질, 지속적인 문제해결 그리고 훌륭한 행동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의 노동부는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가족과 관련된 지표로 ‘부모와 자녀의 밀접성과 친밀성’, ‘가정일과’ 등을 사용했고, 미국의 Vermont 주에서는 ‘부모가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나 ‘높은 수준의 사랑과 지지를 제공하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비율’ 등을 지표로 활용했다. 성인과의 관계에 관한 지표로는 ‘가족 이외의 성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활용되었다. 동료와의 긍정적 관계에 관한 지표로는 타인에 대한 존중(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나 신념에 대한 존중)이나 청소년연맹의 수가 사용되었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환경에 관한 지표로는 가족이 일련에 이사하는 횟수, 유치원이후 전학한 학생의 수, 가정의 주거비용, 노숙청소년이나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수, 친척과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의 비율 등으로 구성되

었다. 한편, Land 외(2001)는 아동복지지표(CWI)에서 정서적·정신적 안정영역에 청소년과 자살률, 종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종교 활동의 참여 등으로 지표를 구성했다. 이외에도 가족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는 정도(PISA)’ 나 ‘일주일에 부모와 이야기를 하는 정도(PISA)’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 발달의 세부관심영역을 정서발달환경과 정서적 안정으로 분류한다.

(3) 사회적 발달

사회적 발달은 청소년이 부모와 형제, 동료, 교사 그리고 다른 성인들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과 관계된 것이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능력은 높은 지능지수와 긍정적인 자존감 그리고 훌륭한 정신건강을 포함한 긍정적인 발달결과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사회적 능력의 기본 요소를 개발할 수 없다면 향후 반사회적 행동이나 동료의 거절, 학업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능력은 아동이 주의와 정서, 행동을 조절하고 전반적인 자기통제와 함께 순종,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역량은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할 다양한 발달과업 중에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된 과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떠나 성인기로의 이행하는 시기로서 청소년들은 가정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범주를 벗어나 사회라는 훨씬 더 넓고 복잡한 세계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는 가정과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사회적 조직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은 학교교육 과정이나 청소년 관련 정책과 같은 공공의 개입과 노력을 통하여 특별히 육성되어야 할 중요한 성취과제인 것이다(김현철 외, 2005).

김현철 외(2005)는 사회적 역량을 청소년들이 사회적 신뢰감을 형성하고 친사회적 성향으로 사회적 적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역량의 하위영역으로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신뢰, 친사회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Rintoul 외(1998)에 따르면 사회적 발달은 개인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타인과 성공적으로 그리고 협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필요한 중요한 생활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Rintoul 외(1998)의 지적처럼, 아동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행동할 때, 그 행동은 사회적 책임을 이끄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은 사회적 발달의 핵심적 요소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하위범주로 ‘공감(empathy)’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interpreting social situations)’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발달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강조하는 이 같은 논거로 인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지표들에는 ‘타인 돕기’, ‘공유하기’, ‘봉사’, ‘사회규칙의 준수’ 등이 제시되고 있다.

Lippman(2002)은 사회 정서적 발달 영역의 관심영역으로 시민적 참여, 리더십, 청소년과 부모, 청소년과 다른 성인, 청소년과 동료의 긍정적인 관계, 문화적 민감성 등을 분류하고 있다. 개별지표로 자원봉사, 학교와 지역사회조직에 한번 이상 참여, 시민적 리더십, 신문·잡지·뉴스 등의 시청,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한명 이상의 친밀한 친구, 부정적인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감정이입, 동정의 기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발달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관심영역으로 사회성 발달 기회와 사회성 발달 정도로 분류한다.

(4) 직업적 발달

정부와 교육기관은 지역조직이나 국제조직과 협력하여 현재와 미래의 고용조건에 맞는 직업훈련이나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은 직업훈련과 전문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견습직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습득하고 노동수요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제프로그램에 접근할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경제 및 노동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많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청소년 직업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 인턴십이라는 교육·문화적 기회와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을 미래 국가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직업교육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의 직업교육은 미래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로서의 국가의 이해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청소년 본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가 직업교육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비율을 평가하는 것은 국가의 필요에 더하여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 시각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가 된다. 노동시장에 대한 청소년의 기회는 청소년의 사회통합과 청소년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얼마나 잘 이행하는가 하는 것은 교육성취와 교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고용기회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적극적인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은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모든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직업교육과 훈련과정에 표준화된 직무기준을 반영하는 동시에 자격증과 연결되도록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업교육 및 훈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접근의 보편성 이외에도 진로상담,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취약청소년이나 실직청소년, 그리고 불안정 근로청소년 등의 대상별 특성에 맞게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것도 강조 되어야 한다.

한편, 김현철 외(2005)는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을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진로탐색이나 준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개념화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기에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인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태도형성(진로의식),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구체적 준비를 위한 노력 등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진로·직업역량을 개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직업에 대한 태도와 능력이 포함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직업교육연구를 위한 국가센터에서는 직업교육과 훈련과 관련하여 정부수준별로 관련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연구센터에서는 직업교육과 훈련을 평가하기 위한 영역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부분과 공급부분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비교부분으로 분류하고 각 부분에 관련 개별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지표로는 ‘산출’이나 ‘생산성’, ‘성장에 대한 예측’, ‘산업훈련 수요’, ‘고용자의 학생의 만족도’ 등을 제시하고 있고 공급과 관련된 개별지표에는 훈련제공자의 수나 훈련활동과 경향, 훈련시장의 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비교는 직업훈련의 수요에 대한 공급의 충족여부를 평가하고자 고용수준대비 훈련시간 수준, 고용수준과 고용경향 대비 훈련등록과 계약 수수료 등을 개별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센터에서 제시한 직업교육과 훈련의 개별지표들은 청소년의 직업훈련이나 교육은 필연적으로 경기상황이나 고용여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표의 구성이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적 발달의 세부관심영역으로 진로준비기회와 직업능력으로 분류한다.

(5) 신체적 발달

운동적 영역은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다. 신체적 건강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 근력의 강도나 지구력, 힘, 스피드, 유연성, 균형, 조화와 같은 요소들로 분리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근육강도의 측정과 같은 측정기계를 통해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얼마나 키가 큰지,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를 통해서도 평가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게는 혈압이나

혈류, 소변검사들에 대한 평가로 도출될 수 있다.

오늘날 이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지표들은 10대의 출산이나 약물 남용률 그리고 식욕장애나 성행동 그리고 청소년의 출산 등을 포함한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대부분이었다.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행동보다는 바람직한 행동에 초점을 둔 지표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 지표들은 주로 절제한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적절한 몸무게, 건강보험의 등록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진호 외(2004)는 청소년개발지표에서 신체적 발달에 정신건강을 포함하여 세부관심영역으로 체격, 체력, 안전, 정신건강, 신체건강, 신체만족도 등으로 구성하고 각 세부관심영역의 개별지표로 신장, 체중, 과체중률, 50m 달리기, 근지구력, 순발력, 우울증 지수, 자살충동 지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Ochaíta와 Espinosa(2001)는 청소년의 발달에 필요한 핵심적 영역으로 신체적 건강과 자율을 제시하고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하위영역으로 충분한 영양, 적절한 주거, 적절한 의복과 위생, 건강보험, 수면과 휴식, 적절한 외부공간, 신체적 운동,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표도 자주 활용된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다양한 요인과 결부되어 있다. 주관적 건강 역시 가족관계의 질(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긍정적인 학습환경과도 결부되어 있다.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 주관적 지표로는 자신의 건강을 좋거나 좋지 않다고 느끼는 아동의 비율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UNICEF(2005)는 청소년 건강과 관련된 영역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자신의 건강상의 책임에 대한 의견’ 등의 주관적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적 발달의 세부관심영역으로 신체적 발달기회와 신체적 능력을 분류하여 청소년의 체력과 체격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선병기(1980)에 따르면, 체격은 인체의 작업능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발육과정에서 길이나 무게의 증가로 인한 개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체격은 신체발육상태를 가장 보편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외형적 요인을 말하며, 인체 측정에 있어서 주요한 측정항목을 포함하

고 있다. 이에 반해 체력은 신체적 자질에 의해 구성되며 최소한의 소비로 그 자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김진호 외, 2004).

4) 청소년 참여권지표의 구성요소

참여권의 하위영역은 참여권의 개념에 대한 각 학자들의 견해와 UN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 관련 조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성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 관련 조항의 경우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분석이 되었는데, 그 조항들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지역사회복지회 역(1999)에서는 참여권 관련된 UN아동권리협약 조항을 제 17조(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제 18조(부모의 제 1차적 양육책임과 이에 대한 국가의 원조), 제 42조(아동권리 협약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로 분석하였다. 이용교 외(2005)는 청소년 참여권의 관련 조항으로 제 12조(아동의 견해 존중)를 주요 조항으로 설명하였으며, 그 외에도 제 13조(표현의 자유), 제 15조(결사의 자유), 제 17조(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제 42조(아동권리 협약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언급하였다. 김인숙 외(2004)의 경우도 참여권 관련 조항을 제 12조, 제 13조, 제 15조, 제 17조, 제 18조, 제 42조로서 제 18조를 제외하고는 위의 이용교 외(2005)와 동일하게 관련조항을 밝혔다.

외국 학자들의 분석을 살펴보면, 국내학자들보다 참여권 관련조항을 폭넓게 정의하였다. Hart(1997)와 Sherrod 외(2006)에 의하면, 참여권 관련 UN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은 제 12조(아동의 견해 존중), 제 13조(표현의 자유), 제 14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 15조(결사의 자유), 제 17조(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제 23조(장애아동에 대한 특별 지원), 제 29조(자아실현과 책임 있는 시민정신을 위한 교육), 제 31조(놀이와 문화·예술생활에의 참여)가 그것이다. 국내 학자의 견해에 비해 국외 학자들은 제 14조, 23조, 29조, 31조를 추가하였으며, 대신 42조는 제외하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내 및 국외 학자들이 참여권 관련 조항으로 지적했던 조항들은 총 제 12조, 13조, 15조, 17조, 23조, 29조, 31조, 42조로 8개의

조항들이다. 여기에서는 국내학자와 국외학자의 견해를 종합하고 분석한 결과, UN아동권리협약 제 12조, 13조, 14조, 15조, 17조로서 총 5개 조항을 참여권 관련 조항으로 판단하였다. 이들 5개 조항 중심으로 참여권의 하위개념을 구성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교·사상·양심의 자유(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는 인권이 가장 기본적 권리인 자유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시민권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 영역과 관련되는 UN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은 제 14조로서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인숙 외, 2004).

(2) 자기결정권(청소년의 견해 존중)

청소년의 참여권의 구성요소 중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기결정권(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이다. Checkoway(1994)에 의하면 참여 (participation)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개입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재인용, 2004). 또한 민주사회에서의 참여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 자신의 일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에는 참여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정래, 2002).

국제권리협약 제 1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이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

원 편, 2004).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견해 존중’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 제 12조(아동의 견해를 존중)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가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표현의 자유(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청소년 참여권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표현의 자유로서, 사회적 영역의 의사표명의 자유권과 개인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최원기 외, 2003: 20).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UN아동권리협약은 제 13조(표현의 자유)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도,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 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김인숙 외, 2004).

(4) 결사 집회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결사 집회의 자유는 UN아동권리협약 제 15조(결사의 자유)와 관련된다. 즉, UN아동권리협약 제 15조는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부과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결사의 자유는 아동·청소년이 특정 정치적 협회·연합 등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자유 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할 자유를 의미한다.

(5) 정보접근권

정보접근권은 청소년의 의사표현의 권리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해야 어떤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으며, 그래야만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well-informed)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UN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살펴보면, 제 17조가 해당된다.

제 17조는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김인숙 외, 2004).

(6) 사회참여와 참정권

사회참여와 참정권은 UN아동권리협약에서 정확한 관련 조항을 찾기는 힘들지만, 특히 청소년의 참여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참정권 보장은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며, 보장 정도의 측정을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정도도 알아볼 수 있다(Takanishi, Mortimer, & McGourthy, 1997).

김경준(2004)의 청소년의 사회참여의 실태 연구에서 청소년 사회참여의 요소는 환경보호활동 참여, 인권평화활동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외에도 중요한 것은 참정권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참정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만 19세에 부여되며 피선거권은 만 25세 때 부여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참정권은 선거권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청소년인권 인프라지표의 구성요소

청소년인권 인프라지표의 구성요소는 청소년인구, 법·제도 구축, 비정부조직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청소년인구는 모든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포함

되어 있는 요소이며, 다른 지표들의 근거를 이루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법·제도 구축은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도적인 노력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비정부조직은 인권개선을 위한 비정부조직의 구성현황과 활동노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1) 청소년인구

청소년인구는 청소년인권지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청소년인권지표에는 청소년인구 영역이 세부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프라지표 영역에 세부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청소년수와 더불어 앞으로 그 수가 계속 늘어나서 사회적인 이슈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한부모가정 청소년, 이주노동자 자녀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청소년 인구수를 추가하였다.

(2) 법·제도 구축

청소년인권의 실질적 향상은 그 사회 및 국가의 법·제도 구축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에 다른 선행연구의 아동인권지표나 청소년인권지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소년인권 관련법의 정비 및 기능, 청소년인권관련 중앙행정조직의 정비 및 활동노력이 청소년인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3) 비정부조직

청소년인권의 향상은 정부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다양한 민간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바 청소년인권 관련 비정부조직의 현황과 이러한 비정부조직의 활동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VI.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1. 청소년인권지표 개발방향
2.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
3. 청소년인권지표 선정기준 및 절차
4. 청소년인권지표 조사항목의 개발
5. 청소년인권지표의 정의, 산식 및 자료원

VI.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1. 청소년인권지표 개발방향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지표의 개발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체제이론(system theory)에 기초한 지표체계를 확립한다. 지표는 기본적으로 기존 통계나 각종 추정치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고, 광범위하면서도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집약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청소년인권관련 지표는 체계적인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개발되기도는 주로 사회지표의 하위영역으로 개발되었거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인권관련 통계를 조각보(patchwork)식으로 수집·정리하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체계성이 부족하고 지표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체제이론에 기초하여 청소년인권의 하위구성영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하위영역에 속하는 지표항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구성한다.

둘째, 국제기준대비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환경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항목을 개발한다. UN 등 국제기구는 UN아동권리협약(CRC),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WPAY), 의제21(Agenda 21), 아동특별총회 결의안,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 등 각종 협약과 결의문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특히,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인권영역의 공식기록들을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 협약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과 권고사항의 이행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설정하고, 각 하위영역에 속하는 지표항목을 개발한다.

셋째,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삶의 특성을 반영하되, 청소년인권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대표하도록 한다. 기존에 개발된 청소년관련 지표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청소년현황과 생활실태를 파악하는데 크게 주력해왔다. 반면, 청소년의 인권이나 권리와 같은 특수한 영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왔으며, 이와 관련된 통계치의 확보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물론,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제 현상을 수치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고, 청소년인권의 범주를 정하는 것 또한 가변적인 상황에서 청소년인권지표의 구성 체계와 개별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 인권침해의 유형이나 인권침해의 가해자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인권의 쟁점과 그 특징을 공론화하는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⁵⁾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인권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되, 최근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쟁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청소년인권에 대한 질적 정보를 확충한다. 객관적 지표는 실제 있는 그대로의 제 조건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할 수 있고, 시계열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변화의 추세를 분석할 수 있으며,

5) 국제인 권계에서 인권의무(human rights obligation)를 갖고 있는 정부의 국제기준 준수 또는 미준수 규모를 확정하는 수단으로 사회경제적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중이다. 인권분야의 통계적 지표의 적용 또는 활용을 옹호하는 논지를 보면, 첫째로 특정집단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을 명확하게 드러내 가해책임자의 설명을 요구하고 앞으로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둘째로 인권침해의 범위와 특징을 이해하고 공론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국가정책적인 요청으로 인권분야에서 통계적 이용이 법제화되고 있으며, 인권영양평가제도와 같은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데 인권의 지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든다. 더 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계가 인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부적절한 이용이나 침해를 은폐하는 데 대해서 통계학자들이 이런 왜곡된 통계를 바로 잡는 것으로 인권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인권분야의 통계적 지표에는 다양한 제약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즉 인권분야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여서 개념을 수치화하기 복잡하고, 그렇다고 단순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어려우며, 인권을 통계적인 개념으로 재정의 하거나 인권범주를 정하는 것이 가변적이고, 신뢰할 만하고 포괄적인 통계수치를 수집하기 어렵고, 비수치적인 자료인 인터뷰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 또는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이창수 외, 2005:33-34),

지역 간·부문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 지표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질적 측면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느낌이나 의식,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관적 지표를 확충하여 객관적 지표를 보완하도록 한다.

다섯째,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킨다. 사회지표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보고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입안자로 하여금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과학적인 청소년인권관련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청소년인권관련 통계에 대한 정책입안자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자나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인권관련 정책입안자와 학계전문가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일반시민 등 다양한 정보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한다.

여섯째, 성별, 연령별, 학교 급별, 지역별 등 사회집단별 비교가 가능한 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한다. 청소년인권의 현재 모습은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역동적인 상호작용(dynamic interaction)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청소년인권 상황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별, 학교 급별 등)과 환경적인 특성(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사회 등)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의 수준은 성별, 학교 급별, 연령별, 지역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인권지표는 이와 같은 사회 집단 간 청소년인권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일곱째, 가용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새로운 조사를 통해 누적적인 청소년인권 관련 정보를 얻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즉,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는 상당히 정교한 조사 설계와 대규모의 표집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기존의 가용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표를 개발한다.

2.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를 【대분류-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개별지표】의 4단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개별지표의 고유번호는 청소년인권지표의 분류체계에 기초하여 4자리로 부여하였다. 첫째 자리는 대분류, 둘째 자리는 관심영역, 셋째 자리는 세부관심영역, 넷째 자리는 개별지표의 번호를 가리킨다. 개별지표에 따라 세부관심영역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셋째 자리를 0으로 처리하였다. 예컨대, 1-2-1-2는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비율”의 고유번호로서 청소년 생존권(1)-건강(2)-영양(1)-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비율(2)의 번호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2-4-0-2는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 실적”의 고유번호로서 청소년 보호권(2)-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4)-(0)-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 실적(2)을 지칭한다.

한편, 청소년인권지표의 분류체계에서는 청소년인권의 하위영역을 청소년 생존권, 청소년보호권, 청소년발달권, 청소년참여권, 청소년인권 인프라 등 5개의 대분류로 구성하였으며, 5개의 대분류는 다시 20개의 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된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는 <표VI-1>과 같으며, 각 하위영역별 지표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생존권

청소년생존권의 관심영역은 고유의 생명권(1-1), 신체적 생존권(1-2), 질적 생존권(1-3)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고유의 생명권은 출생(1-1-1), 생명(1-1-2)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신체적 생존권은 수명(1-2-1), 빈곤(1-2-2), 질병(1-2-3), 영양(1-2-4), 신체충실도(1-2-5), 건강(1-2-6), 치료(1-2-7), 안전(1-2-8), 사고(1-2-9)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질적 생존권은 자살(1-3-1), 가족(1-3-2), 사회보장(1-3-3)으로 분류하였다.

2) 청소년 보호권

청소년보호권의 관심영역은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2-1), 차별로부터의

보호(2-2), 위기 및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2-3),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2-4)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는 신체적 학대(2-1-1), 성매매 및 성적착취(2-1-2), 경제적 착취(2-1-3)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성차별(2-2-1), 민족차별(2-2-2), 지역차별(2-2-3), 연령차별(2-2-4), 고용차별(2-2-5), 장애차별(2-2-6)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위기 및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는 대안적 양육(2-3-1), 범죄로부터의 보호(2-3-2), 가출로부터의 보호(2-3-3)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3) 청소년 발달권

청소년발달권의 관심영역은 인지적 발달(3-1), 정서적 발달(3-2), 사회적 발달(3-3), 직업적 발달(3-4), 신체적 발달(3-5)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인지적 발달은 인지발달 기회(3-1-1), 인지능력(3-1-2)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서적 발달은 정서발달 환경(3-2-1), 정서적 안정(3-2-2)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발달은 사회성 발달기회(3-3-1), 사회성 발달정도(3-3-2)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직업적 발달은 진로준비기회(3-4-1), 직업능력(3-4-2)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신체적 발달은 신체발달기회(3-5-1), 신체적 능력(3-5-2)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4) 청소년 참여권

청소년참여권의 관심영역은 자기결정권(4-1), 표현의 자유(4-2), 집회·결사의 자유(4-3), 정보접근권(4-4), 사회참여 및 참정권(4-5)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은 종교결정권(4-1-1),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4-1-2), 교육 및 진로결정권(4-1-3),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4-1-4)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표현의 자유는 사적취향의 표현(4-2-1), 학생으로서의 의견표현(4-2-2)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학교 내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4-3-1), 학교 외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4-3-2)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정보접근권은 도서에 대한 접근(4-4-1), 인터넷에 대한 접근(4-4-2)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참여 및 참정권은 사회참여(4-5-1), 참정권(4-5-2)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5) 청소년인권 인프라

청소년인권 인프라의 관심영역은 청소년인구(5-1), 법·제도 구축(5-2), 비정부조직(5-3)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인구는 청소년인구(5-1-1), 특수청소년인구(5-1-2)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법·제도 구축은 청소년인권 관련법의 정비 및 기능(5-2-1), 중앙행정조직의 정비 및 활동노력(5-2-2)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비정부조직은 청소년인권관련 비정부조직(5-3-1), 청소년인권관련 비정부조직의 활동노력(5-3-2)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VI-1>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

대분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1. 청소년 생존권	1-1. 고유의 생명권	1-1-1. 출생
		1-1-2. 생명
		1-1-3. 사망
	1-2. 신체적 생존권	1-2-1. 수명
		1-2-2. 빈곤
		1-2-3. 질병
		1-2-4. 영양
		1-2-5. 신체충실도
		1-2-6. 건강
		1-2-7. 치료
		1-2-8. 안전
		1-2-9. 사고
	1-3. 질적 생존권	1-3-1. 자살
		1-3-2. 가족
		1-3-3. 사회보장
2. 청소년 보호권	2-1. 학대 및 착취	2-1-1. 신체적 학대
		2-1-2. 성매매 및 성적착취
		2-1-3. 경제적 착취
	2-2. 차별로부터의 보호	2-2-1. 성
		2-2-2. 민족
		2-2-3. 지역
		2-2-4. 연령
		2-2-5. 고용
		2-2-6. 장애
	2-3. 위기,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2-3-1. 대안적 양육
		2-3-2. 범죄
		2-3-3. 가출
	2-4. 유해환경	

<표VI-1>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계속)

대분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3. 청소년 발달권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 기회
		3-1-2. 인지능력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 환경
		3-2-2. 정서적 안정
	3-3. 사회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3-3-2. 사회성 발달 정도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기회
		3-4-2. 직업능력
	3-5. 신체적 발달	3-5-1. 신체발달 기회
		3-5-2. 신체적 능력
4. 청소년 참여권	4-1. 자기결정권 (=청소년의견존중)	4-1-1. 종교 결정권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4.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
	4-2. 표현의 자유	4-2-1. 사적취향의 표현
		4-2-2. 학생으로서의 의견 표현
	4-3. 결사·집회의 자유	4-3-1. 학교 내에서의 결사·집회
		4-3-2. 학교 외에서의 결사·집회
	4-4. 정보접근권	4-4-1. 도서에 대한 접근
		4-4-2. 인터넷 접근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4-5-2. 참정권
5. 청소년인권 인프라	5-1. 청소년인구	3-1-1. 청소년인구
		3-1-2. 특수 청소년인구
	5-2. 법·제도 구축	5-2-1. 청소년인권 관련법의 정비 및 기능
		5-2-2. 중앙행정조직의 정비 및 활동노력
	5-3. 비정부조직	5-3-1. 인권관련 비정부조직
		5-3-2. 비정부조직의 활동 노력

3. 청소년인권지표 선정기준 및 절차

1) 청소년인권지표 선정기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제 현상을 수량화하는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인권 향상의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청소년인권의 현재 상태와 변화양상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가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제 현상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수량화하는 통계치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개별지표들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행정연구원(1997)에 따르면, 정부정책 측정지표는 타당성과 신뢰성, 실용성, 정확성, 민감성,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타당성과 신뢰성(validity & reliability)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측정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practicality)은 측정지표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성(accuracy)은 측정지표가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에 의해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며, 민감성(sensitivity)은 측정지표가 측정대상이나 상황의 변화를 모두 포착할 수 있도록 변별력(discriminating power)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명확성(clarity)은 측정지표가 지나치게 기술적이거나 요소들을 복잡하게 조합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며,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은 사회지표의 조건으로서 기존자료의 활용가능성 및 시공간적 안정성, 포괄성 및 타당성, 이해가능성, 유용성, 국제비교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자료의 활용가능성 및 시공간적 안정성은 가용한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사회지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성 및 타당성은 지표가 대상으로 하는 인구의 전체 또는 부분을 대상으로 한 자료로부터 산출되어야 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들의 실재를 표현하고 그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

고도 외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해가능성은 지표의 이론적 근거나 기술적인 작업이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이용자와 대중들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용성은 제 기준별로 나뉘어 자료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시계열적으로 지표의 수준변화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비교가능성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들과 계량적 방법 및 산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1987)은 정책평가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측정가능성, 개선가능성, 통제가능성, 상대적 중요도, 충분성, 비교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측정가능성(measurability)은 평가대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계량지표 위주로 평가지표가 설정되지만, 계량화가 불가능하거나 질적 평가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비계량지표가 설정되기도 한다. 개선가능성(improvability)은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평가대상의 개선을 위한 환류 또는 연계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선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은 관리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대상이 통제할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상대적 중요성(relative importance)은 지표 선정 시 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상대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평가의 우선순위 또는 비중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충분성(sufficiency)은 평가대상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내용이나 지표항목간의 구분이 명료해야 함을 의미하며,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은 평가대상별 또는 평가대상간의 공시적·통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각 부문의 정책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위와 같은 지표의 구비조건 외에 해당 지표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표선정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천정웅 외(1998)의 『청소년정책 평가지표체계 연구』에서는 지표선정기준으로 ①타당성, ②중요성, ③자료획득의 용이성 등을 활용

하였다. 길은배 외(2001)의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연구』에서는 ①충족성, ②적합성, ③균형성, ④수월성, ⑤다양성, ⑥비교가능성 등을 지표선정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2)의 『청소년유해환경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표선정기준으로 ①해석의 용이성, ②자료입수가능성 및 용이성, ③신빙성 등을 제시하였다. 김진호 외(2003)의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에서는 ①타당성, ②상대적 중요성, ③실용성, ④측정가능성, ⑤계속성, ⑥이해가능성, ⑦비교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Annie E. Casey Foundation(2003)의 『Kids Count Data Book』에서는 핵심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①자료원의 신뢰성, ②시계열적 안정성 및 지속성, ③주정부간의 비교가능성, ④타당성 및 중요성, ⑤해석의 용이성, ⑥해석의 명료성, ⑦지속적 측정가능성 등의 선정기준에 의해 개별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정기준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지표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타당성(validity)이다.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인권의 중요한 특성들을 반영하여야 하며, 개별지표가 대상으로 하는 현상을 대표성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지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의 무수한 속성들을 대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지표들이 선정되어야 하며, 지엽적이거나 관련성이 없는 지표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측정가능성(measurability)이다.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인권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지표가 타당성과 중요성이 높고 실용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거나 계량화된 통계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지표로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셋째, 국제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이다. 청소년인권지표는 국제기준 대비 우리나라 청소년인권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는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라 청소년인권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선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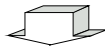
넷째, 실용성(**practicality**)이다. 청소년인권지표는 사회적 정보수요와 정책 입안자의 정책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정보의 소비자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해석의 용이성(**understandability and acceptance**)이다. 청소년인권지표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이해 가능해야 한다. 즉, 지표는 정책입안자, 학자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 및 단체종사자, 청소년지도자, 부모, 일반시민, 청소년 등에 의해 쉽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표를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에 의문이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계속성(**consistency**)이다. 개별지표는 관심주체에 대한 정보를 시계열적으로 안정성 있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별지표는 시계열적으로 관심주체에 대한 수준변화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적 활용만을 강조하여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별지표를 쉽게 변화·삭제한다면, 시계열적 변화추세의 파악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는 단기적으로 청소년정책이나 사회적 관심의 변화에 따라 변화·삭제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개별지표를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청소년인권지표의 지표항목은 이상의 여섯 가지 선정기준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인권지표개발의 시안적인 연구로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지표항목으로서의 가능요소를 추출하여 『청소년인권지표(안)』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과 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다른 선정기준들은 우선적 고려요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차적으로 고려하였다. 다시 말해 관심영역과 영역별 하위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 구성요소 상호간의 연관성과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고, 하위 항목들이 상위 항목들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으며, 국제기준과 비교 가능한 지표들을 선정·추출하였다.

우선적 고려요인	
1. 타 당 성	: 대표성이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
2. 측 정 가 능 성	: 객관적 측정가능성과 계량화된 통계자료의 확보가능성이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
3. 국제비교가능성	: 국제기준과 비교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



부차적 고려요인	
4. 실 용 성	: 정책입안자와 사회적 정보수요가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
5. 해석의 용이성	: 쉽게 이해되고 해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
6. 계 속 성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

[그림VI-1] 지표항목 선정기준간 우선순위

2) 청소년인권지표 선정절차

이 연구는 청소년인권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분류체계와 개별지표를 선정하였다.

첫째, 연구진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관련 권고내용과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안)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워크숍을 개최하여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을 생존권 영역, 보호권 영역, 발달권 영역, 참여권 영역, 인프라 영역 등 5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하위영역별로 관련문헌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청소년인권지표의 분류체계와 개별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개별지표의 타당성, 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 실용성, 해석의 용이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관심영역(26개)-세부관심영역(65개)에서 총 166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된 1차 시안을 개발하였다.⁶⁾

6) 1차 시안에서 하위영역별로 개발된 지표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를 살펴보면, 생존권영역에서는 4개 관심영역, 11개 세부관심영역에서 총 26개의 개별지

셋째, 1차 시안을 마련한 후 하위영역별로 ‘전문가포커스그룹’을 구성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지표체계의 타당성과 개선방안, 그리고 지표선정의 우선 고려사항인 타당성, 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을 중심으로 개별지표 항목별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협동연구협의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간 분류체계 및 지표항목에 대한 타당성과 중복성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와 협동연구협의회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시안의 분류체계와 개별지표 항목을 수정·보완·삭제하였다. 그 결과 2차 시안은 관심영역 (16개)-세부관심영역(46개)의 분류체계로 구성되었으며, 개별지표는 총 13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⁷⁾

다섯째, 2차 시안을 마련한 후 확대연구진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지표체계의 타당성과 개선방안, 그리고 지표선정의 우선 고려사항인 타당성, 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을 중심으로 개별지표 항목별 의견을 수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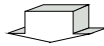
여섯째, 이상의 선정절차에 기초하여 『청소년인권지표(최종안)』을 수립하였다. 이 연구결과 제시된 『청소년인권지표(최종안)』은 대분류(4개)-관심영역(20개)-세부관심영역(56개)의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7개의 개별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결과는 향후 2차년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한국청소년인권지표』를 확정함에 있어서 기본 틀로 활용될 예정이다.

표가 개발되었으며, 보호권 영역에서는 8개 관심영역, 14개 세부관심영역에서 총 63개 개별지표가 개발되었다. 발달권 영역에서는 5개 관심영역, 11개 세부관심영역에서 총 35개 개별지표가 개발되었으며, 참여권 영역에서는 6개 관심영역, 23개 세부관심영역에서 총 23개의 개별지표가 개발되었다. 인프라 영역에서는 3개 관심영역, 6개 세부관심영역에서 총 19개의 개별지표가 개발되었다.

- 7) 2차 시안에서 하위영역별로 개발된 지표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를 살펴보면, 생존권영역에서는 3개 관심영역, 9개 세부관심영역에서 총 24개의 개별지표가 개발되었으며, 보호권 영역에서는 3개 관심영역, 11개 세부관심영역에서 총 26개 개별지표가 개발되었다. 발달권 영역에서는 3개 관심영역, 8개 세부관심영역에서 총 32개 개별지표가 개발되었으며, 참여권 영역에서는 4개 관심영역, 12개 세부관심영역에서 총 32개의 개별지표가 개발되었다. 인프라 영역에서는 3개 관심영역, 6개 세부관심영역에서 총 19개의 개별지표가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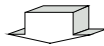
청소년인권지표영역 설정(연구진)

-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관련 권고내용 분석
- 청소년인권지표 하위영역(안) 구성
- 전문가워크숍 개최 및 청소년인권지표 하위영역(5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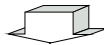
1차 시안 개발(영역별)

- 1단계: 하위영역별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 개발
- 2단계: 분류체계에 기초한 개별지표 개발
- 3단계: 지표선정기준에 기초한 1차 시안 개발
 - 관심영역: 26개, 세부관심영역: 65개, 개별지표: 16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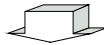
1차 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협동연구협의회 개최

- 하위영역별 전문가포커스 그룹 구성 및 의견수렴
- 협동연구협의회 개최 및 영역별 분류체계/지표항목의 타당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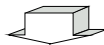
2차 시안 개발(연구진)

- 하위영역별 전문가포커스그룹 및 협동연구협의회 검토의견 분석
- 전문가 의견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2차 시안 개발
 - 관심영역: 16개, 세부관심영역: 46개, 개별지표: 133개



2차 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차 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고려사항
 - 우선적 고려사항: 타당성, 상대적 중요성, 실용성
 - 부차적 고려사항: 측정가능성, 계속성, 이해가능성, 비교가능성



청소년인권지표(최종안) 확정

- 전문가 자문회의에 기초한 2차 시안 수정·보완
- 청소년인권지표(최종안) 확정
 - 관심영역: 20개, 세부관심영역: 56개, 개별지표: 157개

[그림VI-2] 『청소년인권지표(최종안)』 선정절차

4. 청소년인권지표 조사항목의 개발

1) 청소년 생존권 지표 조사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1-1. 고유의 생명권	1-1-1 출생	1-1-1-1	15~19세 여성 청소년 1,000명당 출산율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성
	1-1-2 생명	1-1-2-1	청소년 인공 임신중절률	
		1-1-2-2	청소년 타살률	
	1-1-3 사망	1-1-3-1	청소년 사망률	
1-2. 신체적 생존권	1-2-1 수명	1-2-1-1	15세 청소년 기대여명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1-2-2 빈곤	1-2-2-1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청소년의 비율	
		1-2-2-2	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의 비율	
	1-2-3 질병	1-2-3-1	청소년 유병률	
		1-2-3-2	청소년 주요만성질환 유병률	
		1-2-3-3	청소년 HIV/AIDS 감염률	
	1-2-4 영양	1-2-4-1	청소년 1일당 영양권장량 75%미만 섭취자 비율	
		1-2-4-2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 비율	
	1-2-5 신체충실도	1-2-5-1	청소년 신체질량지수상 저체중률	
		1-2-5-2	청소년 신체질량지수상 비만율	
	1-2-6 건강	1-2-6-1	청소년 장애유형별 장애율	
		1-2-6-2	청소년 흡연율	
		1-2-6-3	청소년 음주율	성, 연령
		1-2-6-4	청소년 규칙적 운동실천율	성, 연령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1-2. 신체적 생존권	1-2-7 치료	1-2-6-5	청소년 주관적 건강평가	성, 연령
		1-2-6-6	청소년 스트레스 인식정도	성, 연령
		1-2-7-1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수진율	성, 연령
		1-2-7-2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수진율	성, 연령
		1-2-7-3	청소년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	성, 연령
	1-2-8 안전	1-2-8-1	범죄피해에 대한 청소년의 두려움	성, 연령
		1-2-8-2	사회 안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성, 연령
		1-2-8-3	학교 급식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	성, 연령
	1-2-9 사고	1-2-9-1	청소년 자동차 사고 사망자율	성, 연령
		1-2-9-2	청소년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률	성, 연령
1-3. 질적 생존권	1-3-1 자살 1-3-2 가족	1-2-9-3	청소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률	성, 연령
		1-2-9-4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	성, 연령
		1-3-1-1	청소년 자살률	성, 연령
		1-3-2-1	소년소녀가정 비율	성, 연령
		1-3-2-2	조손가족 청소년 비율	성, 연령
		1-3-2-3	가출청소년 비율	성, 연령
	1-3-3 사회보장	1-3-3-1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	성, 연령
		1-3-3-2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	성, 연령

2) 청소년 보호권 지표 조사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2-1. 학대 및 착취로 부터의 보호	2-1-1. 신체적 학대	2-1-1-1	학교폭력발생률	성, 연령, 교급
		2-1-1-2	체벌경험률	성, 연령, 교급
	2-1-2. 성매매 및 성적착취	2-1-2-1	청소년의 성폭행피해발생률	성, 연령
		2-1-2-2	성매매의 연간발생률	교급
		2-1-2-3	미혼부모의 발생률	연령, 교급
	2-1-3. 경제적 착취	2-1-3-1	18세 미만 청소년의 유해사업취업률	성, 연령, 지역
		2-1-3-2	평균근로시간	연령, 지역
		2-1-3-3	성인 근로자 평균 임금대비 청소년 임금비율	성, 연령
		2-1-3-4	최저임금미보장 근로청소년비율	성, 연령
		2-1-3-5	근로여건 만족도	성, 연령, 지역
2-2. 차별로부터의 보호	2-2-1. 성차별	2-2-1-1	양성평등의식지수	성, 교급
		2-2-2-1	인종별 취학률	성, 연령, 지역
	2-2-2. 민족차별	2-2-2-2	혼혈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성, 연령, 지역
		2-2-2-3	이주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성, 연령, 지역
	2-2-3. 지역차별	2-2-3-1	지역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연령, 지역
	2-2-4. 연령차별	2-2-4-1	연령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성, 연령
	2-2-5. 고용차별	2-2-5-1	청소년의 직종별 취업 인구	성, 연령
	2-2-6. 장애차별	2-2-6-1	장애 청소년의 취학률	성, 연령, 교급
		2-2-6-2	장애청소년취업률	성, 연령
		2-2-6-3	장애청소년에 대한 인식	성, 연령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2-3. 위기·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2-3-1. 대안적 양육	2-3-1-1	대안적 양육을 받는 청소년의 비율	성, 연령, 지역
		2-3-1-2	대안적 양육시설 운영예산	
	2-3-2. 범죄로 부터의 보호	2-3-2-1	청소년 범죄율: 유형별/연령별/동기별/교육수준별	교급, 유형, 동기, 연령
		2-3-2-2	범죄 및 비행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	교급
		2-3-2-3	누범률	교급
		2-3-2-4	청소년문제해결전화(1388)접수건수 대비 처리율	교급
	2-3-3. 가출로 부터의 보호	2-3-2-5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성, 교급
		2-3-2-6	범죄청소년 1인당 교정예산액	
		2-3-3-1	가출청소년 비율	교급
		2-3-3-2	가출청소년보호시설수	교급
2-4.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 부터의 보호	2-4-0.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 부터의 보호	2-3-3-3	가출청소년의 보호시설 수용비율	
		2-4-0-1	학교주변유해업소 수 및 연간 단속 수	
		2-4-0-2	청소년유해매체모니터링실적	
		2-4-0-3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수	

3) 청소년 발달권 지표 조사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 기회	3-1-1-1	취학률	성, 교급, 지역
		3-1-1-2	중퇴율	성, 교급
		3-1-1-3	대학진학률	성, 연령, 지역
		3-1-1-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율	교급, 지역
	3-1-2. 인지능력	3-1-2-1	창의성 지수	성, 연령, 지역
		3-1-2-2	문제해결능력 지수	성, 연령, 지역
		3-1-2-3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성, 연령, 지역
		3-1-2-4	지능지수	성, 연령, 지역
		3-2-1-1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성, 연령, 지역
		3-2-1-2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성, 연령, 지역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 환경	3-2-1-3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	성, 연령
		3-2-1-4	청소년 여가시간	성, 연령, 교급, 지역
		3-2-1-5	청소년 여가시설 수	지역
		3-2-2-1	우울증 지수	성, 연령
	3-2-2. 정서적 안정	3-2-2-2	스트레스 지수	성, 연령
		3-2-2-3	행복(심리적 안녕감) 지수	성, 연령
		3-3-1-1	청소년 1인당 평균 단짝 친구 수	성, 연령
	3-3. 사회적 발달	3-3-1-2	청소년 1인당 청소년단체/시설 프로그램 참여횟수	성, 연령, 지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3-3. 사회적 발달		3-3-1-3	청소년 1인당 월평균 자원봉사 시간	성, 연령, 교급, 지역
		3-3-1-4	청소년 1인당 평균 가입 동아리 수	성, 연령, 교급, 지역
		3-3-1-5	사회적 고립감 인식 정도	성, 연령
	3-3-2. 사회성 발달 정도	3-3-2-1	갈등이해능력 지수	성, 연령
		3-3-2-2	문화감수성(타문화수용능력) 지수	성, 연령
3-4. 직업적 발달		3-3-2-3	리더십 능력 지수	성, 연령
	3-4-1. 진로준비 기회	3-4-1-1	월평균 진로교육 실시 시간수	성, 연령, 교급
		3-4-1-2	진로탐색기회의 충분성	성, 연령, 교급
		3-4-1-3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성, 연령, 교급
	3-4-2. 직업능력	3-4-2-1	진로성숙도 지수	성, 연령, 교급
3-5. 신체적 발달		3-4-2-2	직업기초능력 수준	성, 연령, 교급
	3-5-1. 신체발달 기회	3-5-1-1	청소년의 주당 평균 운동시간	성, 연령, 교급, 지역
		3-5-1-2	청소년의 1일 평균 수면시간	성, 연령, 교급, 지역
	3-5-2. 신체적 능력	3-5-2-1	50미터 달리기	성, 연령, 지역
		3-5-2-2	근지구력(팔굽혀펴기/팔굽혀매달리기)	성, 연령, 지역
	3-5-2-3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성, 연령, 지역	
	3-5-2-4	순발력(제자리 멀리뛰기)	성, 연령, 지역	

4) 청소년 참여권 지표 조사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4-1. 자기결정권 (=청소년의견존중)	4-1-1. 종교 결정권	4-1-1-1	청소년의 종교 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	연령, 성, 지역
		4-1-1-2	종교채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의 비율	교급, 지역
		4-1-1-3	종교단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비율	교급, 지역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4-1-2-1	가정의 대소사 결정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연령, 성, 지역
		4-1-2-2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	연령, 성, 지역
4-2. 표현의 자유		4-1-2-3	부모의 이혼 시 면접권 확보비율	연령, 성, 지역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3-1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연령, 성, 지역
		4-1-3-2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연령, 성, 지역
	4-1-4. 문화·여가 활동 결정권	4-1-4-1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에 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정도	연령, 성, 지역
	4-2-1. 사적취향의 표현	4-2-1-1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	교급, 성, 지역
4-3. 집회·결사의 자유		4-2-1-2	부모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	연령, 성, 지역
	4-2-2. 학생으로서의 의견 표현	4-2-2-1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교급, 성, 지역
		4-2-2-2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교급, 성, 지역
		4-2-2-3	학생으로서 의견 표명 정도	연령, 성, 지역
	4-3-1. 학교 내에서의 집회·결사	4-3-1-1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교급, 성, 지역
		4-3-1-2	학생자치회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연령, 성, 지역
	4-3-2. 학교 외에서의 집회·결사	4-3-2-1	청소년관련단체에 가입한 청소년의 비율	연령, 성, 지역
		4-3-2-2	청소년 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 활동에 대한 학교 규제 정도	연령, 성, 지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4-4. 정보접근권	4-4-1. 도서에 대한 접근	4-4-1-1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	연령
		4-4-1-2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 현황	연령, 성, 지역
	4-4-2. 인터넷에 대한 접근	4-4-2-1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지역
		4-4-2-2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지역
		4-4-2-3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연령, 성, 지역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4-5-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연령, 성, 지역
		4-5-1-2	부모나 학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재 정도	연령(17-24세), 성, 지역
		4-5-1-3	청년 실업률	연령(20-24세), 성, 지역
		4-5-1-4	청소년 정책관련 활동 동아리 참여율	연령, 성, 지역
	4-5-2. 참정권	4-5-2-1	학생 대표 피선출권 제한(성적 등을 통해)하는 학교비율	교급, 지역
		4-5-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학교비율	교급, 지역
		4-5-2-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는 학교비율	교급, 지역
		4-5-2-4	청소년의 선거참가율	연령(19-24세), 성

5) 청소년인권 인프라 지표 조사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5-1. 청소년인구	5-1-1. 청소년 총인구	5-1-1-1	총 인구수	성, 연령, 지역
	5-1-2. 특수 청소년인구	5-1-2-1	장애 청소년 인구수	성, 연령, 지역
		5-1-2-2	한부모가정 청소년 인구수	성, 연령, 지역
		5-1-2-3	이주노동자 자녀 청소년 인구수	성, 연령, 지역
5-2. 법·제도 구축		5-1-2-4	다문화가정 자녀 청소년 인구수	성, 연령, 지역
	5-2-1. 청소년인권 관련 법의 정비 및 기능	5-2-1-1	청소년인권관련 법의 정비 실태와 기능	
		5-2-1-2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종류	
		5-2-1-3	실제 청소년인권 향상 효과	성, 연령
	5-2-2. 중앙행정조직의 정비 및 활동 노력	5-2-2-1	청소년인권 관련 중앙정부의 정비 현황	
		5-2-2-2	행정조직의 청소년인권 보호 정도	성, 연령
5-3. 비정부조직		5-2-2-3	중앙행정부의 청소년인권 향상 노력	성, 연령
		5-2-2-4	중앙행정부의 청소년인권 증진 효과	성, 연령
	5-3-1. 청소년인권관련 비정부조직	5-3-1-1	비정부조직의 구성 현황	지역
	5-3-2. 청소년인권관련 비정부조직의 활동 노력	5-3-2-1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노력	성, 연령
		5-3-2-2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실적	
		5-3-2-3	비정부조직의 인권운동에 대한 인지도	성, 연령

5. 청소년인권지표의 정의, 산식 및 자료원

1) 청소년 생존권 지표 정의, 산식 및 자료원

1-1. 고유의 생명권

1-1-1. 출생

1-1-1-1. 15~19세 여성 청소년 1,000명당 출산율

- 정의: 출산력 수준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가임연령층(15~49세)의 여성을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해당연령층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응용하여 ‘15~19세 여성 청소년’에 한정시킨 출산율
- 산식: $(\text{출생아 수} / 15\sim 19\text{세 여성 인구수}) \times 1,000$
- 자료원: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 출생 사망편),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1-2. 생명

1-1-2-1. 청소년 인공 임신중절율(연령별)

- 정의: 1년 동안 해당 연령집단 여성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 건수
- 산식: $(\text{연령별 인공임신중절건수} / \text{연령별 여자인구}) \times 1,000$
-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1-2-2. 청소년 타살률(성별, 연령별)

- 정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국제 질병/사인분류체계에 따라 전체 사망자수에 대한 사인별 사망자수의 백분비
- 산식: $(\text{청소년 타살자 수} / \text{청소년 사망자 수}) \times 100$
- 자료원: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 출생 사망편), 각년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4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1-3. 사망

1-1-3-1. 청소년 사망률(성별, 연령별)

- 정의: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 산식: $(\text{사망자 수} / \text{해당 인구수}) \times 1,000$
- 자료원: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2004.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 신체적 생존권

1-2-1. 수명

1-2-1-1. 15세 청소년 기대여명(성별)

- 정의: 어떤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생존 연수.
여기에서는 15세를 청소년의 대표연령으로 설정함.
- 자료원: 통계청, 2003년 생명표, 2005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2. 빈곤

1-2-2-1.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청소년의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청소년의 비율.
- 산식: $(\text{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청소년 수} / \text{해당 인구수}) \times 100$
- 자료원: 국제연합아동기금,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 각년도

1-2-2-2. 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의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 미달 청소년 비율.
- 산식: $\text{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 수} / \text{해당 인구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1-2-3. 질병

1-2-3-1. 청소년 유병률(성별, 연령별)

- 정의: 조사대상 인구 중 대상기간 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
- 산식: (기간 내(2주간) 유병자 수/대상 인구수) × 100
-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3-2. 청소년 주요만성질환 유병률(성별, 연령별)

- 정의: 주요 만성질환(관절염, 고혈압, 치아우식증, 위염/소화성궤양, 알레르기성 비염, 요통/좌골통, 당뇨, 디스크, 사고후유증, 신경통 등)별로 유병률을 파악함
- 산식 : (기간 내(2주간) 주요만성질환 유병자 수/대상 인구수) × 100
-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3-3. 청소년 HIV/AIDS 감염률(성별, 연령별)

- 정의: HIV/AIDS인 사람의 수를 인구100,000명으로 나눈 비율
- 산식 : (HIV/AIDS감염자 수/대상 인구수) × 100,000
- 자료원: 질병관리본부, 전염병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4. 영양

1-2-4-1. 청소년 1일당 영양권장량 75%미만 섭취자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1일당 1인 영양권장량의 75%미만 섭취자의 백분율
- 산식: (영양권장량 75%미만 섭취자 수/대상 인구수) × 100
- 자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4-2.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결식하는 청소년의 백분율

- 산식: (아침식사 결식자 수/대상 인구수) ×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1-2-5. 신체충실도

1-2-5-1. 청소년 신체질량지수(BMI)상 저체중율(성별, 연령별)

- 정의: 신장과 체중을 알고 있을 경우 신장에 대한 체중의 비율
- 산식: $\text{체중(Kg)}/\text{신장(m)}^2$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5-2. 청소년 신체질량지수(BMI)상 비만율(성별, 연령별)

- 정의: 25정도(18.5~24.9)면 정상, 25.0~29.9는 과체중, 30.0~34.9는 경도비만, 35.0이상은 고도비만
- 산식: $\text{체중(Kg)}/\text{신장(m)}^2$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6. 건강

1-2-6-1. 청소년 장애유형별 장애율(성별, 연령별)

- 정의: 장애인복지법 15종 장애인유형별 장애청소년 비율
- 산식: (장애유형별 장애자 수/대상 인구수) × 100
- 자료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1-2-6-2. 청소년 흡연율(성별, 연령별)

- 정의: 대상 청소년 중 흡연을 한 비율과 그 정도(하루 반 갑 이하, 한 갑, 한 갑 반, 두 갑 이상)를 나타내는 백분율
- 산식: (흡연자 수/대상 인구수) × 100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6-3. 청소년 음주율(성별, 연령별)

- 정의: 대상 청소년 중 음주를 한 비율과 그 정도(월 1회 이하, 월 2~3회,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를 나타내는 백분율
- 산식: $(\text{음주자수}/\text{대상 인구수}) \times 100$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6-4. 청소년 규칙적 운동실천율(성별, 연령별)

- 정의: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지와 그 정도
- 산식: $(\text{규칙적 운동실천자 수}/\text{대상 인구수}) \times 100$
-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6-5. 청소년 주관적 건강평가(성별, 연령별)

- 정의: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평가 수준
- 산식: 주관적 건강평가 수준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6-6. 청소년 스트레스 인식정도(성별, 연령별)

- 정의: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인식정도(5점 척도)
- 산식: 스트레스 인식정도 수준
-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7. 치료

1-2-7-1.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수진율(성별, 연령별)

- 정의: 적용인구 1,000명당 지급건수
- 산식: $(\text{지급건수}/\text{건강보험적용인구}) \times 1,000$
-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7-2.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수진율(성별, 연령별)

- 정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대상 연평균 입원치료 수
- 산식: $(\text{연간 입원진료건수}/\text{건강보험 적용인구}) \times 1,000$
-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7-3. 청소년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해당 인구 중 의료급여대상자의 백분율
- 산식: $(\text{의료급여 대상자 수}/\text{대상 인구수}) \times 100$
- 자료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8. 안전

1-2-8-1. 범죄피해에 대한 청소년의 두려움(성별, 연령별)

- 정의: 당사자가 인식하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
- 산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식정도 수준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8-2. 사회 안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성별, 연령별)

- 정의: 청소년이 느끼는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

- 산식: 사회 안전에 대한 청소년 인식정도 수준
- 자료원: 통계청, 2005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5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8-3. 학교 급식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성별, 연령별)

- 정의: 당사자가 느끼는 ‘학교 급식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 수준
- 산식: 스트레스 인식정도 수준
- 자료원: 새로운 조사

1-2-9. 사고

1-2-9-1. 청소년 자동차 사고 사망자율(성별, 연령별)

- 정의: 해당 인구 100,000명당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
- 산식: $(\text{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청소년 수} / \text{대상 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9-2. 청소년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률(성별, 연령별)

- 정의: 해당 인구 100,000명당 가정 내 안전사고로 사망·부상 비율
- 산식: $(\text{가정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청소년 수} / \text{대상 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1-2-9-3. 청소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률(성별, 연령별)

- 정의: 해당 인구 100,000명당 학교 안전사고로 사망·부상한 자 비율
- 산식: $(\text{학교 안전사고로 사망 혹은 부상을 당한 청소년 수} / \text{대상 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1-2-9-4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성별, 연령별)

- 정의: 해당 인구 100,000명당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비율
- 산식: (학교급식 식중독 경험 청소년 수/대상 인구수) × 100,0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1-3. 질적 생존권

1-3-1. 자살

1-3-1-1. 청소년 자살률(성별, 연령별)

- 정의: 인구 100,000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 수
- 산식: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 수/대상 인구수) × 100,000
- 자료원: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4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3-2. 가족

1-3-2-1. 소년소녀가정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인구 100,000명당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결함으로 인하여 20세 이하 소년, 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의 청소년 수
- 산식: (등록된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 수/대상 인구수) × 100,000
- 자료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1-3-2-2. 조손가족 청소년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인구 100,000명당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조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 비율
- 산식: (신고된 조손가족의 청소년 수/대상 인구수) × 100,0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1-3-2-3. 가출청소년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인구 100,000명당 부모 혹은 보호자로부터 24시간 이상 이탈

되어 가출한 것으로 신고된 청소년 비율

- 산식: (신고된 가출청소년 수/대상 인구수) × 100,0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5

1-3-3. 사회보장

1-3-3-1.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인구 100,000명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청소년 비율
- 산식: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소년 수/대상 인구수) × 100,000
- 자료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1-3-3-2.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성별, 연령별)

- 정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소년에게 급여에 대한 만족도 수준
- 산식: 기초생활 수급 청소년 급여만족도 수준
- 자료원: 새로운 조사

2) 청소년 보호권 지표 정의, 산식 및 자료원

2-1.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2-1-1. 신체적 학대

2-1-1-1. 학교폭력발생률(학교유형별, 폭력유형별, 성별)

- 정의: 학교폭력 종류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 산식: (종류별 폭력경험아동 수/총 아동수) × 1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2-1-1-2. 체벌경험률

- 정의: 교사로부터 체벌당한 경험 있는 청소년 비율
- 산식: (형태별 체벌경험 청소년 수/총 청소년 수) × 100
- 자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연구소,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2-1-2. 성 매매 및 성적착취

2-1-2-1.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발생률

- 정의: 성폭력 유형별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수
- 산식: $(\text{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수} / \text{전체 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해바라기 아동센터

2-1-2-2. 성매매의 연간발생률

- 정의: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 수
- 산식: $(\text{성매매경험 청소년 수} / \text{전체 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해바라기 아동센터

2-1-2-3. 미혼모의 18세 미만 인구비율

- 정의: 18세 미만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의 비율
- 산식: $(\text{18세 미만 미혼모 출산율} / \text{전체출산율}) \times 100$
- 자료원: 인구통계편람

2-1-3. 경제적 착취

2-1-3-1. 18세 미만 청소년의 유해산업 취업률(직종별, 성별)

- 정의: 18세 미만 청소년 취업자 수 중 유해산업 취업 청소년의 비율
- 산식: $(\text{18세 미만 청소년의 유해산업 취업자 수} / \text{18세 미만 청소년 취업자수}) \times 100$
- 자료원: 노동부

2-1-3-2. 평균 근로시간

- 정의: 근로청소년의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산식: $(\sum \text{근로청소년의 근로시간} / \text{전체근로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2-1-3-3. 성인근로자 평균 임금대비 청소년 임금비율(연령별, 직종별)

- 정의: 직종별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근로청소년 평균 임금수준
- 산식: $(\text{청소년근로자평균임금} / \text{전체근로자평균임금}) \times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2-1-3-4. 근로 여건 만족도

- 정의: 근로청소년의 근로환경 및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 자료원: 보건사회연구원자료 및 새로운 조사

2-1-3-5. 최저임금 미 보장 근로청소년비율

- 정의: 성인대비 근로청소년의 최저임금 미보장 근로청소년의 비율
- 산식: $(\text{최저임금미보장 청소년근로자 수} / \text{최저임금미보장성인근로자 수}) \times 100$
- 자료원: 노동부

2-2. 차별로부터의 보호

2-2-1. 성차별

2-2-1-1. 양성평등의식지수

- 정의: 15~24세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2-2-2. 민족차별

2-2-2-1. 인종별 취학률

- 정의: 취학적령인구 대비 실제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비율
- 산식: $(\text{인종별각급학교 학생 수} / \text{인종별각급학교 취학적령인구 수}) \times 100$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2-2-2. 혼혈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 정의: 15세에서 24세 혼혈청소년에 대한 인식
- 자료원: 새로운 조사

2-2-2-3. 이주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 정의: 15세에서 24세 이주가정 청소년에 대한 인식
- 자료원: 새로운 조사

2-2-3. 지역차별

2-2-3-1. 지역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정의: 거주지역으로 인한 청소년의 차별에 대한 인식
- 자료원: 새로운 조사

2-2-4. 연령차별

2-2-4-1. 연령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정의: 연령으로 인한 청소년의 차별에 대한 인식
- 자료원: 새로운 조사

2-2-5. 고용차별

2-2-5-1. 직종별 청소년의 취업인구

- 정의: 24세 미만 청소년의 직종별 취업 인구수
- 산식: $(\text{직종별 취업 인구수} / \text{직종별 청소년 인구수}) \times 1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노동부, 한국청소년개발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2-6. 장애차별

2-2-6-1. 장애 청소년의 취학률

- 정의: 취학적령 장애아 중 특수학교 재학 및 통합교육 수혜학생비율

- 산식: (과정별 장애청소년의 취학생 수/과정별 적량장애아 수) × 100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2-6-2. 장애청소년취업률

- 정의: 각급학교 졸업생수 대비, 직종별, 성별 장애청소년의 취업률
- 산식: (장애청소년의 취업자 수/장애청소년 졸업생 수) × 100
- 자료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2-2-6-3. 장애청소년에 대한 인식

- 정의: 장애청소년에 대한 일반 청소년의 인식
- 자료원: 새로운 조사

2-3. 위기·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2-3-1. 대안적 양육

2-3-1-1. 대안적 양육(위탁가정, 쉼터, 입양)을 받는 청소년 비율(9세~18세)

- 정의: 대안적 양육을 받는 청소년 비율(유형별, 연령별)
- 산식: (대안적 양육(유형별)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수/전체 요보호 청소년 수) ×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쉼터협회, 국가청소년위원회

2-3-1-2. 대안적 양육시설 운영 예산

- 정의: 연간 대안적 양육시설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율
- 산식: 해당기관(보호시설별)운영비의 합/전체 청소년보호시설 운영비
- 자료원: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2-3-2. 범죄

2-3-2-1. 청소년 범죄율

- 정의: 범죄자중 청소년 비율

- 산식: (청소년범죄자 수/총범죄자 수) × 100
- 자료원: 청소년백서, 법무부

2-3-2-2. 청소년 누범률

- 정의: 범죄청소년 중 재범이상 청소년 비율
- 산식: (재범이상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범죄자 수) × 100
- 자료처: 법무부

2-3-2-3. 범죄 및 비행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

- 정의: 범죄 및 비행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
- 산식: (청소년 대상 범죄 수/전체 범죄 수) × 1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새로운 조사

2-3-2-4. 청소년문제해결전화(1388)접수건수 대비 처리율

- 정의: 청소년문제해결전화(1388) 접수건수 대비 문제처리 비율
- 산식: (문제처리 총 건수/청소년문제해결전화 총 접수건수) × 1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2-3-2-5.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 정의: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 산식: (전체 보호청소년 수-변호인을 선임한 보호 청소년 수/변호인의 도움이 전무한 보호 청소년 수) × 100
- 자료원 : 법무부

2-3-2-6. 범죄청소년 1인당 교정예산액

- 정의: 범죄 청소년 1인에 대한 정부의 교정예산액
- 산식: (정부의 교정예산이 투입되는 총 청소년 범죄자 수/청소년 범죄에 대한 정부의 총 교정 예산액) × 100

- 자료원: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

2-3-3. 가출

2-3-3-1. 가출 청소년 비율

- 정의: 원인별, 성별 연간 가출청소년의 비율
- 산식: $(\text{가출경험 청소년 수} / \text{총 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2-3-3-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 정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수
- 산식: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쉼터 등) 수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2-3-3-3. 가출청소년의 보호시설 수용 비율

- 정의: 전체 가출청소년 대비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용률
- 산식: $(\sum \text{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의 수용인원} / \text{전체가출청소년의 수}) \times 100$
- 자료원: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

2-4. 청소년 유해환경

2-4-0-1. 학교주변 유해업소 수 및 연간 단속건수(업소유형/지역별)

- 정의: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수 및 연간 단속건수
- 산식: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수 및 연간 단속건수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자료

2-4-0-2.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 실적

- 정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모니터링 된 유해매체 수
- 산식 :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 실적 수

- 자료원 : 국가청소년위원회

2-4-0-3.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수

- 정의: 지자체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지정 현황
- 산식: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수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3) 청소년 발달권 지표 정의, 산식 및 자료원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기회

3-1-1-1. 취학률

- 정의: 취학연령인구 중 정규교육과정의 참여율
- 산식: $(\text{정규교육과정 학생 수} / \text{취학연령인구}) \times 100$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3-1-1-2. 중퇴율

- 정의: 재학생 중 사망, 질병, 가사, 폭행, 부적응, 휴학, 이민 등의 사유로 제적, 중퇴, 휴학한 학생의 비율
- 산식: $(\text{제적 중퇴자 및 휴학자 수} / \text{재적 학생 수}) \times 100$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3-1-1-3. 대학진학률

- 정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
- 산식: $(\text{대학입학학생 수} / \text{전체 고등학교 졸업생 수}) \times 100$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3-1-1-4. 학생1인당 사교육비 비율

- 정의: 각 급 학교 학생 1인당 월간 평균 과외수업(각종 사설학원, 개인 교습비, 배달 학습지비 등)
- 산식: (연간 총 과외수업비/전체 학생 수)/12
- 자료원: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3-1-2. 인지능력

3-1-2-1. 창의성 지수

- 정의: 청소년의 창의적 사고력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1-2-2. 문제해결능력 지수

- 정의: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 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1-2-3. 자기주도학습준비도

- 정의: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1-2-4. 지능지수

- 정의: 청소년의 지능지수(IQ)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환경

3-2-1-1.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 정의: 부모가 자신에게 적절한 조언과 충고, 칭찬을 하고 있고 자신의 주장과 의사를 경청하고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인식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2-1-2.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 정의: 교사가 자신에게 적절한 조언과 충고, 칭찬을 하고 있고 자신의 주장과 의사에 경청하고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인식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2-1-3. 지역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

- 정의: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인식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2-1-4. 청소년 여가시간

- 정의: 전체 청소년이 한 주에 보내는 평균적인 여가활동 시간
- 산식: Σ 청소년의 주당 총 여가시간/전체 청소년 수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3-2-1-5. 청소년 여가시설 수

- 정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유형별 여가시설의 수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및 한국의 사회지표

3-2-2. 정서적 안정

3-2-2-1. 우울증 지수

- 정의: 청소년의 우울증 지수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2-2-2. 스트레스 지수

- 정의: 청소년의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2-2-3. 행복(심리적 안정) 지수

- 정의: 청소년의 행복감 지수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3. 사회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3-3-1-1. 학생 1인당 평균 단짝 수

- 정의: 청소년 1명당 자신의 고민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평균 단짝 친구의 수
- 산식: Σ 응답 청소년의 단짝 친구 수/전체 청소년의 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3-1-2. 청소년 1인당 청소년단체/시설 프로그램 참여횟수

- 정의: 청소년 1인당 청소년 중 청소년 단체 및 시설 프로그램의 평균 참여 횟수
- 산식: Σ 청소년단체 및 시설프로그램 참여 횟수/전체 청소년의 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3-1-3. 청소년 1인당 월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

- 정의: 학생 1명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
- 산식: Σ 청소년 자원봉사시간/전체 청소년 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3-1-4. 청소년 1인당 평균 가입동아리 수

- 정의: 학생 1명당 학내외 청소년 동아리에 평균 가입 수
- 산식: Σ 청소년 동아리 가입 수/전체 청소년의 수
- 자료원: 한국아동학회·한솔교육문화원, 아동발달백서
통계청, 사회지표보고서

3-3-1-5. 사회적 고립감 인식 정도

- 정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인식 정도
- 자료원 : 새로운 조사

3-3-2. 사회성 발달정도

3-3-2-1. 갈등이해능력 지수

- 정의: 청소년의 갈등이해능력 지수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 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3-2-2. 문화감수성(타문화수용능력) 지수

- 정의: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지수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 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3-2-3. 리더십 능력 지수

- 정의: 청소년의 리더십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 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 기회

3-4-1-1. 월 평균 진로교육실시 실시 시간 수

- 정의: 총 수업시간 대비 직업교육 또는 체험학습 실시 시간의 비율.
- 산식: $(\text{직로교육실시 시수} / \text{총 수업시간}) \times 100$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3-4-1-2. 진로탐색기회의 충분성

- 정의: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기 위한 기회의 정도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4-1-3.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 정의: 청소년 진로교육 참여한 학생의 주관적인 만족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4-2. 직업능력

3-4-2-1. 진로성숙도 지수

- 정의 :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 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4-2-2. 직업기초능력 수준

- 정의: 청소년의 진로기초능력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 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5. 신체적 발달

3-5-1. 신체발달 기회

3-5-1-1. 청소년 주당 평균 운동시간

- 정의 : 청소년이 1인이 일주일에 운동하는 평균 시간
- 산식: Σ 청소년의 주당 운동시간/전체 청소년의 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5-1-2. 청소년의 1일 평균 수면시간

- 정의: 청소년 1인이 하루에 잠을 자는 평균 수면시간
- 산식 : Σ 청소년 1일 수면시간/전체 청소년의 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5-2. 신체적 능력

3-5-2-1. 50m 달리기

- 정의 : 청소년의 50m달리기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3-5-2-2. 근지구력(팔굽혀펴기/팔 굽혀 매달리기)

- 정의: 남자청소년의 팔굽혀 펴기 횟수/ 여자청소년의 팔 굽혀 매달리기 시간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3-5-2-3.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 정의: 청소년의 60초당 윗몸일으키기 총 횟수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3-5-2-4.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 정의: 도움닫기 없이 구름판 위에서 두발을 놓고 뛰는 거리의 정도
- 자료원: 문화관광부, 국민체력실태조사

3-5-2-5. 심폐지구력(오래달리기)

- 정의: 청소년이 1,500m을 달리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
- 자료원: 문화관광부, 국민체력실태조사

3-5-2-6.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정의: 앉아서 윗몸을 앞으로 2초 이상 구부리는 정도
- 자료원: 문화관광부, 국민체력실태조사

4) 청소년 참여권 지표 정의, 산식 및 자료원

4-1 자기결정권

4-1-1. 종교 결정권

4-1-1-1. 청소년의 종교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

- 정의: 청소년이 종교를 결정할 경우에 부모의 종교와 상관없이 부모가 청소년의 종교를 존중하는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1-1-2.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 비율

- 정의: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 비율
- 산식: 전체 종교재단 설립 중·고등학교의 비율(%)=(전체 종교재단 설립 중·고등학교의 수/전체 중·고등학교의 수) × 100
종교재단 설립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율(%)=(전체 종교재단 설립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수/전체 중·고등학교 재학생 수) × 100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4-1-1-3. 종교 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비율

- 정의: 종교기관이 설립한 학교 중 종교 대체과목을 개설하였거나 자유선택을 허용하는 학교의 비율
- 산식: (종교과목 대체과목이 있거나 자유선택 학교 수/종교기관 설립 학교 수) ×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4-1-2-1. 가정의 대소사 결정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 정의: 가정의 대소사(이사, 전학, 부모이혼 등)를 결정할 경우에

부모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1-2-2. 부모의 이혼 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의 비율(%)

- 정의: 연간 부모가 이혼한 청소년 중 부모를 선택한 청소년의 비율
- 산식: (부모이혼 시 부모 선택 청소년 수/부모가 이혼한 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1-2-3. 부모의 이혼 시 면접권 확보 비율(%)

- 정의: 연간 부모가 이혼한 아동 중 부모의 자녀 면접권이 인정되는 아동 비율, 추후 아동의 부모 면접권이 인정되는 이를 포함함
- 산식: (면접권 인정 청소년 수/이혼 부모의 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3-1.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 정의: 청소년이 상급학교를 결정할 경우에 부모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1-3-2.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 정의: 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할 경우에 부모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 (매우 존중, 대체로 존중, 보통, 대체로 무시, 매우 무시)에 대한 청소년 구성 비율
- 산식: 항목별 응답 수/전체 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1-4.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

4-1-4-1.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에 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정도

- 정의: 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활동(스포츠, 취미활동, tv 시청 등)에 대한 선택을 부모가 존중하는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2 표현의 자유

4-2-1. 사적 취향의 표현

4-2-1-1.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 비율

- 정의: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자율화 실천 학교 비율
- 산식: (두발 및 복장 자율화 학교 수/전체 학교 수) ×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2-1-2. 부모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

- 정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해 부모가 간섭하는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2-2. 학생으로서의 의사표현

4-2-2-1.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 정의: 학생이 참여하는 교지 및 신문을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 산식: (1년간 교지 및 학교신문을 발행하는 학교 수/전체 학교 수) ×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2-2-2.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 부여하는 학교의 비율

- 정의: 교내에서 학생이 징계 받을 때 학생에게 의사 소명권을 부여하는 학교의 비율
- 산식: (학생 징계 시 의사소명권 부여하는 학교 수/전체 학교 수) ×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2-2-3. 학생으로서 의견 표명 정도

- 정의: 선생님 앞에서 학생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3. 집회·결사의 자유

4-3-1. 학교 내에서의 집회·결사

4-3-1-1.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 정의: 교내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적 활동을 하는 학생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 산식: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수/전체 학교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3-1-2. 청소년 중 학생회 자치활동 참여비율

- 정의: 전체 청소년 중 학생회 간부역할을 하거나 의결과정에 참여하거나 학생회 주관행사를 준비하거나 본인의사로 참여한 학생의 비율
- 산식: [(학생회간부로서 활동 하는 학생 수+학생회 의결과정에 참여한 학생 수+학생회 주관행사 준비에 참여한 학생 수+본인인 선택한 학생회 주관행사에 참여하는 학생 수)/전체 학생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3-2. 학교 외에서의 집회·결사

4-3-2-1. 청소년 관련 단체에 가입한 청소년 비율

- 정의: 청소년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학교 이외의 관련 단체에 가입한 청소년의 비율
- 산식: (청소년단체에 가입한 청소년의 수/전체 청소년 인구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3-2-2. 청소년 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 활동에 대한 학교 규제 정도

- 정의: 학생이 인식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 대한 가입 및 단체의 활동 참여에 대해 학교가 규제하는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4 정보접근권

4-4-1. 도서에 대한 접근

4-4-1-1.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

- 정의: 연간 발행되는 도서 중 입시관련 서적을 제외한 청소년 대상 도서의 비율
- 산식: $(\text{청소년 도서 수} / \text{총 발행 도서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4-1-2. 청소년 도서대출 현황

- 정의: 청소년 1인당 월평균 도서대출 현황
- 산식: $[(\text{연간 전체 도서대출 권 수} - \text{연간 성인 도서대출 권 수}) / \text{전체 청소년 인구 수}] / 12$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4-2. 인터넷에 대한 접근

4-4-2-1.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 정의: 청소년 가구 중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
- 산식: $(\text{컴퓨터 보유 청소년 가구 수} / \text{총 청소년 가구 수}) \times 100$
- 자료원: 인구주택총조사

4-4-2-2.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 정의: 청소년 가구 중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한 가구의 비율
- 산식: $(\text{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한 청소년 가구 수} / \text{총 청소년 가구 수}) \times 100$
- 자료원: 인구주택총조사

4-4-2-3.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정의: 청소년의 일주일 동안의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산식: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4-5-1-1.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정의: 청소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
- 산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전체 청소년의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5-1-2.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재 정도

- 정의: 17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원하거나 필요하지만 부모나 학교의 제재로 아르바이트를 못한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5-1-3. 청소년 실업률

- 정의: 고등학교 졸업 연령(20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본인이 취업을 원하거나 취업이 필요하지만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한 비율
- 산식: (미취업 청소년 수/취업 원하는 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통계청의 20~24세 청소년의 실업률 통계자료이용

4-5-1-4. 청소년 정책관련 활동 동아리 참여율

- 정의: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

- 산식: (청소년 정책 관련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전체 청소년의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5-2. 참정권

4-5-2-1. 학생 대표 피선출권을 제한(성적 등을 통해)하는 학교 비율

- 정의: 학생대표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학교의 비율
- 산식: (학생대표 피선출권 제한 학교 수/전체 학교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5-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학교비율

- 정의: 학교의 교칙 제·개정에 학생의 참여를 허용하는 학교의 비율
- 산식: (교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는 학교 수/전체 학교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5-2-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 학교비율

- 정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석하여 학교운영에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의 비율
- 산식: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학교 수/전체 학교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5-2-4. 청소년의 선거 참가율: 유형별(총선, 대선 등), 연령별

- 정의: 선거권 있는 청소년(만 20세 이상) 중 총선, 대선, 지방의회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
- 산식: [(전체 선거권을 가진 청소년인구 수-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 인구 수)/전체 선거권을 가진 청소년 인구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 청소년인권 인프라 지표 정의, 산식 및 자료원

5-1. 청소년인구

5-1-1. 일반청소년 인구

5-1-1-1. 총 인구수(성, 연령, 지역별)

- 정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에 수록된 당해 연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 자료원: 통계청 인구통대통계연보

5-1-2. 특수청소년 인구

5-1-2-1. 장애청소년 인구수

- 정의: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전체 인구수 중에서 장애인으로 판별되는 청소년 수
- 자료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서

5-1-2-2. 한부모가정 청소년 인구수

- 정의: 이혼, 사별, 가족해체 등으로 부 혹은 모 한쪽에 의해 구성되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 인구수
- 산식: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인구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1-2-3. 이주노동자 자녀 청소년 인구수

- 정의: 동남아시아 등 외국으로부터 들어와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일하는 이주민 노동자 가구의 청소년 인구수
- 산식: 이주노동자 가정의 전체 청소년 인구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1-2-4. 다문화가정 청소년 인구수

- 정의: 부모 중 한사람이 외국인 출신인 가정의 청소년 수
- 산식: 다문화가정 청소년 인구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2. 법과 제도의 구축

5-2-1. 청소년인권 관련법의 정비 및 기능

5-2-1-1. 청소년인권 관련법의 정비 실태와 기능

- 정의: 청소년인권 관련 각종 법령의 정비 실태와 기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2-1-2.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종류

- 정의: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의 종류
- 자료원: 관련법

5-2-1-3. 실제 청소년인권 향상 효과

- 정의: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인권 향상의 효과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2-2. 중앙행정조직의 정비 및 활동노력

5-2-2-1. 청소년인권 관련 중앙정부의 정비 현황

- 정의: 청소년인권 관련 중앙정부의 정비 현황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2-2-2. 행정조직의 청소년인권 보호 정도

- 정의: 행정조직의 청소년인권 보호정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2-2-3. 중앙행정부의 청소년인권 향상 노력

- 정의: 중앙행정부의 청소년인권 향상 노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2-2-4. 중앙행정부의 청소년인권 증진 효과

- 정의: 중앙행정부의 청소년인권 증진 효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3. 비정부조직

5-3-1. 청소년인권관련 비정부조직

5-3-1-1. 비정부조직의 구성 현황

- 정의: 청소년인권 관련 비정부조직의 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3-2. 청소년인권관련 비정부조직의 활동노력

5-3-2-1.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노력

- 정의: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노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3-2-2.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실적

- 정의: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실적
- 자료원: 각종 비정부조직 실적 자료

5-3-2-3. 비정부조직의 인권운동에 대한 인지도

- 정의: 비정부조직의 인권운동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VII. 청소년인권지표 산출체계 및 활용방안

1. 청소년인권지표의 산출체계
2. 청소년인권지표의 활용방안

VII. 청소년인권지표 산출체계 및 활용방안

1. 청소년인권지표의 산출체계

청소년인권지표가 국제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환경 실태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OECD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인권·환경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인권지표의 생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인권지표의 수요자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청소년인권지표의 생산체계구축과 효율적인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방안과 중·장기적 과제를 제안한다.

1) 주기적·지속적인 지표조사 체계 구축

청소년인권지표가 주기적·지속적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지표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조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지속적으로 청소년인권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기존 통계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새로운 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사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해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역별로 협력조사기구를 지정하여 조사원의 공급 및 훈련, 질문지 배포 및 수합, 조사 실시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인 조사원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는 여론조사기관들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인권지표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지표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기적으로 전국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표조사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원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기별, 지역별, 집단별로 자유로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를”로 표현되는 각 지표 속에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원자료를 가공한 결과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표산출의 모체는 실지 조사를 통해 얻은 1차 데이터이지만, 지표산출의 과정에서 원자료의 많은 부분을 생략한 채 가공 처리된 결과만을 수록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집락 군별 비교분석을 하고자 할 경우 원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인권지표를 위한 조사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완성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소될 것이며,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최적화를 위해 데이터 웨어하우스⁸⁾를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인권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⁹⁾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¹⁰⁾ 기법들을 접목해야 할 것이다.

3) 조사 원자료의 일반 공개

데이터베이스화된 원자료의 활용가치는 원자료가 공개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센서스데이터 자료들은 CD-ROM

8)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관련 분야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 관한 중앙창고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메인프레임 서버에 구축되어 분석적인 용도나 사용자 질의에 사용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추출되고 조직화되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데이터 마이닝이나 OLAP 등에 사용된다.

9) OLAP은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를 다른 관점으로 쉽게, 또한 선택적으로 추출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는 분석될 데이터로서 9월 중 같은 제품과의 매출액을 비교하기 위해 7월중에 플로리다 주에서 팔린 모든 회사의 비치볼 제품 판매량을 보여주는 스프레드시트를 요청함으로써, 같은 시기 동안에 플로리다 주에서 팔린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 OLAP 데이터는 다차원 DB내에 저장된다.

10)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특정 상표의 테니스 라켓 판매기록이 충분히 분석되고 다른 시장데이터와 관련지어졌다면, 같은 회사의 골프 장비 구입과의 계절적인 상호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화된 청소년인권지표의 원자료 또한 일반인들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지원되어 다양한 정책연구나 학술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화된 원자료를 공개할 때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예컨대, 조사대상자 개개인의 이름과 신상에 관한 정보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료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원자료에 대한 사용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공개조건과 방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관련 조사기관과의 DB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및 지표항목 첨가

청소년인권지표는 많은 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정부부처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통계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연계되어 있고, 관련기관 및 단체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청소년인권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단일 기관에서 청소년인권지표와 관련된 모든 통계정보를 조사·산출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비용 면을 고려할 때, 단일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정교한 조사 설계와 대규모표집을 실시하는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분산형 조사, 집중형 관리”에 따라 각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기존 통계조사에 새로운 항목을 첨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DB화된 원자료들을 연계하여 청소년인권지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산형 조사, 집중형 관리”를 위해서는 각 기관간의 DB를 네트워킹하고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주관기관을 설정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연계협력 문제만을 위

해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청소년인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부처별 기능을 협조·조정하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련부처간의 연계협력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과 관련된 정책적 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이라는 분명한 타겟그룹(target group)을 설정하고 있고, 실제 청소년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전담부서인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통계법 제 8조 및 동시행령 제 9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인권지표를 국가공식통계로 지정함으로써 관련기관간의 연계협력체제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인권지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소년인권지표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인권관련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및 학계 전문가, 기타 청소년인권지표의 주요 수요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인권지표의 타당성, 적시성, 실용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인권지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첨삭이나 수정이 필요한 지표와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표개발의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6) 청소년인권지표 조사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청소년인권지표와 관련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들과 연계협력체제를 수립하고, 이들 기관에서 조사된 관련통계들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기구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 자료수집에서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

담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문의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예컨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의 주관부처일 경우 지표개발을 위한 통계자료의 수집, 조사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별지표 산출, 청소년인권지표 책자발간 및 배포 등 실무업무를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담당할 수 있다. 국가공식통계로서 청소년인권지표가 체계적·지속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인권지표 조사전담 기구가 반드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7)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기준대비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환경 실태를 평가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인권관련 국제기구와 네트워크 되어야 하며, 선진외국과도 밀접한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OECD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인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이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만을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의 인권논리 변화추세에 보조를 맞추면서 지표를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주요 국가들과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인권지표의 활용방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인권지표는 국제기준대비 우리나라 청소년인권·환경의 수준을 이해시키는 계몽적(enlightening) 기능과, 청소년인권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청소년인권향상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엔지니어링적(engineering)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청소년인권지표는 국제기준대비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환경의 수준은 어떠하며,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촉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비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집약시켜 줌으로써 정책결정자에게 청소년인권정책의 목표 달성수준과 변동추세를 파악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인권지표의 활용방안을 활용주체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차원

청소년인권지표는 거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환경수준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청소년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청소년인권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 협약사항의 이행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각 조약에서 제시한 인권신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고 집행결과를 모니터링하며, 발전적인 성과를 보여줄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특히, 인권지표는 인권신장을 위한 강력한 논리적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는 지표개발을 국제적인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인권지표는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국가청소년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상대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판단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인권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에 정책적인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청소년인권지표를 국가청소년인권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투자우선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체계적·과학적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인권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국제기준대비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취약분야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국제기준대비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인권의 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원은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정보원의 부재는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의 협약사항 이행에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인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청소년인권지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환경의 실태와 취약분야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청소년인권·환경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인권지표의 주기적 발간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환경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조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종단적 분석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인권·환경수준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섯째, 청소년인권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체제 분석적 접근방법에 의한 청소년인권지표 구성 체계는 개별지표의 추정치 간에 상호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청소년인권에 대한 정책적 투입부문(=인프라영역)과 결과부문(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간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해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인권정책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은 국가공공정책으로서의 청소년인권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인권지표는 우리나라 청소년인권·환경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통계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통계치를 동시에 제시해 준다. 따라서 청소년

년인권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인권정책 수립의 과정에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인권·환경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인권지표의 횡단적·종단적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환경수준과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지역의 상대적 취약점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인권관련 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투자우선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인권의 수준과 인프라구축 현황에는 많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인권지표를 통해 지자체의 청소년인권환경 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집중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지역청소년인권정책의 효과와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중앙정부차원과 동일하게 청소년인권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적 투입부문과 결과부문간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지역청소년인권정책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지역청소년인권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3) 청소년인권 관련 단체 및 시설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단체 및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과정에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인권 관련 단체 및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인권관련 단체 및 시설의 사업운영 방향과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수준과 문제점에 기초하여 결정

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인권관련 단체 및 시설의 사업운영방향 수립과 타겟그룹(target group) 설정,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인권관련 단체 및 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인권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부분은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부 및 민간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인권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인권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VIII.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VIII. 요약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국제인권조약과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환경 수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가적 정책과제를 도출을 위한 1차년도 연구로 청소년인권지표(안)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청소년인권지표의 개념 정립과 그 하위영역 설정, 둘째, 청소년인권지표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분석, 셋째, 청소년인권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 분석, 넷째, 청소년인권지표 체계구축 및 부문별·영역별 지표(안) 개발, 다섯째, 청소년인권지표의 산출체계와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등이었다.

주요 연구방법은 협동연구, 문헌연구, 협동연구협의회 및 전문가자문회의·워크숍 개최, 국외출장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청소년인권이라는 광범위한 주제의 효율적 추진과 청소년인권 하위영역에 대한 심층연구를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체 협동연구과제로 추진하였다. 청소년인권지표의 개념 정립과 하위영역 설정,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분석과 국내외 사례분석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연구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하였다. 한편 선진외국의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사례분석을 위하여 국외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인권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을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와 청소년이기 때문

에 요청되어지는 특수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특히 UN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인권 하위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청소년인권 인프라로 유형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인권지표를 “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체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청소년인권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고, 청소년인권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청소년인권 실태와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통계치”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청소년인권지표의 기능설정을 위하여 다양한 지표개발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인권지표의 기능을 첫째, 청소년인권에 관한 현재의 상태와 변동추세에 대한 판단 기능, 둘째, 장래의 상황에 대한 예측의 지침 기능, 셋째, 청소년인권에 대한 문제의 사전 경보장치의 기능, 넷째, 청소년인권정책의 목적설정과 성취를 평가하는 지침 기능, 다섯째, 사회적 인과관계 해명과 문제의식 제고의 도구 기능 등 5가지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UN아동권리협약, 1, 2차 국가보고서와 이에 대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전반적인 지표개발에 있어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들은 후진국이나 저개발국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아 이에 대한 선별의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로 다음 사항들을 좀 더 깊이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생존권은 전체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자·장애·이주자자녀·혼외출산자녀·한부모가정 청소년 등 소외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확대, HIV/AIDS·성병 등에 대한 적극 대처 등, 보호권은 각종 차별문제, 학교체벌, 성매매, 경제적 취약집단 등, 발달권은 학교지원 증대, 학습의 질 향상,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참여권은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확대, 의사결정에의 청소년 참여 등이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인권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분석한 결과,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지표개발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정부기관 및 단체,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시도되고 있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아동권리학회의 『30대 아동권리지표』,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의 『아동권리지표』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연구』와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실태 조사연구』, 이용교외의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지표들 중 대부분은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을 UN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지표들이며, 청소년인권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지표개발도 대부분 기초연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지표를 산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국제기구 및 외국의 경우에도 UNICEF의 『세계아동상황 지표』와 『아동권리와 아동빈곤지표』, Child 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의 『아동권리모니터링 점검표』, 미연방 아동가족 통계청의 『아동복지지표』, 영국 교육부의 『아동·청소년발달기준』, 호주의 『청소년과 지역사회 관련지표』, 뉴질랜드의 『아동청소년복지지표』 등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지표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지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는 국제기구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국에게 협약사항의 이행수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의무사항으로 강조하고 있고, 지표 개발이 인권신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지표개발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UN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춘 지표개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가 기존의 청소년관련 통계와는 달리 전문화된 지표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인권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

다. 첫째, 체제이론(system theory)에 기초하여 청소년인권의 하위구성영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하위영역에 속하는 지표항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구성한다. 둘째, 국제기준대비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환경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항목을 개발한다. 셋째,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삶의 특성을 반영하되, 청소년인권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대표하도록 한다. 넷째, 청소년인권에 대한 질적 정보를 확충한다. 다섯째,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킨다. 여섯째, 성별, 연령별, 학교 급별, 지역별 등 사회집단별 비교가 가능한 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한다. 일곱째, 가용통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위와 같은 지표개발의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과 절차에 의해 청소년인권지표(최종안)를 개발하였다. 첫째, 연구진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관련 권고내용과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을 생존권 영역, 보호권 영역, 발달권 영역, 참여권 영역, 인프라 영역 등 5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하위영역별로 관련문헌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청소년인권지표의 분류체계와 개별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개별지표의 타당성, 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 실용성, 해석의 용이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관심영역(26개)-세부관심영역(65개)에서 총 166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된 1차 시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1차 시안을 마련한 후 하위영역별로 ‘전문가포커스그룹’을 구성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와 협동연구협의회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시안의 분류체계와 개별지표 항목을 수정·보완·삭제하였다. 다섯째, 2차 시안을 마련한 후 확대연구진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인권지표(최종안)』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청소년인권지표』는 대분류(5개)-관심영역(20개)-세부관심영역(56개)의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7개의 개별지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에서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가 구체적인 통계치로 산출되어 실질적으

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지표생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수요자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 같은 일곱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기적·지속적인 지표조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지속적으로 청소년인권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기존 통계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새로운 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사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해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표조사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원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기별, 지역별, 집단별로 자유로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최적화를 위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인권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들을 접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사 원자료의 일반 공개가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의 활용가치는 원자료가 공개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CD-ROM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화된 청소년개발지표의 원자료 또한 일반인들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지원되어 다양한 정책연구나 학술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관련 조사기관과의 DB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및 지표항목의 첨가가 필요하다. 청소년인권지표는 무수히 많은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및 민간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단일기관이 청소년인권지표와 관련된 모든 통계정보를 조사·산출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비용 면을 고려할 때, 단일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정교한 조사 설계와 대규모표집을 실

시하는데 예는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분산형 조사, 집중형 관리”에 따라 각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기존 통계조사에 새로운 항목을 첨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 DB를 연결하여 청소년인권지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인권지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청소년인권지표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인권관련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및 학계전문가, 기타 청소년인권지표의 주요 수요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인권지표의 타당성, 적시성, 실용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인권지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인권지표 조사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청소년인권지표와 관련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무기구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에서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문의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전담기구가 갖추어져야 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표개발을 위해서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의 전담기구 설치의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일곱째,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기준대비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환경 실태를 평가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인권관련 국제기구와 네트워킹 되어야 하며, 선진외국과도 밀접한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인권지표는 국제기준대비 우리나라 청소년인권·환경의 수준은 어떠한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비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집약시켜 줌으로써 정책결정자에게 청소년인권정책목표의 달성수준과 변화

를 파악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활용주체별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차원에서 청소년인권지표는 첫째,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 협약사항의 이행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국가청소년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상대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판단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국제기준대비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취약분야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청소년인권·환경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인권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인권지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인권·환경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인권관련 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투자우선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역청소년인권정책의 효과와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인권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는 첫째, 청소년인권 관련 단체 및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인권관련 단체 및 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인권지표(최종안)』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안정적인 지표개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

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에 부가하여 향후 후속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지표개발을 위한 분류체계 및 개별지표를 개발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개별지표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인권지표(안)』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인권지표의 단계적·시범적 발간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인권지표에 포함된 모든 개별지표항목을 곧바로 지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인권지표의 범위가 매우 넓고, 지표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표 분류와 자료확보방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즉, 핵심적인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발간하되,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 구축된 통계DB를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발간하는 것이 조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한 조사방법 면에 있어서도 대규모표집이 필요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기 보다는 국제기구에 청소년인권관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주기에 맞춰서 조사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셋째, 국제기구 및 주요 외국과의 ‘국제비교지표 개발 및 DB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계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관련 국제기구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가입국과의 연계협력을 시도함으로써, 후속연구를 통해 공동지표개발 및 DB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5).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길은배·이미리·임영식·이용교(200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길은배·이용교·김영지(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연구-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2004). 글로벌시대 청소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원.(2003). 청소년과 인권: 권리의 주체인 어린이와 청소년. 한국청소년중앙협의회 사목, 제293집.
- 김영지·김경준·이혜연(2004).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 외(200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인숙 외(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어린이보호재단.
-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진호 외(2003).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진호 외(2004).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현철 외(2005). 청소년개발지표 연구II-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2). 청소년유해환경평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조사운영과.
- 도종수·고성혜·전명기(2002). 청소년보호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박향아(200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유형화와 아동을 위한 내용의 재구성. 교육이론과 실천, 제12권 2호. pp. 103-120.
- 배경내(1998).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동인(1992). 시민사회의 개념: 사상사적 접근. 서울: 한울.
- 보건복지부(2005).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과천: 보건복지부.
- 서문희 외(2005).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안현애·이삼식(2003). 아동권리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2004). 세계아동현황 보고서 2003.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윤철경·김성경·김현주·박병식·이봉주(2005). 청소년보호정책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봉철(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4호.
- 이용교 외(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권리. 서울: 인간과 복지.
- 이용교 외(2006).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광주: 광주대학교 출판부.
- 이용교(2004).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 서울: 인간과 복지.
- 이종원 외(1997). 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창수·윤영철·김영옥(2005).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정승원(2000). 중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교육실태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순 외(2002). 청소년의 원활한 고용 진입을 위한 학교 세팅에서의 직업교육 강화방안: 한국과 미국 비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정진환(2005. 2. 25). 눈. 밖에. 나다, 2005년 혼혈인의 초상. 연세춘추, 제 8권.
- 천정웅 외(1998). 청소년정책 평가지표체계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2004 청소년백서.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최원기·전명기·이주연(2003).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통계청(2002). 한국의 사회지표.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5). 한국의 사회지표 2005. 서울: 통계청.
- 한국개발연구원(1987). 공기업 경영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기법: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1997). 교육지표 개발 및 주기적 교육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아동권리학회(1998). 한국의 아동지표. 서울: 학지사.
-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지표개발팀(1999). 한국의 아동권리지표개발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1호, pp. 5-20.
- 한국지역사회복지회 역(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훈련교재. 한국지역사회복지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인적자원개발지표 및 지수.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한국의 청소년 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4). 청소년 인권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행정연구원(1997). 정부생산성의 개념체계와 측정지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한상철(2006). 사회에서 청소년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000年, 273호, pp. 16-19.
- 황옥경(2002). 유럽 국가들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제.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
대회 발표 자료집.
- 喜多(키타)明人·喜多セミナソレ編著(1997). みんなの權利候約. 草土文化.
- Ainsworth, M.D.S., & Bowlby, J.(1991). An ethological approach to personality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46.
- Annie E. Casey Foundation(2003). *Kids count data book: State profiles of child
well-being: 2003*. Baltimore: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 Barber, B. R.(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Vol. 67, pp. 3296-3319.
- Bee, H.L., Barnard, K.E., Eyres, S.J., Gray, C.A., Hammond, M.A., Spietz, A.L., Snyder,
C., and Clark, B. (1982). Prediction of IQ and language skill from perinatal
status, child performance, family characteristic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Vol. 53, pp. 1134-1156.
- Ben-Arieh, A., Kaufman, N. H., Anderws, A. B., Goerge, R. M., Lee, B., & Aber, J. L.
(2001). *Measuring and monitoring children's well-being*. Norwell:Kluwer
Academic Publisher.
- Benson, P. L., & Saito, R. N.(2001). *The scientific foundations of youth development.
Youth Development: Issues, Challenges and Directions*. Philadelphia, PA:
Public/Private Ventures.
-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1989). *Turning points: Preparing American
youth for the 21st centur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Education of Young
Adolescent*. Washington, DC: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 Catalano, R. F., Berglund, L. M., Ryan, J. M., Lonczak, H., and Hawkins, J. D.(2002).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findings on evaluation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s*. Prevention and Treatment, 5.
- Cerda, J. S.(1990). The draft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Vol. 12, No. 1, pp. 115-119.
- Child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1998). *Monitoring children's rights indicators
for children's rights project*. Child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Switzerland.

- Cohen, C. P.(1990).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drafting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uman Right Quarterly*, Vol. 12, No. 1, pp. 137-147.
- Constantine, N., Benard, B., and Diaz, M.(1999). *Measuring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raits in youth: The healthy kids resilience assessment*. Presented at the Seven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revention Research. New Orleans, LA.
- Cornia, G. & Danziger, S.(1997). *Common themes, methodological approach, and main findings*. In G. Cornia & S. Danzieger. (Eds.) *Child poverty and deprivation in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1845-1995*. Oxford:Clarendon Press.
- Covell, K. & Howe, R. B.(2001). *The challenge of children's rights for Canada: Studies in childhood and family in Canada*. Waterloo, Ontari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 CRC Committee(2003). *General comment No. 4: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UN Doc. CRC/GC/2003/4).
- Detrick, S.(1999).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oston, M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Donnelly, J. & Howard, R.(1988). Assessing national human rights performance: A theoretical framework. *Human Rights Quarterly*, Vol. 10. pp. 214-248.
- Eccles, J. S., & Gootman, J. A. (Eds.)(2002). *Community programs to promote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Ennew, J. & Miljeteig, P.(1996). Indicators for children's rights: Progress report on a proj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Vol. 4, pp. 213-236.
- Fanchette, S.(1974). *Problem of methodology and selection in UNESCO indicators: Problem of definition of selection*. Paris:UNESCO.
-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2000). *'America's children: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 <http://www.childstats.gov/americaschildren/pdf/jac1998/aifr.pdf>(2006.7.10)
- Ferber.(2002). *Ready by 21TM indicatros: initial recommendations to maryland*. The Forum For Youth Investment.
- Fox, M. A., Connolly, B., Snyder, T. D.(2005). *Youth indicators 2005: Trends in the well-being of American youth*.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Freeman, M(Ed.)(1996). *Children's rights: a comparative perspective*. Aldershot, Brookfield USA, Singapore. Sydney: Dartmouth.
- Grambone, M.A, Connell, J.P., Klem, A.M., Sipe, C.L., and Bridges, L.(2002). *Finding out what Matters for youth: Testing key Link in a community Action Framework for Youth Development*. Youth Deveolpment Strategies, Inc and the Institute for Research and Reform in Education.
- Gordon, D., Pantazis, C., Townsend, P.(2006). *Child rights and child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Summary report to UNICEF*. Bristol: University of Bristol.
-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 Hodgkin, R. & Newell, P.(2002).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York: UNICEF.
- Hodgson, D.(1994). The child's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Vol. 2, pp. 369-394.
- Huebner, A. J.(2003).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role of competence*. In F. A. Villarruel and others(eds.),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policies, and practices*. California: Sage Publicaitons, Inc.
- Jones, F.(2003). *Indicators fo child devekoopment and religious commitment in canada:a fact book*. Rrligious Commitment Monograph4 Christian Commitment Research Institute, Ottawa, Canada.
- Land, K. C.(1975). *Social indicator models: An overview*. In K. C. Land and S. Spilerman(Eds.), *Model of social indicators*. N.Y.: Russel Sage.
- Land, K. C., Lamb, V. L., and Mustillo, S.K.(2001).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1975-1998:Some Finding From a news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56*, pp. 241-320.
- Leary, V.(1994). The right to health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ealth and Human Rights*, Vol. 1, No. 1. pp. 25-56.
- LeBlanc, L. J.(1995).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lawmaking on human rights*.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Limber, S. P. & Flekkoy, M. G.(1995).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ts relevance for social scientists. *Social Policy Report*, Vol. 9, No. 2, pp. 1-15.
- Lippman, L.(2001). *Children and young people: indecators of wellbeing in new*

- zealand in indicators of child, family, and community connections companion volume of related papers, Child Trends.
- Maryland (2002). *Indicators of Child, Family, and Community Connection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Melbourne city(2003). *Here & Now, Draft Youth Strategy 2000~2003*. Melbourne city.
-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2003). *New Zealand social report. indicators of social wellbeing in new zealand*. <http://unpan1.un.org/int>
- Moser, C.(1973). Social indicators-system, methods and problem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19*, No. 2.
- Mower, A. G.(1997).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ternational law support for children*.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National Youth Rights Association(2006). *Defining the rights of youth*. Retrieved September 20, 2006, from <http://freechild.org/SNAYR/definingYR.htm>.
- New Zealand Social Report(2003). *indicators of social wellbeing in new zealand*. 2003.
- Nowak, M.(2005). *Article 6: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In A.Alen, J. Vande Lanotte, E.Verhellen, F. Ang, E., Berghmans, & M Verheyde (Eds.).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 Co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oston, M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Ochaita, E., and Espinosa, A.(2001). Needs fo children and adolescents as a basis for the justification of their righ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Vol. 9.
- Parker, D., & Sepulveda, C., (1995). *Children's right to survival and healthy development*, In J.R. Himes (ed.), *Im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source Mobilization in low-income countries*. Boston, M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Pereznieto(2005). *Transla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into national policies with real impact on childre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hildhoods 2006, Oslo: Norway.
- Rintoul, B et al.,(1998).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behavior*.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ublinc Health Servic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herrod, L. R., Flanagan, C. A., Kassimir, R. & Syvertsen, A. K.(Eds.)(2006). *Youth*

- activism: An international encyclopedia*. London: Greenwood Press.
- Takankshi, R., Mortimer, A. M., & McGourthy, T. J.(1997). *Positive indicators of adolescent development: Redressing the negative image of American adolescent*. In R.M. Hauser, B.V. Brown, & W.R. Prosser (Eds.), *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 (pp. 428-441).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U.S. Department of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2005). *Youth Indicators 2005*.
-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1996). *Youth Indicators 1996*. NCES 96-027,
- UNDP(2001).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
- UNICEF(1999). *Progress of nations*. New York: NY:UNICEF.
- _____(2004).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3*. New York, NY:UNICEF.
- _____(2005a).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5: Excluded and invincible*. New York, NY: UNICEF.
- _____(2005b). *Child poverty in rich countries 2005*. New York, NY: UNICEF.
- _____(2005c). *Young people health and development: National baseline evaluation of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of young people*. NY: UNICEF, Association Health for Youth.
- _____(2006).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6: Excluded and invincible*. New York, NY: UNICEF.
- United Nations(1989).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child*. New York, NY: United Nations.
- _____(2000).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New York, NY: United Nations.
- _____(2004a). *World youth report 2003: The global situation of young people*. New York, NY: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_____(2004b). *Resolution adopted by general assembly: 58/133 policies and programmes involving youth(A/RES/58/133)*. NY: United Nations.
- _____(2005). *World youth report 2005: young people today, and in 2015*.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 Van Bueren, G.(1998).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rights of the child*. Boston, M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Waters et al.(2002). *Indicators for child health, development an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monitoring*. Rayal

Children's Hospital Melbourne.

WHO(2004). *Child and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Progress Report.

Wiseberg, L. S.(1995). The Opening of a dialogue. *Health and Human Rights*, Vol. 1, No. 2, pp. 121-124.

World Bank(2004). *200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이용교(광주대학교 · 교수)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 교수)

이중섭(참여자치21 · 팀장)

강현아(숙명여자대학교 · 교수)

◆ 자문진 ◆

강병연 (한국청소년인권센터 · 이사장)

김신영 (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김홍철 (국가청소년위원회 · 사무관)

박금렬 (국가청소년위원회 · 참여인권팀장)

박진규 (호서대학교 · 교수)

이주희 (동신대학교 · 교수)

임형택 (광주대학교 · 교수)

조성연 (호서대학교 · 교수)

연구보고 06-R05

국제기준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

인 쇄 2006년 11월 17일

발 행 2006년 11월 2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18-0 93330